돼지고기이력제 업/무/편/람









Contents _ i

P.O.R.K. T.R.A.C.E.A.B.I.L.I.T.Y

I. 돼지고기이력제 개요 ······ 1
1. 이력제 정의
2. 이력제 개념 4
3. 도입 배경4
4. 해외 사례
5. 기대 효과
Ⅱ. 돼지고기이력제 추진현황 7
1. 추진 경과 9
2. 추진 체계
3. 기관별 역할과 기능
4. 돼지 및 돼지고기 관련 통계 20
Ⅲ.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관리 요령 23
1. 사육단계(종돈) 25
2. 사육단계(비육돈) 45
3. 도축단계 54
4. 포장처리 단계 64
5. 판매단계 73
6. 묶음번호 관리요령 80
7. DNA동일성 검사 ······ 83



Contents _ ii

P.O.R.K. T.R.A.C.E.A.B.I.L.I.T.Y

Ⅳ.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관련 지침·요령…	· 87
1. 농장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요령	89
2. 사육단계 전산신고 요령(한돈팜스 VS 이력관리시스템) ······	·· 115
3. 이력번호 자동표시기 관리요령	·· 122
V. 단계별 질의응답	129
1. 사육단계(종돈·비육돈) ·······	·· 131
2. 도축단계	·· 140
3. 포장처리 단계	·· 142
4. 판매단계	·· 150
5. DNA동일성 검사 ···································	·· 157
6. 위반자 처분	·· 159
7. 기타 질문 등	·· 164
Ⅵ. 참고자료	167
1. 돼지고기이력제 관련 기관·단체 연락처 ······	·· 169
2. 돼지고기이력제 시·도 담당 부서 연락처	·· 170
3.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원별 연락처	·· 171
4. 돼지고기 위탁기관(한국종축개량협회) 연락처	·· 172
관 련 법 령 ·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173



П

돼지고기이력제 개요

- 1. 이력제 정의
- 2. 이력제 개념
- 3. 도입 배경
- 4. 해외 사례
- 5. 기대 효과

Ι

이력제 개요

1 이력제 정의

- ☐ 이력제는 Traceability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추적 또는 소급 가능성을 의미하며, 적용 대상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사항이나 범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 □ 이력제에 대한 정의를 국가 또는 법령에 따라 일부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유사함
 - EU 식품법: 식품, 사료, 식품으로 가공된 동물, 가공식품 및 사료의 원료가 되거나 될 것이 예상되는 물질에 대하여, 생산, 가공 및 유통의 모든 단계를 추적하고 역으로 조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
 - 일본 쇠고기 생산이력제 : 국내산 쇠고기의 생산, 처리·가공, 유통·판매의 각 단계에서 쇠고기와 그 정보를 추적하고, 또한 소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
 - O Codex 특별위원회(바이오테크놀로지 유래식품에 관한 특별위원회): 식품 시장에 있어서의 모든 단계에 관한 적절한 정보의 연속적인 흐름을 보증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농수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안전성 등에 문제 발생시 추적하여 원인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라고 규정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규정
 - ※ Traceability: trace(기록, 흔적)와 ability(가능, 능력)를 합친 말로 "추적가능" 또는 "추적능력"으로 해석하며 Traceability를 이력제라고 사용하고 있음

2 이력제 개념

■ 돼지와 돼지고기의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 문제 발생시 이동 경로에 따라 역추적하여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판매시 이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

O 생산이력 관리

- 농장별로 농장식별번호 부여, 사육현황 정기신고, 도축출하를 포함 하여 농장간 이동신고 및 농장식별번호 표시 등

※ 농장식별번호 :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이하 "가축 사육시설"이라 한다)을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가축사육시설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

O 유통이력 관리

- 도축단계 이력번호 표시, 포장처리시 농장별 구분 포장처리 원칙하에 농장 간 혼합이 있는 경우는 묶음번호로 관리하고, 돼지고기의 유통· 판매시 이력(묶음)번호를 표시 등

※ 이력번호: 도축이후 돼지고기의 이력을 식별하기 위해 도축단계에서 농장식별번호, 도축일자, 도축장, 도축신청인 등을 고려 하여 국가가 부여하는 12자리 식별번호

3 도입 배경

- □ 사육에서부터 판매까지 거래 단계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질병등의 문제가 발생 시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 시 회수・폐기등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기 위해 도입
 - 돼지의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하고 유통되는 모든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사육농가·농장 소재지·도축일자·도축검사결과 및 포장처리업소의 정보가 소비자 등에게 공개
- □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내산 돼지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위해 돼지고기이력제 도입

해외 사례

:	 구 분	캐나다	덴마크	네델란드	한국
	· 관기관	Canadian Pork Council	수의식품청	가축 및 육류생산위원회	축산물품질평가원
실	!시근거	Regulation of the Health of Animal Act	EU식품관련법17 8조(178/2002)로 의무화	EU식품관련법178조 (178/2002)로 의무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법률
 시작 연도	생산단계 유통단계	2014년 7월	2005년1월부터 의무시행	2005년1월부터 의무시행	2014년 12월28 2015년 6월28
	국가 DB관리	CLIA (Canadian identification agency)	CHR (Central Husbandry register)	I&R (identification and registration)	농림축산식품부 (축평원)
추 진	이표장착	문신(종돈은 귀표장착)	개체별 장착이 기본이나 예외 인정	이동시 개체별 장착	농장식별번호 표시 (종돈: 귀표, 입묵, 이각)
체 계	자료입력 주체	농가 및 소유권자	농가 또는 (대행)입력사무소	I&RVL Bereau	농장신고에 기초하여 축평원, 한돈협회 등에서 입력
	지도감독	식품검역원(Canadi an Food Inspection Agency)	수의식품청 덴마크농업지도 센터	식품및소비재 안전청,축산물 생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농관원
	식별단위	농장, 종축은 개체	농장, 종축은 개체	기본적으로 개체, 농장병행	농장단위 종축은 개체
식별 방법	식별번호	농가번호(4)+지역 번호(1)	12자리(농가번호 (6)+출하일자(6)	농가(7자리)+ 개체번호(13)	농장식별번호(6자리) 이력번호(12자리)
	증명서	-	-	차량운송장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증명서
RFID) 적용계획	비용문제로 보류함	도축・가공장 적용	도축·가공장 적용	비용문제로 보류
	-통단계 -벨표시	해당 없음	EU 라벨법에 근거	EU 라벨법에 근거	이력번호 또는 묶음번호 표시
	러넷 등에 정보제공	소비자를 위한 자료제공은 현재 고려하지 않음	기본정보제공 약품, 질병정보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제공	도매용 정보제공	사육, 도축, 포장처리 정보 제공
	동일성검사 후인증체계	국가차원의 DNA 동일성검사 검토 않음	DNA동일성 검사 않음	DNA동일성 검사 않음	DNA동일성 검사 실시

※ 출처 : 농식품 이력관리체계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National pig traceability becomes mandatory (2014.3)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5 기대 효과

□ 문제발생시 신속한 추적 및 조치로 방역의 효율성 제고

- 생산·출하 등의 정보를 통해 상시 방역관리 지원이 가능하고, 가축질병 발생시 동 정보를 활용하여 원인규명과 방역조치에 기여함으로써 한돈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 ☐ 돼지고기에 대한 유통 투명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통한 한돈산업 발전에 기여
 - 이력관리를 통해 국내산 돼지고기와 수입산과의 차별화가 가능하여 국내 한돈 산업의 경쟁력 강화

□ 국내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이력번호 단위로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로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확대에 기여



돼지고기이력제 추진 현황

- 1. 추진 경과
- 2. 추진 체계
- 3. 기관별 역할과 기능
- 4. 돼지 및 돼지고기 관련 통계

이력제 추진 현황

1 이력제 추진 경과

- □ 이력관리시스템의 등록정보를 통해 돼지 질병 발생시 신속한 방역지원 및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요구(총리실, '10.6월)
- □ "농장단위 돼지이력제"도입 추진방안 수립(축산업선진화대책, '11.5월)
- □ 돼지고기이력제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11.5~11월)
 -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및 이력법률 개정안 마련
- □ 돼지고기이력제 해외 추진 사례 조사('11.12월)
 - 네덜란드와 독일의 돼지고기이력제 추진 사례 조사
- □ 2012년도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11.12.27)
 - 1유형(사육~판매), 2유형(사육~도축)
- ☑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12.2.6)
 - 대상 : 이력제 담당 지자체 공무원 및 브랜드 경영체 실무자
- □ 사업 유형별 시범 사업 참여업체 16개소 선정('12.5.11) 및 실시('12.10월)
 - O 대상: 제1유형(7개소), 제2유형(9개소)
- □ 돼지고기 이력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실시('12.9월)
 - 사육, 도축단계(9.5), 유통단계(9.12)
- □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시행('12.1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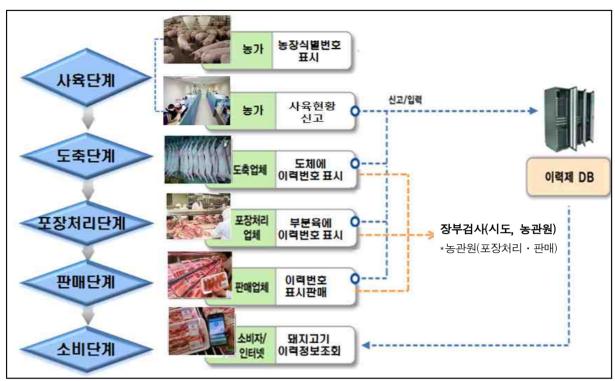
<시범사업 참여업체 현황('14.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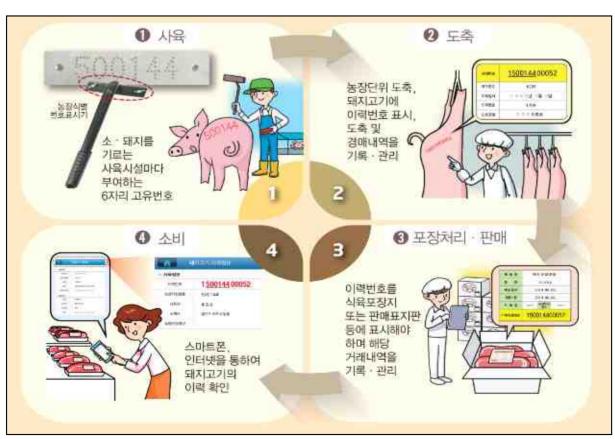
구 분	종돈장	농가 및 마리수	도축장	포장처리	판매장
′12년(1년차)	-	558농가(1,200천두)	13 ^{개소}	8	34
	-	777농가(2,000천두)	33	19	74
'14년(3년차)	24 ^{개소} (20%)	6,966농가(9,886천두)	70	1,015	1,732

※ 포장처리 및 판매장 참여업체수는 소, 돼지 포함하여 전산 ID부여한 업체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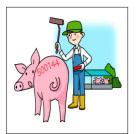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법률안 국회(윤명회의원 발의) 상정('13.3월)
☑ 돼지고기이력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13.7.18)
○ 양돈업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120여명 참석 => 도입 필요성 공감
☑ 종돈의 이력관리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3.8.5)
○ 종돈의 이력제 도입여부 및 이력관리 범위 등 검토
☑ 종돈의 이력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협의회('13.10.21)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13.12.27, 시행 : '14.12.28)
☑ 종돈의 이력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14.2.12)
○ 종돈이력제 시범사업 요령 검토
□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확대계획 알림('14.3.4)
○ 시범사업 3년차 확대 계획 통보
☑ 종돈의 이력관리 시범사업 대상업체 15개소 선정("14.4.5)
□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실무(포장처리업소, 판매업소 등) 협의회('14. 1~7월) 8회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입고예고('14.7.15)
O 실무협의회 등 의견수렴(안) 반영하여 입법 예고
☐ 부패영향 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행정서식 승인('14.9~11)
☐ 총리실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해 관보게재·공포
☑ '14.12.28. 돼지고기이력제 전면 시행

이력제 추진체계





요약



사육단계

O 사육현황 신고: 매월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 이내

o 이동신고 : 돼지의 이동(거래 등)일로부터 5일 이내

O **농장식별번호 표시** : 농장간 이동 및 도축출하시

- 종돈의 경우 출생신고(종축개량협회) 및 개체식별번호 관리



도축단계

O **농장식별번호 표시 확인**: "돼지열병 및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등 기록사항과 돼지

표시 사항 일치 여부

o 이력번호 발급 및 표시 : 도축 전 이력번호 신청 발급 및

이력번호 표시

o 도축처리 결과 전산신고 : 도축(경매) 결과 전산신고



포장처리단계

- 매입·포장처리 실적, 거래내역 기록·관리
- 전산신고 의무대상자 전산신고(5일 이내)
- 이력(묶음)번호 표시 : 포장처리 돼지고기의 최소단위

포장지

- 거래내역 증명서(영수증 등) 이력(묶음)번호 표시



판매 단계

- 거래내역 기록·관리
 - 전산신고 의무대상자 전산신고(5일 이내)
- 이력(묶음)번호 표시 판매: 포장단위 이력(묶음)번호 표시
 - 구매자가 요구할 경우 이력(묶음)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교부



소비 단계

- 이력(묶음)번호 조회
 - 인터넷(www.mtrace.go.kr) 또는 스마트폰 (축산물이력정보, 안심장보기 어플)
- 사육·도축·포장처리 정보 등 확인 가능



나

O (사육단계 이력관리 흐름) 월별사육현황신고, 다른 사육시설로 이동 및 도축출하시 돼지의 엉덩이에 농장식별번호 표시(종돈의 경우 귀표 등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이동신고

○ 사육단계 이력관리 요령

구분	주요업무	
월별 사육현황신고	· 돼지 사육시설의 농장경영자는 매월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이내에 돼지의 종류(일반종, 재래종, 멧돼지), 사육두수(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동(도축출하 포함)신고, 농장식별번호 표시	 돼지가 다른 사육시설로 이동할 경우 이동신고서(농장 식별번호, 양도·양수자, 이동일자, 이동두수 포함)를 이력 관리시스템에 신고 돼지를 도축하기 위하여 출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돼지열병방역실시요령에 따른 돼지열병·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에 신고내역이 포함된 경우 이동 신고서로 대신할 수 있음 	
	제호 돼지명병 구제역 예방점증확인서 변경 생활병 500144 주소 본지역부 병호 100-202 하당 네스타 효경 역사 1,000年12年40,00千.11年30 성당 네스타 효경 역사 1,000年12年40,00千.11年30 성당 네스타 효경 수사 (사용 기준 100年12년 10年12년 100年12년 100年12년 100年12년 100年12년 100年12년 100年12년 100年12년 100	

O (기록관리, 신고) 농장식별번호는 농장단위로 부여한 후 기록, 종돈의 등록 · 폐사신고, 종돈 이동신고(개체식별번호), 종돈이외의 돼지의 이동 신고(농장식별번호), 월별 사육현황신고 등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

다

- O (도축단계 이력관리 흐름) 농장식별번호확인, 이력번호 발급, 지육에 이력번호표시, 도축검사증명서 및 등급판정확인서에 이력번호 기재, 도축처리(경매)결과 전산신고
 - ※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돼지는 도축금지
- 도축단계 이력관리 요령

구분	주요업무		
농장식별번호 표시 확인	·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에 기록된 농장식별 번호와 돼지에 표시된 사항 일치여부 ※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돼지는 도축 금지		
이력번호 발급	· 농장식별번호 및 출하두수 확인 후 돼지고기 이력 관리시스템에서 발급		
이력번호 표시 및 증명서 발급	 돼지도체에 이력번호 표시 도축검사증명서 및 등급판정확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 영수증 또는 공급명세서 등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 		
도축처리(경매) 결과 전산신고	·도축(경매) 결과를 돼지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완료된 날에 신고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		
이력번호 표시(예시)	축산물 공급명세서 구 품목 이력번호 도체 낙활 번호 일자 1 국내산 돈 암 150014400052 1005 201412.28. 2 국내산 돈 암 150014400052 1007 201412.28. 4 국내산 돈 암 150014400052 1010 201412.28. 이하여백		

O (기록관리, 신고) 도축업경영자는 도축신고, 경매결과, 도축검사결과 및 등급판정결과를 돼지고기이력관리시스템에 전산신고

- (포장처리단계 이력관리 흐름) 지육에 표시된 이력번호표시 확인, 이력번호별 포장처리, 포장지에 이력번호 표시, 포장처리실적신고(장부관리), 거래실적 신고,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에 이력번호 표시
-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력관리 요령

구분	주요업무			
매입실적 기록·관리	·매입실적(이력·묶음번호 포함) 기록·관리 ※ 전산신고 의무대상자 : 이력관리시스템에 매입 후 5일 이내 신고			
포장처리·포장지 표시 단일 농장 : 이력번호 여러 농장 : 묶음표시	·돼지고기를 농장단위로 구분 포장처리 - 농장단위 구분이 어려울 경우 묶음번호 사용 - 개별 포장지 속, 겉면에 이력(묶음)번호 표시 후 거래 ※ 이력번호 표시(단일농장), 묶음번호 표시(여러 농장)			
포장처리·판매반출 실적 기록·관리	·포장처리·판매반출 실적(이력·묶음번호 포함) 기록·관리 ※ 전산신고 의무대상자 : 이력관리시스템에 포장· 판매(반출) 후 5일 이내 신고			
이력(묶음)번호 표시	· 포장처리한 돼지고기의 속, 겉 포장지에 이력(묶음) 번호 표시 · 거래내역서(거래명세서, 거래영수증) 이력(묶음)번호 표시			
이력(묶음)번호 표시(예시)	제 품 명 돼지 안심(냉장) 중 량 3.07kg 제조일자 2014.00.00. 유통기한 2014.00.00. 도 축 장 ○○○ 포장처리 업소 ○○○ 이력(묶음) 번호 150014400052	거래명세서 월/일 품목-규격 이력(묶음) 번호 단위 12/28 목심(국내산) L11412281234001 35.7 12/28 갈비(국내산) L11412281234001 15.5 12/28 등심(국내산) L11412281234001 11.6 12/28 삼겹살(국내산) L11412281234001 22.9 이하여백		

O (기록관리, 신고)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종업원 5인 이상이거나, 도축장 연접에 위치에 있는 경우는 이력관리시스템에 **포장처리실적과 거래실적을** 전산신고, 그 외의 업소는 자체장부에 기록관리

마

O (판매단계 이력관리 흐름)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표시 여부 확인, 거래 내역서 기록 및 보관, 식육판매표시판에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가 표시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교부

○ 식육판매업소 이력관리 요령

구분	주요	입무	
이력(묶음)번호 확인	·매입한 지육 또는 포장육과 거래명세서 등에 기재된 이력(묶음)번호 일치여부 확인 ※ 이력번호(12자리), 묶음번호(L+14자리)		
거래내역서 기록 및 보관	·(전산신고 의무대상) 300m² 이상의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장에서 종업원 5인 이상 또는 50m² 이상의 판매업소는 이력관리시스템에 거래내역 신고 · (그 외 판매업소)매입한 돼지고기의 이력번호를 자체 거래내역서에 기록·보관		
		번호 단위로 구분하고, 식육 장육에 이력(묶음)번호 표시 포장지 라벨지	
이력(묶음)번호 표시	지 된 메 교 기 년	A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진열 판매]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판매	[소포장 판매] 라벨지를 이용하여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판매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교부	· 구매자 등이 요구한 경-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우 이력(묶음)번호를 기재한 교부	

O (기록관리, 신고) 식육판매업자가 300㎡ 이상의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장에서 종업원5인 이상 또는 50㎡ 이상의 판매업소는 이력관리시스템에거래내역 신고, 그 외 업소는 자체 거래내역서에 기록보관

O 소비자는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돼지고기의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또는 묶음 번호)를 홈페이지(www.mtrace.go.kr) 또는 스마트폰 어플(안심 장보기, 축산물 이력정보)을 이용하여 이력번호 12자리 또는 묶음번호 L+14자리 등을 입력 하면 돼지고기의 이력정보 확인가능



(프랑스)

□┃사육단계

- (관리방법) 농장단위로 관리하며, 종돈에 대하여는 개체별 관리
 - 종돈은 개체식별을 위하여 귀표, 귀문신, 문신으로 표시
- (농장식별번호) 땅(지번) 중심의 농장식별번호로 관리
- (신고사항) 농장간 이동시(도축출하 포함) 중앙시스템에 이동 신고
- (표시사항) 이동시 돼지에 "농장식별번호 표시" 및 이동증명서 휴대



귀표(Ear Tag)



귀 문신(Ear Tatto)

🔲 도축단계

- (농장식별번호 확인 및 신고) 도축 전 농장식별번호 표시, 출하두수, 이동증명서 확인
 - 확인 후 중앙시스템에 확인 내역 신고
- (도축 및 이력번호 표시) 농장단위(농장식별번호)로 그룹화 하여 도축하고 도체에 일련번호 표시



☑ 포장처리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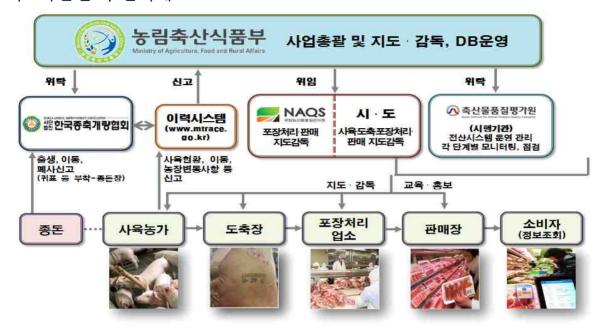
- O (방법) 동일 도축일자의 돼지를 묶음으로 구성하여 포장처리, 필요시 농장 단위 포장처리
- O (기록·관리 및 신고) 포장처리업체 자체적으로 기록 관리하며, 문제 발생시 회수 의무 부여

■ 판매단계

- O (표시사항) 식육포장지에 원산지,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추적코드(Trace Code) 등 표시
- O (소비자 정보제공)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 정보제공은 없음

기관별 기능과 역할

가. 기관별 추진체계



나. 기관별 역할과 기능

기 관	역할 및 기능
농림축산식품부 (지도 감독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점검, 시스템 구축 예산확보 및 집행상황 감독, 관련 법령 개정 등 사업총괄 및 지도·감독, DB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업무위임)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시정명령·출입·검사 및 수거(국내산 이력축산물)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의 과태료 부과·징수(국내산 이력축산물)
시 · 도 (업무위임)	 감독기관의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 법 제23조에 의한 시정명령 및 제24조에 의한 사육에서 판매단계까지 보고 및 출입검사
축산물품질평가원 (시행기관)	 ▶
이력지원실	 위탁기관 및 참여농가 제도이행 관련 업무 지원 정보 변경 관리, 이력번호 수기 부여, 이력관리시스템 운영지원
한국종축개량협회 (위탁기관)	 종돈의 출생, 폐사, 이동 등 신고접수 및 사육현황신고 접수 종돈의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 종돈의 개체식별등록을 위한 귀표등의 수불에 관한 사항 등

돼지 및 돼지고기 관련 통계

가. 기본통계

구분	현황	비고 (출처 등)		
○돼지 총 마릿수	10,090천두			
○모돈수	937천두	통계청		
○사육 가구수	5,177가구	('14년 4/4분기)		
○농가당 마릿수	1,949두			
○종돈장 수	137개소 *('09)127→('10)124→('11)129→('12)142개소			
○인공수정센터 수	48개소	'13년 종축개량협회 사업보고서		
○종돈 등록실적	-순종돈 40,986두 -번식용씨돼지 144,875두	10 1		
○도축장 수	71개소 ∗도매시장겸용 13개소	'14년 축평원		
○도축 두수	년 16,130천두 (일평균 64,779두)	'13년 검역본부		
○ 등급별 출현율(탕박)	1 ⁺ (28.2%), 1(35.7%), 2(32.2%), 등외(3.6%)	'14.1~12월 축평원		
○포장처리업소 수	1,287개소 *총4,469개소 등록 중 돼지고기만 추정	'13년 식약처		
○식육판매업소 수	30,851개소 ∗총51,851개소 등록 중 돼지고기만 추정	13년 역약서		
○국내산 생산량	858천톤 ∗('10)764천톤→('11)574→('12)750			
○수입돈육	184천돈 ∗('10)179천톤→('11)370→('12)276	농림축산식품부 통계 및 농협 자료		
○국내산 자급률(%)	82.3% ∗('10)81.2→('11)61.0→('12)75	('13년) 등 재구성		
○1인당 소비량	19.2Kg ∗('10)19.3→('11)19.0→('12)19.2			
	○돼지 평균가격 : 416천원/두 *돼지 비육돈 농가수취가격(탕박) = 경락가격(원/지 육kg) × 생체중(110kg) × 지육율(76.7%)	농협축산정보센터 ('14.09월)		
○가격	○돼지고기 지육 평균가격 : 4,577원/Kg	'14.1~10 축평원		
	○두당 소비자 가격 : 1,076천원/두 *농가수취가격:416천원(39.3%), 유통비용가격:660 천원(60.7%) ** '13년' 유통조사결과 : 861천원/두	* 돼 지 평 균 가 격 ('14.09월)기준 '13년 유통조시결과 비율 환산치		
	○부위별 소비자 가격(원/100g) - 삼겹살(1,910원), 목심(1,877원), 안심(1,403원), 앞다리(1,203원)	*대형마트(3개사) 인터넷쇼핑몰 평균 가격('14.11.5기준)		

나. 국내 돼지 사육현황(통계청, 가축동향조사 '14년 4/4분기)

(단위 : 천마리, 가구, 마리, %)

	¬ н	/11 10	40.40	2013		2014			증 감		
구 분 		′11.12	'12.12	9	12	3	6	9	12	전분기	전년동기
	총 마릿수	8,171	9,916	10,188	9,912	9,698	9,680	9,966	10,090	124	178
										(1.2)	(1.8)
	- 모돈수	903	962	897	895	910	925	925	937	12	42
										(1.3)	(4.7)
	2개월미만	2,586	3,073	3,078	2,940	2,921	2,934	3,011	3,043	32	103
										(1.1)	(3.5)
	2~4개월미만	2,457	3,076	3,196	3,130	3,000	2,980	3,102	3,108	6	-22
월										(0.2)	(-0.7)
령	4~6개월미만	2,188	2,749	2,972	2,900	2,805	2,789	2,876	2,949	73	
별										(2.5)	(1.7)
=	6~8개월미만	119	113	88	99	112	113	115	120	5	
	- 11-01 1 1 1									(4.3)	
	8개월이상	821	904	854	844	859	864	861	869	8	
	4.000=171=171	1 0 1 0	4 404	4 000	070	004	050	000	005	(0.9)	
	1,000마리미만	1,016	1,121	1,063	973	991	956	982	965	-17	-8
규		4.000	F F 4 7	T 404	E E0.4	F 000	F 0F0	F 400	F 440	(-1.7)	(-0.8)
모	1,000~5,000마리 미만	4,833	5,517	5,491	5,504	5,393	5,350	5,403	5,449	46	
별	 5,000마리이상	2,322	3,278	3,634	3,435	3,314	3,374	3,581	3,676	(0.9)	
	5,000-1-1013	2,322	3,270	3,034	3,433	3,314	3,374	3,361	3,070	95 (2.7)	(7.0)
		6,347	6,040	5,918	5,636	5,441	5,315	5,174	5,177		
	사육 가구수	0,347	0,040	3,910	3,030	3,441	٥,٥١٥	5,174	3,177		
	4.00001315151	0.700	0.000	0.000	0.004	0.014	0.404	0.005	0.007	(0.1)	
	1,000마리미만	3,708	3,080	2,989	2,684	2,611	2,481	2,325	2,297	-28	
규		0.000	0.004	0.500	0.000	0.400	0.401	0.400	0.505		(-14.4)
모	1,000~5,000마리 미만	2,386	2,624	2,566	2,602	2,496	2,491	2,486	2,505	(0.8)	
별	5,000마리이상	253	336	363	350	334	343	363	375	(0.8) 12	
	5,000-1-1913	255	330	303	330	334	343	303	3/3	(3.3)	
		1 007	1.040	1 700	1 750	1 700	1 001	1 000	1.040		
フ	H구당 마릿수	1,287	1,642	1,722	1,759	1,782	1,821	1,926	1,949	23	
										(1.2)	(10.8)



- 1. 사육단계(종돈)
- 2. 사육단계(비육돈)
- 3. 도축단계
- 4. 포장처리단계
- 5. 판매단계
- 6. 묶음번호 관리요령
- 7. DNA 동일성 검사



돼지 사육단계 이력관리 요령

1 사육단계(종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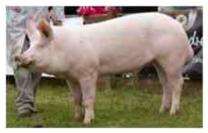
1. 종돈이란?

가. 정의

- <종 돈> -

○「축산법」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종축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고 있는 돼지로 종축등록기관에서 공고한 기준에 따라 혈통등록되거나 고등등록된 돼지 또는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한 기준에 따라 혈통이 확인된 번식용 씨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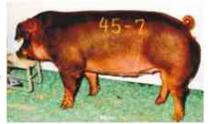
<종돈의 주요 품종별 사진>



대요크셔(Large Yorkshire)



랜드레이스(Landr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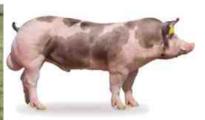
두록(Duroc)



햄프셔(Hampshire)



웰시(Welsh)



피어트레인(Pietrain)



스포티이드(Spoted)



버크셔(Berkshire)



재래종(Korean Native pig)

2. 종돈의 출생ㆍ폐사 신고

가. 신고대상

- O 종돈장(GGP, GP), AI센터, 검정소
- 「축산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등록기관에서 공고한 종축등록 규정에 따라 혈통 또는 고등등록된 돼지
-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종축등록기관에서 공고한 '번식용씨돼지 혈통증명규정'에 따라 번식용씨돼지로 혈통이 확인된 돼지

나 . 신고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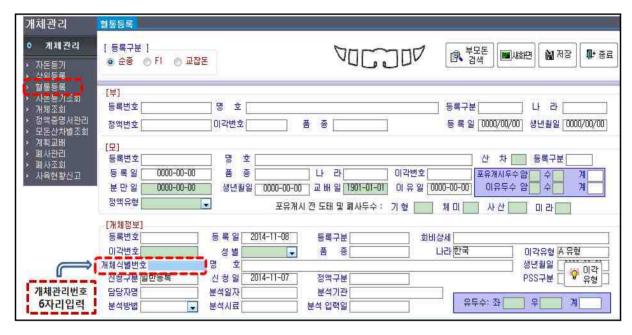
- 출생신고 : 출생(종돈의 경우 종돈등록일)일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폐사신고 : 폐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양도·양수(이동)신고 : 양도·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수출·입신고 :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 사육현황 신고 : 매월 마지막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다 . 신고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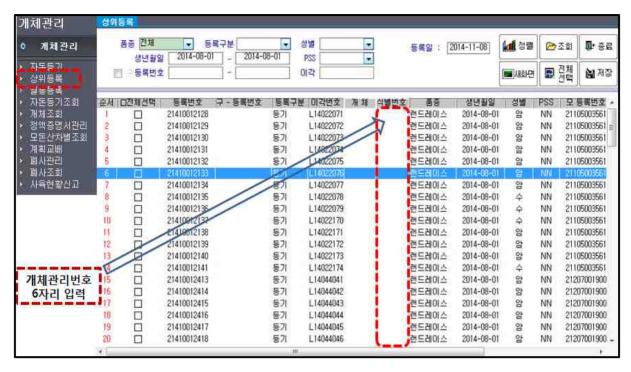
- 출생, 폐사, 양도·양수, 수출·수입의 신고는 「종돈 출생, 수입, 수출 등 신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종돈개량부 팩스(Fax: 02-3473-8166) 또는 종돈개량부 게시판(http://aiak.or.kr/)에 신고서 제출
 - 도축을 위해 출하하는 경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도축검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 「축산법」에 따른 종돈의 혈통·고등등록신청서, 번식용씨돼지혈통 증명 신청서 및 종돈업혈통관리프로그램(http://eswine.aiak.or.kr/)에 「종돈 출생·수입·수출 등 신고서」서식의 관련내용이 포함된 경우 위의 신청서 및 프로그램으로 대신할 수 있음
 - ※ 종돈업혈통관리프로그램은 아이디(ID)와 비밀번호(PW)로 로그인 후 이용가능

라 . 출생신고

- ① 종돈업혈통관리프로그램(http://eswine.aiak.or.kr/) 이용
 - 혈통등록을 이용한 출생신고 방법 : 개체관리 → 혈통등록 → 등록구분
 선택 → 부・모돈 검색 및 정보입력 → 개체정보입력 (※단, 개체 식별번호는 개체관리번호 6자리만 입력) → 저장



 상위등록을 이용한 출생신고 방법: 개체관리 → 혈통등록 → 품종, 등록 구분 생년월일 등의 조건 선택 → 조회 → 상위등록 대상돈의 선택(√) → 개체식별번호 중 개체관리번호 6자리만 입력 → 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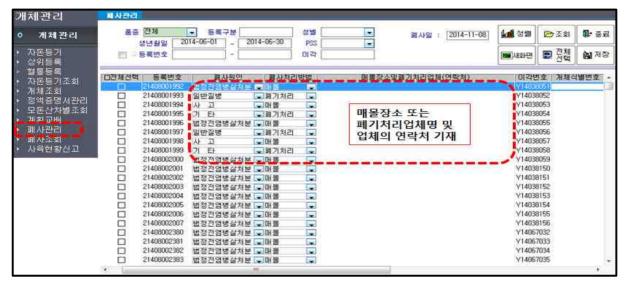
- ② 종돈(자돈등기) 혈통·고등등록 신청서 또는 번식용씨돼지(자돈등기) 혈통증명신청서를 이용한 출생신고
 - (사)한국종축개량협회(http://www.aiak.or.kr/) → 종돈개량부 → 서식
 및 양식 → 종돈(자돈등기)혈통・고등등록신청서 또는 번식용씨돼지(자돈
 등기)혈통증명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내용 작성 → 등록 및 검정
 신청에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서 접수



마 . 폐사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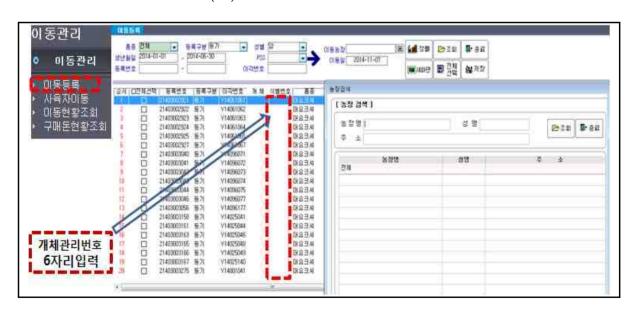
① 종돈업혈통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한 폐사신고

 · 폐사관리를 이용한 폐사신고 방법: 개체관리 → 폐사관리 → 조회(품종 선택
 및 생년월일 등 조건 입력) → 폐사신고 대상돈 선택(√) → 폐사원인 선택 → 폐사 처리방법 선택 → 매몰장소 및 폐기처리업체(연락처: 000-000-0000) 입력 → 저장



바.양도・양수신고

- ① 종돈업혈통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한 양도・양수 신고
- · 이동등록을 이용한 양도·양수 신고 방법 : 이동관리 → 이동등록 → 조회(품종, 등록구분, 생년월일 등 입력) → 이동농장(양수농장) 조회 및 선택 → 이동 대상돈 선택(√) → 저장



※ 단, 자돈등기 후 이동등록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체식별번호 중 개체관리 번호 6자리를 입력 후 저장해야 함

② (종돈)이동 신청서를 사용한 양도・양수신고

・양도・양수 신고 방법: (사)한국종축개량협회(http://www.aiak.or.kr/)

→ 종돈개량부 → 서식 및 양식 → (종돈)이동증명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내용 작성(개체식별번호 중 개체관리번호 6자리 기입) 입력 →
등록 및 검정신청에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서 접수

사 . 수입 · 수출신고

- ·수입 신고 방법 : (사)한국종축개량협회(http://www.aiak.or.kr/) → 종돈 개량부 → 서식 및 양식 → 종축수입신고서 작성(종돈장별) 및 관련 구비 서류 접수(개체별 혈통증명서 등)
- · 수출 신고 방법 : 종돈을 수출할 경우 출생(혈통·고등등록 및 번식용씨돼지 혈통증명)신고 후 「종돈의 출생등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신고

3. 종돈장의 월별 사육현황 신고

가. 신고대상

○ 종돈을 사육하는 종돈장, AI센터, 검정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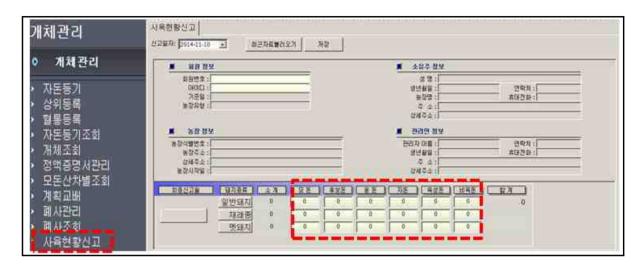
나. 신고방법

- 종돈의 사육현황신고는 해당 월의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종돈 출생 신고서」서식에 의해 (사)한국종축개량협회로 신고(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신고방법은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전화(02-588-9301) 또는 팩스(02-3473-8166)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또한 종돈의 출생 등 신고」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종돈업혈통관리프로그램의 사육현황신고로 대신할 수 있음

		9	⑩ 세부내역(두)						
.10-1-1	계(두)	종류	소계	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사육현황 신고		일반종							
		재래종							
		멧돼지							

○ 종돈업혈통관리프로그램 사용한 사육현황신고

- 사육현황 신고방법 : 개체관리 → 사육현황신고 → 해당 항목별 사육두수 입력 → 저장



4. 변경신고 · 신고의 생략, 이동금지 등

-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 누락이나 오류의 수정을 요구하려는 농장경영자 등은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변경신고서**」서식을 작성하고, 변경신고 사유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종축 개량협회장에게 제출
-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종돈을 양도·양수, 수출 또는 이동시키면 안 됨

5. 개체식별번호 부여방법

가. 「개체식별번호」의 구성

○ 종축개량협회장은 출생, 또는 수입 신고된 종돈에 대하여 개체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개체식별번호>

이력관리대상가축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

- ※ 개체식별번호 구성: 국가코드(KOR) + 농장식별번호(6자리) + 개체 관리번호(6자리)로 구성된 15자리
- 수입신고된 종돈은 해당 국가에서 부여된 개체식별번호를 사용하되,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개체식별번호와 호환되지 않는 번호체계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개체식별번호로 표시
 - ※ 따라서 수입종돈은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출생신고 기한은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로 보아도 무방하나, 개체식별번호가 호환되지 않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함

나. 개체식별번호 부여 대상

○ 종축업 또는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육시설 및 검정기관에서 출생 (혈통·고등등록) 또는 수출·입 신고 된 종돈

다.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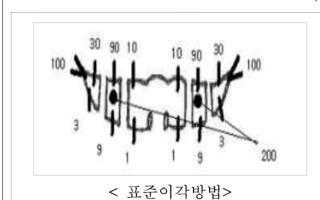
- 출생 신고 또는 수입 신고된 종돈에는 국가코드(KOR), 농장식별번호 (6자리), 개체관리번호(6자리), 바코드 및 농업이미지 엠블램 등이 표시된 15자리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 수입 신고된 종돈은 해당 국가에서 부여된 개체식별번호를 사용하되, 개체 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개체식별번호와 호환되지 않는 번호 체계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라. 개체식별번호의 표시방법

-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는 귀표 등을 이용하여 종돈의 귀에 부착 또는 표시할 수 있으며 귀표등의 방법은 귀표, 이각, 입묵의 방식 사용
-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 등으로 귀표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체식별 번호가 표시된 목줄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음

1 이 각

돼지의 귀를 삼각의 모양으로 절개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종축개량협회에 정하고 있은 이각방식으로 하여야 함(시행규칙 별표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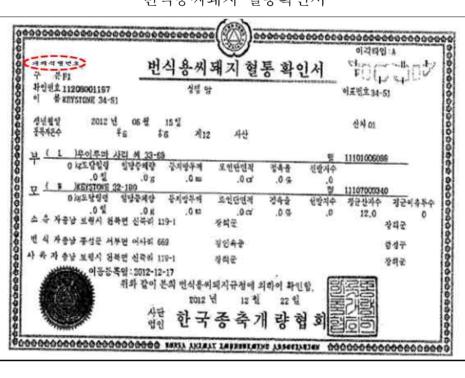


- 농장식별번호와 개체관리번호를 동시에 이각방법으로 표시할 수는 없음. (이각으로 표시하는 자릿수의 한계) 이각으로 개체관리번호를 표시 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이각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되 종축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에 개체식별번호 기록
- 이각방법에 의한 개체표시는 식별번호의 중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다만, 순환이각방식에 의해 불가피하게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종축개량 협회에 등록된 혈통번호 등을 보아 개체 간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이각을 활용하여 개체식별번호를 생성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발급받은 농장식별번호와 이각을 활용한 <표1>의 개체관리번호 생성 방법에 따라 개체관리번호를 등록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종돈 혈통증명서



번식용씨돼지 혈통확인서



<표1> 이각을 활용한 개체관리번호 생성 방법

이각 자릿수	이각번호(예)	개체관리번호	비고
1자리	1	000001	
0-7] -7]	12	000012	
2자리	1-2	001002	
	123	000123	##A] 시 사이크 및 기원 귀 ()
3자리	1-23	00102 3	"-"없이 숫자로 표시할 경우
	12-3	0 12 00 3	이각의 맨 앞에 부족한 자릿수 만큼 "0"을 삽입
	1234	001234	인급 V 글 십십
4 7] 7]	1-234	001234	
4자리	12-34	012034	"-"을 사용할 경우 좌·우측
	123-4	123004	이각을 가급적 각각 3자리로
	12345	012345	생성(부족한 자릿수만큼 "0"을
	1-2345	012345	삽입)
5자리	12-345	012345	
	123-45	123045	
	1234-5	123405	
6자리	123456 1-23456 12-3456 123-456 1234-56 12345-6	123456	6자리 전체를 개체관리번호로 그대로 사용
7자리이상	1234567 1-234567 12-34567 123-4567 1234-567 12345-67 123456-7	123456	앞에서부터 6자리만 활용하여 개체관리번호 생성

<표2> 이각에 의한 번호체계

타입	번호체계	읽는 방법	실(예)
A (표준 이각)	30 90 10 10 90 30 10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	좌측부터 차례 대로 읽음	379-246, 379246,379-246A
В	300 900 100 10 90 30 2000	좌측하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읽음	4-3149, 1044-3149(1:농장04:연도)
С	300 900 100 1000 9000 3000 30 90 10 1 9 3	우측상단부터 시계반대방향 으로 읽음	7249, LR07249(L:품종, R0:생년)
E	3000 900 100 10 90 30 20000 3000 9000 1000 1 9	양쪽 끝 먼저 읽고 좌측하단 부터 시계방향	34149
G	300 900 100 10 90 30	좌측상단부터 시계방향 읽음	1091-1
Н	3 9 1 100 900 300	좌측상단부터 시계방향 읽음	3-714
K	1000 300 900 100 10 90 30 2000	좌우펀칭 이각 앞자리사용, 좌측하단부터 시계방향	39-1746
М	81 3 100	마국의 표준이각 숫자의 합계로 읽음	394-1(394=200+100+81+9+1+3)

<표3> 주요 수출국별 개체식별번호 생성방법

<프랑스>

- 개체식별번호 (수입농장)농장식별번호(6자리)+Animal ID의 뒤 6자리(출생연도(1)+개체번호(5))

(수입농장)농장식별번호 : <u>123456</u> Animal ID : FR86CHA304502 개체식별번호 : <u>123456304502</u>

<캐나다>

- 개체식별번호

(수입농장)농장식별번호(6자리)+출생연도(1자리)+Tattoo(3~5자리)

※ 부족한 자릿수는 Tattoo 앞에 0~00으로 표시

(수입농장)농장식별번호 : <u>123456</u> Tatto : 9645A 개체식별번호 : <u>**123456309645**</u>

- Tattoo : 9645A *먼저 읽고 영문자는 출생년도를 의미함(A : 2013년)

영문	A	В	С	D	Е	F	G	Н	I	J
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미국>

- 개체식별번호

(수입농장)농장식별번호(6자리)+Name의 출생연도(1자리)+Ear-Notch(2~6자리)

※ 부족한 자릿수는 Ear-Notch 앞에 0~000으로 추가하여 표시하며 Ear-Notch가 6자리인 경우 연도생략

(수입농장)농장식별번호 : 123456 Name : <u>WFD4</u> BLARNEY 개체식별번호 : <u>123456400023</u> Ear-Notch : 2-3

- Ear-Notch : 2-3(2~6자리)

- Name: WFD4 BLARNEY 2-3 (※ WFD4의 4는 출생연도를 의미함(4:2014년)

<덴마크>

- 개체식별번호

(수입농장)농장식별번호(6자리)+H.B.NO의 출생연도(1자리)+Tag/ Tattoo(4자리)

※ 부족한 자리수는 Tag/ Tattoo 앞에 0을 삽입하여 표시

(수입농장)농장식별번호 : <u>123456</u> H.B.NO: 760-4694-<u>14</u> Tag/ Tattoo : <u>4649</u> 개체식별번호 : <u>**123456404649**</u>

2 입 묵

돼지의 귀에 문신을 찍어 표시하는 것으로 생후 3일령 전후에 귀의 잘 보이는 곳 (품종에 따라 귀의 앞쪽 또는 뒤쪽)에 압인하여 숫자를 표시





※ 입묵: '살 속 에 먹물 로 글씨 나 그림 을 새겨 넣는다 '의 의미

- 입묵기(돼지 귀에 문신을 찍어 표시하는 장비)의 규격은 표시되는 숫자 하나의 크기를 (가로)5mm (세로)7mm 이내로 함
- 귀에 입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장식별번호(6자리), 또는 개체관리 번호(6자리)를 귀에 표시할 수 있음
- 입묵기는 주로 고정식과 회전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농장식별번호(6자리)를 포함한 개체관리번호(6자리)를 모두 입묵으로 표시할 수 있음
-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 등으로 귀표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체식별 번호가 표시된 목줄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음

<입묵시 주의사항>

- 입묵하기 전에 귀의 안쪽을 잘 닦아주고 가능한 귀의 부드러운 부분에 입묵
- 입묵기의 바늘, 돼지의 귓등, 손에 잉크를 발라 압인한 후에 잉크가 잘 스며들도록 골고루 잘 문질러 주는 것이 중요

3 升 표

돼지의 귀에 개체식별번호 등이 표시된 귀표 장착하는 것으로 종돈의 등록 시점에서 부착







- 귀표를 이용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두 줄로 표시하는 경우 윗줄에는 농장 식별번호(작게)를 아랫줄은 개체관리번호(크게)를 표시할 수 있으며 개체 관리번호 4자리는 인식이 용이하도록 크게 인쇄하여 표시할 수 있음
- 귀표의 종류는 단추형, 일반형, 단추+일반형이 있으며, 단추형은 주로 자돈에 부착, 성돈은 일반형 또는 단추+일반형의 형태로 부착함. 귀표를 부착하는 경우 개체관리번호는 종돈장별로 연번을 부여하거나 이각 번호를 보아 귀표에 관리번호를 별도로 표시할 수 있음
- 귀표등의 부착기한 : 종돈 등록 후 30일 이내

6. 귀표의 부착요령

가. 「귀표의 표시사항」

- 귀표에 표시되는 내용은「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4>에 의한 귀표등의 규격에 의함
 - 귀표 표시사항: KOR, 농업로고, 바코드, 농장식별번호, 개체관리번호, 종돈장명
- 종돈의 귀표는 밝은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색상을 원칙으로 하되, 품종에 따라 귀표의 색깔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예): 노랑색(요크셔), 주황(듀록), 하늘색(랜드레이스)

○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 등으로 귀표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체식별 번호가 표시된 목줄을 이용하여 표시할 있음



-KOR(뒷면)

- -바코드(뒷면)
- -개체관리번호(○)**043**5
- -농장식별번호(○)

(해외

-종돈장로고 + 농장식별번호와 일런번호를 함께 인쇄하되, 일련번호 중 앞 두 자리는 윗줄에 인쇄하거나 인쇄하지 않고 매직 등으로 표시해도 무방

나. 「귀표의 규격」

- 귀표의 종류는 일반형과 단추형이 있고 일반형의 경우 암・수 분리형과 암 · 수일체형 두 종류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음
- 귀표의 크기
 - 가) 일반형 : (가로) 25mm~55mm, (세로) 30mm~70mm
 - 나) 단추형 : 원형으로 지름 25㎜~35㎜
- 재부착용 귀표 : (앞면) 종돈장 로고, 농장식별번호, (뒷면)KOR, 농업CI, 바코드

다. 「귀표의 관리 등」

○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를 위한 입묵기, 귀표 등의 관리는 종돈의 위탁 기관인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

[]출생·수입·수출 종돈 []양도·양수·이동 신고서 []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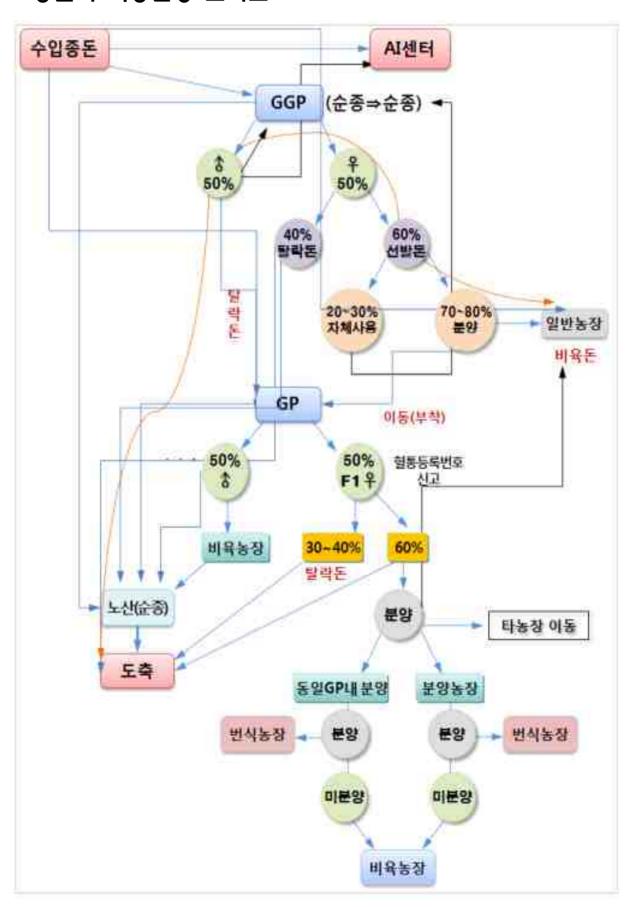
※ 두	·목의 신고	그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0	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시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경영자	③ 법인 명칭	
=	정보	④ 주소	
통	정도		(: 휴대전화번호:)
신		⑤ 농장식별번호	
ュ	기축	⑥ 사육 소재지	
사	시육시	⑦ 사육 개시 연월일	
항		⑧ 관리자 성명	⑨ 관리자 주민등록번호
	설 정보	⑩ 관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⑪ 개체식별번호	종돈의 종류(1.순종, 2.수입종돈, 3.번식용씨돼지,
		⑫ 1. 혈통ㆍ고등 등록일(등록번호):	4.7 E ·)
ž	출생		(Large Yorkshire), □랜드레이스(Landrace),
	= 0 수입	2. 번식용씨돼지 혈통 확인일(확인번호):	□ 두록(Duroc), □ 햄프셔(Hampshire), □웰시(Welsh),
			□피어트레인(Pietrain), □스포티이드(Spotted),
	수출	® 출생(수입·수출) 연월일	─ □버크셔(Berkshire) □재래종
선	<u> </u>	· · · · · · · · · · · · · · · · · · ·	
		1. 암 (두)	부 개체식별번호
		구분 2. 수 (두)	⑰ 모 개체식별번호
		® 양도(반출)·양수(반입) 구분	(9) 개체식별번호
		1. 양도(두) 2. 양수(두)	@ //M ¬ ≥ 0 ±
양	E•양수	[· · · · · · · · · · · · · · · · · · ·	② 농장식별번호
이동	(빈입•	ST(CH) ST(CH) CHE X ST	00 1557
	· 변출)	 ② 양도자(반입자) • 양수자(반출자) 성명(상호)	③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G 07 (CB.1) 01 (CB.1) 00(07)	@ 1 0 3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í	신고	② 주소	
			·
		②5 개체식별번호 ②	· · · · · · · · · · · · · · · · · · ·
ᆔᆺ	· 신고	생 기세ㅋ글린오 ② 폐사 원인	
페스	1 21) 2. 폐기처리(업체명: ,전화번호:)
		육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학	합니다.		
			년 월 일
			[└] 고인 (또는 인)
			대리 신고인 (서명 또는 인)
7	S = = =		내리 신고인 전화번호
ź	5돈등	록기관의 장 귀하	

- 1. 출생·수입·수출신고는 ①~ 란을 적습니다. ①~④란에는 농장경영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⑤~⑩란은 가축사육시설의 정보인 농장식별번호, 관리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⑫란의 혈통·고등 등록일(등록번호) 또는 번식용씨돼지 혈통확인일(확인번호) 적으며, ⑭란의 암수구분 및 ⑯란의 종돈 종류는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하며, 종돈의 품종을 아는 경우 √를 표시합니다. ⑯~⑪란은 본인이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2. 양도・양수・이동(반입・반출) 신고는 ①~⑩란과 ⑱~⑭란을 적습니다. 또한, ⑱란의 양도(반입)・양수(반출)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합니다.
- 3. 폐사신고는 ①~⑩란과 웹 란을 적고, ② 란의 폐사 원인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하며, 웹 란의 폐사처리방법은 매몰인 경우 장소를 적고, 폐기처리(소각, 재활용)인 경우 업체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 4. 이 신고서는 경영자등이 직접 작성하되 본인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대리인이 작성하고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 5. 전화 및 구술의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서의 해당란에 그 내용을 적어서 보관해야 하며, 부득 이한 경우 신고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습니다.
- 6. 여러 마리의 출생 등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신고 항목을 표시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7. 그 밖의 작성 참고사항
 - 가. 개체식별번호
 - 12자리(농장식별번호 6자리 + 농장별 개체관리번호 6자리)
 - 기입 예) 100001000001
 - 나. 종돈의 종류 구분
 - 대요크셔(Large Yorkshire), 랜드레이스(Landrace), 두록(Duroc), 햄프셔(Hampshire), 웰시(Welsh), 피어트레인(Pietrain), 스포티이드(Spotted), 버크셔(Berkshire), 재래종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소, 종돈의 출생]소, 종돈의 폐사]양도·양수(이동)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수입·수출]가축시장의 거래내역

[]는 해당	반에 √ 표시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원	은 신고인이 7	적지 않습	늘니다.					
		접수일	1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	호)
	농장식별번호	5				전화번호				
	주소					(전화변	<u> </u> 호)			
영업의 종류	및 허가(신	고)번호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	번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변경 <i>/</i>	사항						
구 .	분	변	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					
「가축 및 축 항 변경을 신		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리	· 신고	사
							년	월		일
		귀하	신고	<u>1</u> 인				()	서명 또는	= 인)
		11-1								
구비서류	변경사항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로	
						01 Omarra V/	207mm/이바요지	60~/	없음	

<종돈의 이동현황 모식도>



2 사육단계 (비육돈)

1. 「농장식별번호」부여

가. 정의

<농장식별번호> -

- ○이력관리대상가축(소·돼지)을 기르는 사육시설을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사육시설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
 - ※ 농장식별번호 구성: 권역코드(1자리), 일련번호(5자리)로 구성된 6자리
 - 권역코드 : 서울·인천·경기(1), 강원(2), 충북(3), 세종·대전·충남(4), 전북(5), 광주·전남(6), 대구·경북(7), 부산·울산·경남(8), 제주(9)

나. 농장식별번호 부여대상

○ 이력관리 대상을 사육하는 소 사육농장, 양돈장, 종돈장, AI센터, 검정소 등

다. 농장식별번호의 신청방법

-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는 이력관리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사육시작일 5일전까지 <표6>의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다만, 지리적 여건으로 서면으로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같은 신청서의 내용을 신청할 수 있다.)
- 농장식별번호 신청내용은 신청인 인적사항, 사육가축의 종류 및 사육방식, 가축사육시설정보(농장명칭, 사육시설 소재지, 관리자성명, GPS좌표, 사육 개시연월일) 사육규모 등

라. 농장식별번호 부여 및 통보방법

-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농장식별번호"가 신청된 시설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6자리의 농장식별번호를 지체 없이 부여
- 가축사육시설에는 권역코드(1자리), 일련번호(5자리)로 구성된 6자리의 농장식별번호를 부여

- 축종에 관계없이 땅(지번)을 중심으로 1개의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며 하나의 가축시설(농장)에 여러 농장경영자인 경우도 1개의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함. 다만, 같은 지번의 가축사육시설을 다수의 농장경영자가 물리적 으로 분할하여 경영하고 있은 경우에는 추가로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을 받아 다른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할 수 있음
- 농장식별번호를 통보받은 농장경영자는 사육 가축의 출생, 양수·양도· 이동, 폐사, 변경신고,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표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농장식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함

마. 농장식별번호 기록관리

-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신청된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함과 동시에 농장식별 번호 발급 및 등록대장의 내용을 이력관리시스템으로 기록관리
- 부여된 농장식별번호가 가축사육시설에 정확히 부여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 위탁기관 등에 현장 확인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바. 농장식별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 등은 농장식별번호(6자리)를 돼지가 이동(도축출하 포함)하는 경우 돼지의 오른쪽 엉덩이에 표시하여야 함
-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할 수 있는 기구는 검역본부장이 고시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돼지가 입는 상해 또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표시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등을 돼지에 부착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 이동하는 모든 돼지에 농장식별번호를 각각 표시하여야 하되, 하나의 차량에 농장식별번호가 같은 농장의 돼지만을 실어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하돼지의 일부(60두 이하의 경우 10두 이상 표시, 61두 이상인 경우 전체 출하돼지의 20퍼센트 이상 표시)만 표시할 수 있음

2. 돼지의 이동 신고

가. 신고방법 및 절차

- 돼지의 이동 등 신고를 하는 자는 이동신고서를 서면으로 축산물품질평가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리적 여건으로 서면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음
- 도축을 위하여 출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음
- 나. 신고기한 : 양도·양수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다. 신고종류 및 내용

- 신고종류
 - 돼지를 양도(반출)·양수(반입)하는 경우에 신고
- 신고내용
 - 이동구분 (양도·반출, 양수·반입)
 - 이동일자, 이동두수: 총 OO두 (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 농장정보(경영자명, 농장식별번호, 사육지 주소) ※ 자돈(3개월 이내)의 임시표시(페인트 색상, 표시모양 등)
- 구술, 서면, 전화 등으로 이동신고를 받은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그 내용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
 - 서면의 경우 신고기한까지 서명 도는 날인을 받아야하되, 부득이한 경우 신고 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음

3. 돼지의 월별 사육현황 신고

가. 신고방법 및 절차

○ 농장경영자는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및 이동 등 신고서를 축산물품질 평가원장에게 제출. 다만,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에 돼지의 월별 사육현황이 포함된 경우 예방접종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음

나. 신고기한

○ 매월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다. 신고내용

- 공통신고사항
 - 경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농장식별번호, 경영자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사육시설의 소재지, 사육개시 연월일
- 사육현황
 - 돼지의 종류(일반종, 재래종, 멧돼지)
 - 돼지(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의 사육두수
 - 사육 총 두수

라. 사육현황 신고서의 기록관리

-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으로 신고를 받은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그 내용을 입력
- 한돈팜스를 이용하여 한돈협회 지부에서 이력관리시스템에 전산신고한 경우 전자적 처리방법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농장경영자는 해당지부에 "사육현황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위임장을 제출

마. 변경신고서 처리절차 및 방법

○ 가축 및 축산물식별장의 기록누락이나 오류의 수정을 요구하려는 농장 경영자 등은 <표5>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신고 사유서, 변경 사항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 제출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

※ 아래의 유역 접수번호	의사항을 읽	심고 작성하	시기 바라며, [접수일자]에는 해딩	되는 곳에	√표를 합	합니다.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	명(위탁	자)				② 주민등	록번호(사업자 또	는 법인등	록번호)
	③ 주	소(거주	지)				④ 전 화	번 호			
⑤ 사육가축의 종류							종축장				
및 시	나육방식	-식 □돼지 □자/사육 □위탁사육 □자/사육·위탁사육 □종돈장 □기타									
		농장명	칭:								
(6)		사육시	설 소재지:								
가축사원		관리자	성명:					(전화번	호:)
71-1/1-	1112	GPS좌표	Ŧ:								
		사육개	시 연월일:								
			소				돼지	-			
		종류	두수	종류				내역(두	1	<u> </u>	T
@ JIC	. – –	소 계			소계	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① 사물	计上	한 우		일반종							
		육 우		재래종							
		젖 소		멧돼지							
「가축 및 청합니다.		이력관리	에 관한 법·	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벜 시행규칙	제5조저	1항에 [[h라 위와	같이 신
										월	일
					신청인	<u>l</u>				(또는 인)
					대리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 4	신청인	전화번호				
					유 의 사	항					

- 1. ①~④란은 신청인(위탁농장은 위탁자, 자가+위탁농장은 경영주 및 위탁자)에 대한 기초정보를 기재합니다.
- 2. ⑤ 란에는 사육가축의 종류 및 신청인이 자가·위탁사육을 분명히 하고, 종축장 또는 종돈장일 경우 같이 ☑ 표시합니다. ※ 자가사육+위탁사육: 신청인이 자가 및 위탁 혼합 사육 시 위탁자 정보(①∼④란)도 추가로 기재합니다. 3. ⑥란에는 신청인이 소유 및 관리하는 가축사육시설에 기초정보를 기재합니다.

- 3. ⑥단에는 신성인이 소유 및 관리하는 가숙사육시절에 기조성모들 기재합니다.
 4. 사육규모는 ①단에 소 또는 돼지의 사육두수를 기재합니다. 돼지의 경우 항목별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일반종: 우리나라 고유의 재래종을 제외한 서양종 및 모든 교잡종
 *서양종: 대요크셔(Large Yorkshire), 랜드레이스(Landrace), 두록(Duroc), 햄프셔(Hampshire), 웰시(Welsh), 피어트레인(Pietrain), 스포티이드(Spotted), 버크셔(Berkshire)
 나. 재래종(Korean native pig): 한국종축개량협회의 가축외모심사기준에 따른 재래종 고유의 외모기준을 유지하는 돼지, 실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다. 멧돼지: 가축화 되어 집에서 사육하는 멧돼지라. 모돈: 자돈을 생산하고 있는 번식용씨돼지 마리수 후보돈: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중인 후보돈 마리수 바 웃돈: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중인 후모돈 마리수

바. 웅돈: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중인 종모돈 마리수 사. 자돈(2개월 미만), 육성돈(2~4개월), 비육돈(4~6개월 이상)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농장식별번호 및 발급증 교부				
신청인								

제 호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OOTELY 200
농장식별번호:
가축사육시설 명칭:
가축사육시설 소재지:
가축의 종류:
농장경영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품질평가원장

※ 농장식별번호를 통보 받은 농장경영자는 사육 가축의 출생, 양수・양도(이동), 폐사, 변경신고,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표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농장식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돼지(종돈 제외) []양도·양수·이동 돼지 []사육 현황

※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접수	-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 즉시	
		① 성명					② 주민	<u> 등록번호(</u> 사	업자 또는 법업	인 등 록 번호)
	경영자	③ 법인	명칭							
	정보	④ 주소								
통		© 7714	(: 휴대전화번호: ⑤ 농장식별번호)
신		© 등정도 ⑥ 사육								
고			고세시 개시 연월	2101						
사	기축	() 사육 (8) 관리기		2 ≥			(6)	\	민등록번호	
' 항	사육시	(1) (10) 관리기					(9)) 신니사 T	-민중국민오	
O	설 정보	W 근디/	л 1 —			(전화번	√ē:	<u>.</u>	내전화번호:)
		⑪ 농장	유형	□ 종돈장		☐ AI센터		<u></u> 검정소		 식전문농장
				□비육전	문농장 🗆	일괄사육농정	ᅡ □기	타		
			(13)			(14)	세부내역	병(두)		
		⑫계(두)	종류	소계	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육현황		일반종		_		0 -		102	1 12
	신고		재래종							
			멧돼지							
		15 구분:	I			 이동 일자:				
		□ 양도	• 반출	□ 양수・병	반입 [1) 이동 두수:	<u></u> 총	<u></u> 두		
양도	· 양수					□ 모돈()	□ 후보등	<u>=</u> () □	웅돈()[□자돈()
(이동					□육성돈() 🗆 비	육돈()	
(반압	십 • 반출)					※ 자돈의 임사	니표시(페임	인트 색상, 표	도시모양 등:)
	신고	18 경영제	다명:		19	농장식별번	호:			
		20 사육지	[주소:							
								(전	화번호:)
				_		1항 또는 제(IEL	8조제2형	망 같은	법 시행규칙	^칙 제6조제1
೮	또는 제	10소세 1 8	강에 따다	- 위와 같0	I 신고압니	l나.		년	월	일
					신 고	인		_	_	_ (또는 인)
					대리 신교					(서명 또는 인)
		. == =-1			대리 신고	1인 연락처				
	숙산물	품질평	가원증	, 귀하						

유의사항

- 1. 란은 공통신고사항으로 모든 신고 시에 작성하며, 돼지의 경영자, 관리자에 대한 기초정보를 기재합니다.
- 2. 사육현황 신고는 ⑫~⑭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항목별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일반종: 우리나라 고유의 재래종을 제외한 서양종 및 모든 교잡종
 - *서양종: 대요크셔(Large Yorkshire), 랜드레이스(Landrace), 두록(Duroc), 햄프셔(Hampshire), 웰시(Welsh), 피어트 레인(Pietrain), 스포티이드(Spotted), 버크셔(Berkshire)
 - 나. 재래종(Korean native pig): 한국종축개량협회의 가축외모심사기준에 따른 재래종 고유의 외모기준을 유지하는 돼지, 실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다. 멧돼지: 가축화 되어 집에서 사육하는 멧돼지
 - 라. 모돈: 자돈을 생산하고 있는 번식용씨돼지 마리수
 - 마. 후보돈: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중인 후보돈 마리수
 - 바. 웅돈: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중인 숫돼지 마리수
 - 사. 자 돈: 2개월 미만
 - 아. 육성돈: 2~4개월령
 - 자. 비육돈: 4~6개월령 이상
- 3. 이동신고는 ⑮란에 양도, 양수 구분의 □에 √를 표시하고, ~⑩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 가. 이동일자: 돼지의 이동(양도·양수)일자
 - 나. 이동두수: 양도·양수 두수(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구분의 □에 √를 표시하고 두수기록)
 - 다. 경영자명: 신고인 입장에서 이동 전후 경영자 성명
 - 라. 농장식별번호: 이동 전·후 사육지 농장식별번호
 - 마. 사육지 주소: 이동 전·후 사육지 주소
- 4. 수입·수출신고는 ①~⑪란과 ②~⑭란을 적습니다. ※ ②라은 돼지에 개체(농장)식별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적으며, 원산지란은 수 입돼지만 해당합니다.
- 5. 이 신고서는 경영자 등이 직접 작성하되 본인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대리인이 작성하고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 6. 전화 및 구술의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은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서의 해당란에 그 내역을 적고 보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고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습니다.

농장	농장 식별번호	2		1	소			전화번호		
현황	대표자			사유	누구수	두(모돈	, 웅돈 , ㅈ	FE , 육성	성돈 , 비육돈	-)
	□ 식욕결핍		ị인 침흘 [:]	림 🗆 고	 1열 [□ 입술·혀·유두	·발굽 등 수:	포, 가피, ⁷	 웨양	
임상 검사	□ 최근 15일 □ 피부청색증					□ 여러마리가 □ 뒷다리마비	한곳에 포기	어져 있음	□ 설사	
매매·출하	농장 매매.	출하두수	3	두 (자돈 :	, 육성	돈 : , 비운	}돈: , 중	종모돈 등)	
구제역 예방접종	개체별 예방 (예방접종 시 하지 않은 자- 예방접종일 (것을 기	기가 도래 돈의 '이전 은 모돈의	구 분	일령(월령	1	개매·출하두수	이전 예방	접종일	다음 접종 예	정일
돼지열병	-11 -11 to 11 to 1	ગંગ નોનો	구 분	일렁(월링	g) 1	매매·출하두수	1차 예방집	검종일	2차 접종 예?	정일
예방접종	개체별 예방	십중 연왕				1			1	
2 -3 33	가축수집상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수집상. 운반업자,	운송업자	성명			전화번호			운반차량		
구매자 등	구 매 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 , , ,	출하 도축장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상기 가축은 돼지열병·구체역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인) 기재요령: 임상검사 항목은 해당사항에만 ∨표시, 자돈의 경우 "일령"을 기재하고, 위탁사육장의 경우 대표자란에 실소유주 기재							대표자란에 실			
	(간 약	<u> </u>	Z	절		취		선		
	(간 약])				취 방 접종확 약		선		
 제 호	(간 인 농장 식별	<u>]</u>)		ð·구제약				선 전화번호		
		<u>데</u>		·구제 ⁹	격 예1	방접종확역	인서	전화번호		=)
 제 호	농장 식별]) 돼 번호 자 □ 거품섞 내 폐사두수	지열병 인 침홀루 = ()	見・구제 	겨 예	방접종확역	인서 , 응돈 , : 발굽 등 수포	전화번호 자돈 , 육 :, 가피, 궤	성돈 , 비육돈 양)
 제 호 농장 현황	농장 식별 대 표 ² □ 식욕결핍 □ 최근 15일1])	지열병 인 침홀림 = () 사타구니	見・子제 人 は ロ ユ 日 田 り 日	격 예부 주 소 나육두수 □ 열 □ 비 □ 틀거림 □	방접종확 (두(모돈 입술·혀·유두·1 여러마리가 : 뒷다리마비	인서 , 응돈 , 발굽 등 수포 한곳에 포개	전화번호 자돈 , 육 :, 가피, 궤 어져 있음	성돈 , 비육돈 양	=)
 제 호 농장 현황 임상 검사	농장 식별 대 표 : □ 식욕결핍 □ 최근 15일·□ 피부청색증	J) H호 자	지열병 인 침홀림 = () 사타구니	見・子제 人 は ロ ユ 日 田 り 日	격 예	방접종확 (두(모돈 입술·혀·유두·1 여러마리가 : 뒷다리마비	인서 , 응돈 , : 발굽 등 수포 한곳에 포개 돈: , 종	전화번호 자돈 , 육 :, 가피, 궤 어져 있음	성돈 , 비육돈 양 □ 설사	
제 호 농장 현황 임상 검사 매매·출하 구제역	농장 식별 대 표 □ 식욕결핍 □ 최근 15일 □ 피부청색증 > 당장 매매・ 흩 개체별 예방집 (예방집중 시기하지 않은 자돈 예방접종일'은	기) 번호 자 □ 거품섞 내 폐사두수 (귀, 복부, 출하두수	지 열 년 인 침홀록 - () 사타구니 두	J ·구제 (후 예약 주 소 마육두수 열 □ 플거림 □ , 육성·	당접종확 두(모돈 입술·혀·유두· 이러라리가 뒷다리마비 돈: , 비육	인서 , 응돈 , , 발굽 등 수포 한곳에 포개(돈: , 종	전화번호 자돈 , 육 :, 가피, 궤 어져 있음 모돈 등	성돈 , 비육된 양 □ 설사)	ᆌ정일
지 호 · · · · · · · · · · · · · · · · · ·	농장 식별 대 표 : □ 식욕결핍 □ 최근 15일:□ 피부청색증 농장 매매 · [기) 번호 자 □ 거품섞 내 폐사두수 (귀, 복부, 출하두수	지 열병 인 침홀루 - () 사타구니 두 구 분	첫·구제	후 예약 주 소 마육두수 열 □ 플거림 □ , 육성·	방접종확(두(모돈 입술하유두, 이러마리가 뒷다리마비 돈: , 비육	인서 , 응돈 , , 발굽 등 수포 한곳에 포개(돈: , 종	전화번호 자돈 , 육· E, 가피, 궤 어져 있음 모돈 등 ᆒ방접종일	성돈 , 비육돈 양 □ 설사) 다음 접종 여	ᆌ정일
지 호 농장현황 임상시 매매·출하 구제역 예방접종 돼지열병 예방접종 수집상.	농장 식별 대 표 □ 식욕결핍 □ 최근 15일:□ 피부청색증]) 번호 자 □ 거품섞 내 폐사두수 (귀, 복부, 출하두수 김종 현황 리가 도래 드의 '이전 - 모돈의 재)	지 열병 인 침홀루 - () 사타구니 두 구 분	-구제 (부 예약 주 소 아육두수 열 □ 등거림 □ , 육성·	방접종확(두(모돈 입술하유두, 이러마리가 뒷다리마비 돈: , 비육	인서 , 응돈 , , 발굽 등 수포 한곳에 포개(돈: , 종	전화번호 자돈 , 육, 는, 가피, 궤 어져 있음 모돈 등 ᆒ방접종일 방접종일	성돈 , 비육든 양 □ 설사) 다음 접종 ○	ᆌ정일
지 호 농장현황 임상시 매매·출하 구제역 예방접종 돼지열병 예방접종 수집상. 운반업자,	농장 식별 대 표 □ 식욕결핍 □ 최근 15일□ □ 피부청색증 ' 농장 매매・ 현생점 중이 이 생점 중이 가는 예방접 중이는 지는 예방접 중이는 기 개체별 예방접 가는 기가 지 열 이 가 하지 않는 지는 이 기가 지 열 이 기가 지 열 이 기가 지 일 이 기가 되었다.	기	지 열병 인 침홀루 - () 사타구니 두 구 분	-구제 (여 주 소 나육두수 열 비 등거림 , 육성) 미 수 소 선화번호	방접종확(두(모돈 입술하유두, 이러마리가 뒷다리마비 돈: , 비육	인서 , 응돈 , , 발굽 등 수포 한곳에 포개(돈: , 종	전화번호 자돈 , 유 E, 가피, 궤 어져 있음 모돈 등 셰방접종일 방접종일	성돈 , 비육든 양 □ 설사) 다음 접종 ○	ᆌ정일
지 호 농장현황 임상시 매매·출하 구제역 예방접종 돼지열병 예방접종 수집상.	농장 식별 대 표 □ 식욕결핍 □ 최근 15일1 □ 피부청색증 농장 매매・ 등 개체별 예방접종 시기하지 않은 자돈 예방접종일'은 것을 기 개체별 예방접	기	지 열병 인 침홀루 - () 사타구니 두 구 분	見・구제	부 예 부 주 소 나육두수 열 별 □ 플거림 □ , 육성) 미 수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방접종확(두(모돈 입술하유두, 이러마리가 뒷다리마비 돈: , 비육	인서 , 응돈 , , 발굽 등 수포 한곳에 포개(돈: , 종	전화번호 자돈 , 육· E, 가피, 궤 어져 있음 모돈 등 제방접종일	성돈 , 비육든 양 □ 설사) 다음 접종 ○	ᆌ정일
제 호 농장한 임상시 매대·출하 구제역 예방접종 대상소 운반업자, 구매자 등	농장 식별 대 표 □ 식욕결핍 □ 최근 15일 ¹ □ 피부청색증 ** 함께 배면 예방접종 이기하지 않은 자전예방접종일 ¹ 은 것을 기개체별 예방접 가축수집상 운송업자 구 매 자	The state of t	지열병 인 침홀릭 - () 사타구니 두 구 분	見・구제	격 예	방접종확 두(모돈 입술·혀·유두· 여러마리가 뒷다리마비 돈: , 비육 매출하두수	신 서 , 응돈 , 원 발급 등 수포 한곳에 포개(돈: , 종 이전 여	전화번호 자돈 , 육, E, 가피, 궤어져 있음 모돈 등 제방접종일 전화번호 준반차량 전화번호	성돈 , 비육든 양 □ 설사) 다음 접종 ○	ᆌ정일
제 호 농장한 임상시 매대·출하 구제역 예방접종 대상소 운반업자, 구매자 등	농장 식별 대 표 □ 식욕결핍 □ 최근 15일 □ 피부청색증 ' 과본형색증' ' 상장 매매・ 현생점종' 이 가하지 않은 자전에방접종일'은 것을 기 개체별 예방접 가축수집상	The state of t	지열병 인 침홀릭 - () 사타구니 두 구 분	見・구제	역 예약 주 소 다 유 두 수 으 을 하였	항접종확 투(모돈 입술·혀·유두· 이러마리가 뒷다리마비 돈: , 비육 매·출하두수 마·출하두수 년	인서 , 응돈 , 발급 등 수포 한곳에 포개 ⁽ 돈: , 종 이전 ⁽⁾ 기차 예	전화번호 자돈 , 유 ., 가피, 궤 어져 있음 모돈 등 세방접종일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돈 , 비육든 양 □ 설사) 다음 접종 ○	ᆌ정일
제 호 농장현황 임상시 매대·출하 구제역 예방접종 돼지열병 예방접종 수집상. 운반업자, 구매자 등	농장 식별 대 표 □ 식욕결핍 □ 최근 15일 □ 피부청색증 ' 과본형색증' ' 상장 매매・ 현생점종' 이 가하지 않은 자전에방접종일'은 것을 기 개체별 예방접 가축수집상])	지열병 인 침홀링 = () 사타구니 구 분 구 분	-구제 (여 여 주 소 여 다 주 소 여 다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소 수 소 소 소 수 소 소 소 수 소 소 소 수 소 소 소 수 소 소 소 よ<	항접종확 투(모돈 입술·혀·유두·1 및다리마리가 뒷다리마비 돈: , 비육 매·출하두수 대·출하두수 음을 확인함 연 인 자 :	인서 , 응돈 , 발급 등 수포 한곳에 포개 ⁽ 돈: , 종 이전 ⁽⁾ 기차 예 나다. 월 일	전화번호 자돈 , 유 ., 가피, 궤 어져 있음 모돈 등 세방접종일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돈 , 비육든 양	계정일 세정일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졔

호

3 도축단계

1. 농장식별번호 확인 및 이력번호 부여

가. 농장식별번호의 표시여부 확인

○ 도축장 경영자는 <표8>의 "돼지의 이동 등 신고서"혹은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에 기재된 출하두수와 실제 출하두수 및 돼지 엉덩이에 표시된 해당 농장의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농장별로 계류장에 입고

<농장식별번호 표시>

- 농장식별번호 표시 : 돼지의 **오른쪽 엉덩이**에 표시
- * 하나의 차량에 농장식별번호가 같은 농장의 돼지만을 이동하는 경우 돼지의 일부(60두 이하시 10두이상, 61두 이상시 20%이상 표시)만 표시 할 수 있음



- 도축장 경영자는 도축전 출하 돼지의 농장식별번호의 표시상태를 확인 한 후 제대로 표시가 안 된 경우 소속 검사관에게 신고하고 검사관은 도축검사신청이 된 경우 이를 반려해야 함
- 한 대의 차량에 여러 농장의 모돈을 수집하여 운반하는 경우 개체별로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돼지의 몸에 페인트 등으로 추가 표시하여 도축시 농장단위로 구분·입고하여 농장별로 섞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확인절차>

- · (도축의뢰인) 농장식별번호가 기재된 도축검사신청서 제출
- · (도축장경영자) 도축검사신청서 접수 ⇒ 농장식별번호 확인 ⇒ 이력번호 신청 (이력관리시스템) ⇒ 이력번호 발급 ⇒ 이력번호 표시된 등급 신청서 제출 ⇒ 하차

O. 등록되지 않은 농장식별번호가 접수된 경우

A. 신고된 가축에 대해서는 검사관은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로 신고, 이력지원실은 등록여부 등 확인 후 농장식별번호를 확정하고 동 내용을 검사관에게 통보, 검사관은 해당사실을 도축장경영자에게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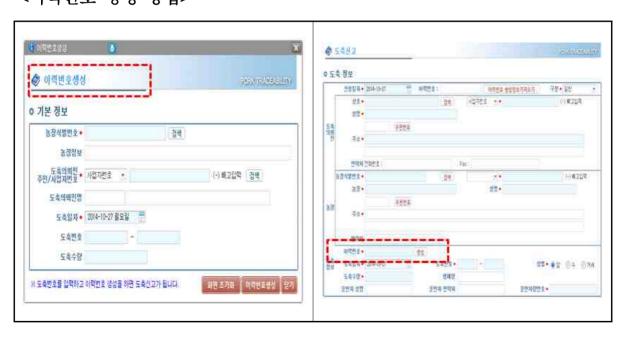
O. 농장식별번호가 틀리게 표시된 경우

A. 이력지원실(1577-2633)에 신고한 후 품질평가사가 농장 확인 등의 현장 실사를 통해 해당 농장의 농장식별번호 표시기상태를 확인

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및 발급

- O 도축업자는 농장별 출하두수를 확인한 후 이력관리시스템 혹은 도축 검사신청서 입력 프로그램을 통해 이력번호발급을 신청
- O 돼지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력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돼지고기이력제」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도축장별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표9>의 양식으로 도축전 또는 도축신고시에 이력번호 발급신청하여야 하며 자체 ERP를 사용하고 있는 도축장은OPEN-API를 이용하여 이력번호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음
- 이력번호: 축종코드(1). 농장식별번호(6). 일련(출하순번)번호(5)자리의 12자리

<이력번호 생성 방법>



다. 도축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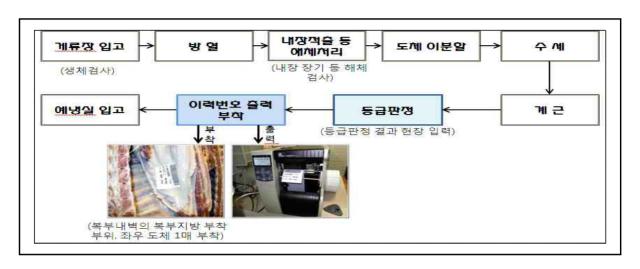
- 계류장에서는 농장단위로 입고하여 농장간 돼지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도축순번에 맞게 차례로 도축
- O 도축과정에서 레일을 벗어난 돼지가 발생시 도축장 경영자는 즉시 도축 번호에 맞는 농장번호를 검사관과 축산물품질평가사에 통보
- 검사관 및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신청서와 지육에 표시된 농장식별번호의 일치여부 확인 후 도축검사 및 등급판정 실시
- 축산물도축장경영자는 도축번호(농장식별번호 단위)와 이력번호가 일치 되게 표시되었는지 확인 후 반출
 - · 도축과정에서 표시의 오류가 있는 경우 휴대용표시기로 이력번호 표시 내용 정정(정상번호 기입) 후 반출가능

다. 도축처리 결과 신고

- 도축장경영자는 도축처리 결과를 <표10>에 의한 도축업자의 도축처리결과 등 신고서를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신고. 다만, 도축장에서 도축신청자 및 사육농가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력된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하여 신고할 수 있음
- 도축처리 결과의 신고기한은 도축 또는 경매가 완료된 날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축 또는 경매가 완료된 날부터 3일이내 신고

2. 이력번호의 표시

<이력번호 표시 프로세스>



- 도축장경영자는 도축하는 돼지의 농장식별번호가 포함된 이력번호를 해당 도체에 표시해야 함
- 도축장경영자는 도체에 표시된 이력 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 또는 탈락이 되지 않도록 관리
- 도체에 표시된 이력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이력번호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없는 위축돈, 통돼지 등에는 라벨지, 휴대용표시기 등의 방법으로 이력번호를 표시
- O 지육을 2분체 또는 4분체로 분할, 이동시 분할된 도체마다 이력번호 표시 등
- 도축장과 포장처리업소 시설이 직접 연결되어 도축 후 바로 포장처리 업소로 이동되어 개체 또는 농장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력번호와 대응된 도축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 도축장에서 도체를 2분체 또는 4분체로 분할하여 반출하여 이동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도체마다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

가. 「이력번호 자동표시기」를 이용한 표시

○ 도축장 경영자는 당해 도축장에서 도축 신고한 농장식별돼지를 도축한 후 도체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이력번호를 표시해야하며 이력번호는 이력 번호자동표시기를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음

이력번호자동표시기는 도축과정에서 등급판정 이후 돼지엉덩이 좌우에 이력번호 12자리를 잉크젯 방식으로 자동으로 표시하는 기계

- O 이력번호의 표시방법은 이력번호 자동표시기, 라벨지, 휴대용이력번호 표시기를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력번호 자동표시기를 이용하는 도축장경영자는 매일 기계의 성능과 잉크의 부족상태 및 이력번호 등의 표시상태 및 기계의 청소상태 등을 확인
- 이력번호자동표시기를 이용하는 도축장경영자는 도체에 표시된 이력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이력번호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없는 위축돈, 통돼지 등에는 라벨지 부착, 휴대용 이력번호 표시기 등을 이용하여 이력번호를 표시
- O 도축장 밖으로 반출하는 지육에 분할된 지육의 양쪽에 이력번호를 잘 표시 되었는지 확인하고, 반출업자가 이력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지육이 반출 하지 않도록 관리



<이력번호 자동표시기>



<표시방법>

나. 라벨프린터를 이용한 표시

- O 이력번호 자동표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도축장은 이력번호 전용 라벨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력번호 12자리가 포함된 라벨지를 돼지의 좌우 복부내벽 등에 부착
- O 라벨프린터에 의해 라벨지를 부착하는 경우 돼지가 이동중에 라벨지가 떨어지는 경우 같은 이력번호가 표시된 라벨지 등을 이용하여 표시



다. 휴대용 이력번호 표시기를 이용한 표시

- O 이력번호자동표시기 혹은 이력번호 라벨프린터가 전산장애 등으로 도축과 함께 표시하기가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휴대용 이력번호 표시기를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음
 - ※ 휴대용이력번호 표시기는 이력번호 12자리를 표시할 수 있는 휴대용 이력번호 표시기로 색소는 식용색소 적색3호 또는 식품첨가물공전에서 허용하는 색소를 사용

라. 이력번호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도축장과 포장처리업소 시설이 직접 연결되어 도축 후 바로 포장처리 업소로 이동되어 개체 또는 농장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력 번호와 대응된 도축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마. 귀표 등이 없는 가축의 처리

○ 도축장경영자는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돼지의 도축을 금지해야 함. 다만, 귀표 등이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농장 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가축을 도축 의뢰받은 경우 해당 시·도 소속 검사관에 신고하고, 검사관의 확인을 받은 도축장 경영자는 도축장 이력 번호 발급신청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이력 번호를 검사관에 알리고 검사관은 도축업자에게 통보

O 검사관으로부터 이력번호를 통보받은 도축업자는 돼지의 농장식별 번호를 근거로 이력번호를 생성 후 해당 번호를 도체에 표시

바.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번호가 생성되는 않는 경우

-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번호가 생성이 되지 않는 경우 도축장경영자는 이를 품질평가사에게 즉시 알리고 품질평가사는 이력번호(농장식별번호+일련 번호('9'로 시작하는 임의번호)를 해당지원으로부터 임의번호를 부여받아 도축장경영자과 이력지원실에 통보, 이력지원실은 해당번호에 대하여 결번 조치
 - 서울지원(90001~) 경기지원(91001~) 강원지원(92001~) 충북지원(93001~)
 - 대전충남지원(94001~) ■전북지원(95001~) ■광주전남지원(96001~)
 - 대구경북지원(97001~) ■부산경남(98001~) ■제주지원(99001~)

(예) 서울지원에 출하한 농가(농장식별번호 123456)의 전산장애시 이력번호: 1 123456 90001

사. 경매내역 신고

- 도축장경영자는 도축 또는 경매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도축 또는 경매가 완료된 날까지 신고.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
- 다만, 농협 축산물공판장의 경우 축산경제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내역을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음
- O 농협의 축산경제통합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도매시장의 경매결과는 TXT파일이나 Excel파일로 변경하여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전송가능

아. 도매시장 관리사항

- 축산물품질평가사는 경매내역이 경매가 완료된 즉시 정확한 경매내역이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관리
- 도매시장은 모돈이 많고 대부분 지육으로 반출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이력번호 표시 및 반출에 특히 유의
- O 증명서 발행
 - 도축장경영자는 경매 후 발행하는 증명서인 축산물낙찰서와 축산물공급 명세서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
 - 축산물낙찰서 및 축산물공급명세서
- 축산물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 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는 대상자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의 거래명세서 등 발급 대상자> (시행규칙 제20조)

- 1. 식육포장처리업자
- 2.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 3.「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 4.「식품위생법」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 6. 이력번호를 요구하는 구매자

자. 증명서 발급

○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이력번호를 기재한 도축검사증명서를 검사신청인 에게 교부하며, 축산물품질평가사는 등급이력번포가 표시된 축산물등급 판정확인서를 등급판정신청인에게 교부

3. 장부의 기록관리·증명서교부 등

- 도축업자는 도축처리 및 경매 결과를 장부 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날짜별로 기록·관리해야 하며 기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함
- 도축장 경영자는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www.lpsms.go.kr) 또는 이력관리 시스템에 신고할 수 있음

돼지 이력번호 발급신청서

아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침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	탕색이 어두	운 난은 신청인	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똑)
			처리기간	즉시				
	(대표자 !	또는 명칭)			생년월일(사업	얼자 또는 법	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도축	성명(대표자 !	또는 상호)			생년월일(사업	업자 또는 법	인등록번호)	
의뢰인	주소				연락처			
	농장명				성명(주민등록	록번호)		
출하 농장정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농장식별번호	-		
000±	주소	GPS	S좌표		연락처			
				_				
출하	출하 두수							
돼지정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신청서는 도축 출하시 농장식별번호 또는 도축 의뢰인별 단위로 작성합니다.

<亞10>

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제12조제3항 관련)

신고의 종류	신고 내용
신고의 종류	신고 내용 1. 검사신청인
도축처리 결과	5. 접수번호 6. 가축의 종류(소, 돼지) 7. 소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 수입소) 8. 성별(소, 종돈만 해당) 9. 연령(소만 해당) 10. 생체량 11. 총수량 12. 도체중량 13. 개체식별번호(소, 종돈만 해당) 14. 이력번호 15. 수입가축의 경우 가. 수출국가명 나. 검역계류장 도착일 16. 신청 연월일
경매 결과	16. 신정 연혈일 1. 개체식별번호(소만 해당) 2. 이력번호(돼지만 해당) 3. 접수번호(도체순번) 4. 지육・부분육 중량 5. 자체 도축이 아닌 지육・부분육의 경우 가. 지육・부분육 구분 나. 반입처 정보(업소・도축장명,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등) 6. 중도매인 가. 성명 나. 생년월일(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업소명 라. 주소(전화번호) 7. 경매 거래・반출처 가. 성명 나. 생년월일(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업소명 라. 주소(전화번호) 다. 업소명 라. 주소(전화번호)

그 밖에 도축처리 결과 및 경매 결과 신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포장처리 단계

1. 식육포장처리 실적 신고

가. 전산 신고대상(국내산 돼지고기)

-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 영업장의 시설과 분리 되지 아니하고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접(連接)한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평균(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연간 기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신규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규모나 사업계획 물량 등을 고려한 연간 예상 평균으로 산정한다)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국내산이력축산물 판매영업을 하는 자로 종업원 5인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50㎡이상인 식육판매업자

나. 신고기한

○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 돼지고기를 포장 처리 또는 거래(판매, 반출)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용어의 정의>

- 판매(販賣) : 포장처리업소에서 다른 식육판매업소 등에 판매하는 경우 이며 매출과 같은 의미임
- 반출(搬出) : 지육 혹은 부분육을 다른 포장처리업소나 식육판매업소 등으로 매출행위 없이 옮기는 것을 말함
- 매입(買入) : 식육을 포장처리하기 위해 도축장 또는 다른 포장처리업소에서 지육 혹은 부분육을 구입 하는 것을 말함
- 반입(搬入) : 식육을 포장처리하기 위해 지육 또는 부분육을 도축장 또는 다른 포장처리업소에서 매출발생이 없이 해당 업소로 옮기는 것을 말함

다. 이력관리시스템 이용권한 부여

- 영 제4조에 따라 국내산 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중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15>의 이력관리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
-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해당 사업장의 전산처리 능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한을 부여

2. 포장처리 방법

- 포장처리를 할 때에는 이력번호가 다른 개체와 섞이지 않도록 포장처리를 해야 하며 포장처리 실적 및 거래내역(매입·반입, 판매·반출)을 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의 판매 또는 반출 시 판매·반출처의 상호와 사업자번호 등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
- 재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입고되는 포장처리업소별 이력번호가 재 포장 과정에서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가공하여야 함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농장(이력번호)단위로 구분 포장처리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산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업소(미 전산신고 대상)에서 묶음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가 요구시 구성내역서를 제공
- 돼지고기 포장처리시 등외등급은 정상등급(1⁺,1,2등급)별도로 구분하여 포장처리하며 정상등급과 등외등급을 동일하게 포장처리 하는 경우에는 정상등급과 동일한 이력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등외등급의 돼지고기와 묶음을 구성하여 다른 묶음번호로 표시하여야 함

[이력번호 단위 포장처리]

- 농장식별돼지고기를 포장처리 할 경우 농장 간 혼입이 없도록 이력번호 단위로 구분하여 포장처리

[묶음번호 단위 포장처리]

- 묶음번호를 구성한 이력번호는 다시 묶음번호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묶음번호 구성내역을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전산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 번 더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음

< 식육 재 포장처리 과정>



3. 포장처리 및 거래내역 신고

가. 신고방법

- 영 제4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돼지고기를 포장처리 하는 경우 <표11> 서식의 포장처리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 영 제4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을 거래하는 경우 <표12>서식의 거래내역신고서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 전산신고대상이 아닌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이력관리축산물을 포장처리 할 때에는 <표11>서식의 포장처리 실적신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표12>서식의 거래내역 신고서를 기록 관리(단, 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음)

○ 신고내용

- 거래신고 : 신고인, 출고(입고)처, 거래처, 거래내역
- 포장처리 신고 : 업체정보, 포장처리일, 이력(묶음)번호, 원료 또는 부위명, 무게, 매입·반입처, 의뢰업체명(포장처리를 의뢰한 업체의 상호, 법인 번호 등)

나. 지육거래시 신고 방법

○ 전산신고대상인 포장처리업소에서 지육을 매입·판매(반출)하는 경우에는 <표12>서식에 의한 이력번호가 포함된 개체별 내역을 이력관리 대상축산물 거래내역신고서에 신고

다. 다른 포장처리업소 등에서 포장처리를 의뢰하는 경우

○ <표11>서식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 중 ⑥의뢰업체명란에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신고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

작성 시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소재지

포장 처리일	② 이력(묶음) 번호	③ 원료 또는 부위명	④ 무게 (kg, t)	⑤ 매입・반입처			⑥ 의뢰업체명			
					사업자 또는	전화		사업자 또는	전화	
				상호	법인	ᆫ . 번호	상호	법인	ᆫ . 번호	
					등록번호			등록번호		
				1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력 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내역을 신고합니다.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유의사항

- ① 포장 처리일은 매입 또는 반입된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포장 처리한 날짜를 적습니다.
- ② 이력번호는 매입 당시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 12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은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작성하고 보관(이력관리시스템 전산신고 포함)해야 합니다.
- ③ 원료 또는 부위명은 해당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매입한 도체 또는 부분육의 명칭을 적습니다.
- ④ 무게는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무게(kg 또는 t)를 적습니다.
- ⑤ 매입·반입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구입한 업체의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도축장에서 직접 매입·반입한 경우에는 도축장의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⑥ 의뢰업체명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등에 의하여 의뢰되어 포장처리된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의뢰업체의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및 전화전호를 적습니다.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신고서

아래 및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법인명)				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			<u>l</u> 등록번호)	등록번호) 연락처					
	영업허가(신고)번호				-				
	주소								
(출고 입고)처	영업장의 명칭(상호)				영업허가(신고)번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성명(법인명)				대표자				
-1-0-1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연락처				
거래처	영업허가(신고)번호				-				
	주소								
거래내역	거래일		도축일		가공일				
	이력번호 도축번호			원료 또	는 부약	위명			
	수량(BOX, 마리)			무게(kg, t)					
	축산물 이력관 산물의 거래내		률」 제17조 다.	 및 같은 법	시행규	—— 칙 제1	8조제1항제1	호에 따리	

녀 웤 약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유의사항

- 1. (출고·입고)처란은 판매·반출신고의 경우에는 "출고"에, 매입·반입신고의 경우에는 "입고"에 "O"표를 하고, 국내산이력축산물이 포장처리 또는 보관되어 있는 창고의 영업장 명칭(상호) 및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 국내산이력축산물 거래내역 신고서는 거래처별로 작성합니다.
- 3. 거래내역이 다수인 경우에는 뒤쪽의 거래내역 목록을 작성합니다.
- 4. 이력번호는 거래 당시 국내산이력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는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첨부합니다.
- 5. 원료 또는 부위명은 거래한 국내산이력축산물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부위별(예: 갈비, 목살, 제4위, 목뼈 등)로 최대한 세부적으로 적습니다.
- 6. 수량 및 무게는 거래한 물량을 박스 수량과 무게[kg 또는 t(톤)] 단위로 적습니다. 다만, 도체 지육으로 거래하는 경우 도축일, 가공일, 도축번호를 적고, 수량에 두수(마리)와 무게(Kg)로 적습니다.

								(쪽)
		도축일	가공일	이력	도 축	원료 또는	수량	무게
()	(연월일)	(연월일)	번호	번 호	부위명	(BOX, 마리)	(kg, t)
						,		

유의사항

거래내역이 다수인 경우에 작성하며, 거래일별로 각 이력번호, 원료 또는 부위명, 거래 수량(BOX 또는 도체 지육의 경우 마리) 및 무게 (단위는 kg 또는 t(톤)으로 표시 가능)를 적습니다.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판매·반출 실적

작성 시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소재지

	② 이력(묶음)번호	③ 원료 또는 부위명	④ 팬턍	판매처・반출처			
판매일 • 반출일	(公 이덕(末吉)면오		(kg, t,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유의사항

- ① 판매일 반출일은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판매하거나 반출한 날짜를 적습니다.
- ② 이력번호는 판매·반출 당시 해당 쇠고기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은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③ 원료 또는 부위명은 해당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에서 판매하거나 반출한 원료(도체) 또는 부분육의 명칭을 적습니다.
- ④ 판매량은 판매한 물량의 수량(박스)과 무게(kg 또는 t) 단위로 적습니다.
- ⑤ 판매처 반출처는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한 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 장부의 기록 방법

○ 대상

-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취급하는 모든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

○ 기록내용

- 대통령령으로 지정 된 식육포장처리업자(5인이상, 도축장 연접)는 식육을 포장처리한 경우 <표11>에 의한 포장처리실적을, 거래한 경우는 <표12호>에 의한 거래내역신고서를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날짜별로 구분하여 관리
-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식육포장처리업자(5인 미만)는 식육을 포장처리한 경우<표11>와 업체간 거래한 경우<표13>를 장부에 기록 관리

○ 장부의 비치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쇠고기의 포장처리 또는 거래·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기록일부터 2년간 보관

○ 영수증・거래명세서 교부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나, 축산법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함

판매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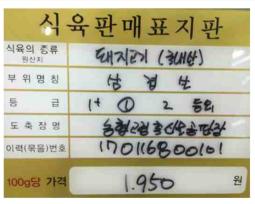
- 1. 거래(전산)신고 대상 방법 및 절차
 - 가. 전산 신고대상 : 국내산 돼지고기(쇠고기 포함)
 - 식육판매업소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판매영업을 하는 종업원 5인 이상 또는 영업장 면적이 50㎡이상인 식육판매업자로써 국내산 쇠고기와 돼지 고기를 취급하는 업소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6)에 의한 기타식품판매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
- 나. 신고절차 : 거래신고 대상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아래의 신고내용을 전자적으로 신고
 - □ 신고 내용 : 국내산 축산물의 거래실적
 - 신고인(성명, 대표자, 법인번호, 영업허가번호), 출·입고처(영업장 명칭,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영업허가번호), 거래처, 거래내역(거래일, 이력(묶음)번호, 제품명(부위명), 수량, 무게, 도체번호 등
 - 다. 신고기한 : 거래한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라. 장부의 보관 : 매입기록 1년간, 매출기록 2년간 보관

2. 이력(묶음)번호의 표시방법

□ 이력(묶음)번호 표시방법 및 이력번호의 관리

- 도체 또는 포장 처리된 부분육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확인한 후 재 포장 또는 식육판매업소로 판매 등 이동을 할 경우 동일한 이력번호를 표시
- 표시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포장육의 최소단위의 용기, 포장에 동일한 이력번호를 표시
- 식육판매업자는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으로부터 매입한 국내산이력축산 물을 판매할 경우 포장육 등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확인한 후 식육 판매 표시판 등에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
- 이력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국내산이력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된 이력번호는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관리
- 이력번호는 12자리로 표시
 - 묶음번호 표시의 경우 L+14자리가 원칙이나, 전자저울 등에서 동 방식으로 표현이 어려운 경우 로트(lot 또는 L)를 포함한 연월일과 일련번호의 조합 또는 연월일, 일련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조합으로 표시가능
- 이력번호 표시 예시(돼지의 경우, 등급은 자율적으로 표시가능)





○ 거래·판매 후 남은 국내산이력축산물을 보관하는 경우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보관

3. 거래내역 전산신고·기록방법

가. 전산신고 방법

- 영 제4조에 의한 식육판매업자가 국내산 이력축산물을 거래하는 경우 <표12>서식의 거래내역신고서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 전산신고대상이 아닌 식육판매업소에서 국내산이력축산물을 거래할 때는 거래내역신고서를 장부로 기록 관리(단,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

<신고내용>

- ① 신고자 정보 :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영업인허가 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 ② 출고(입고처) 및 거래처 정보
 - 영업자 명칭, 영업인허가 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 ③ 거래내역
 - 거래일자, 이력·묶음번호, 제품명(부위명), 수량, 무게, 도체번호 등

나. 거래내역서 기록방법

- 영 제4조에 의한 거래신고 의무자인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매입한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이력번호(묶음)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날짜별로 기록 관리해야 하며,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식품 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게판매・반출한 경우 <표13>서식에 따른 판매・반출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통하여 기록관리
- 영 제4조에 의한 거래신고 의무대상이 아닌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매입한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이력번호(묶음)를 자체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식육 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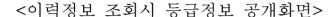
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판매·반출한 경우 <표13>서식에 따른 판매·반출 실적을 장부에 거래일별로 기록관리(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도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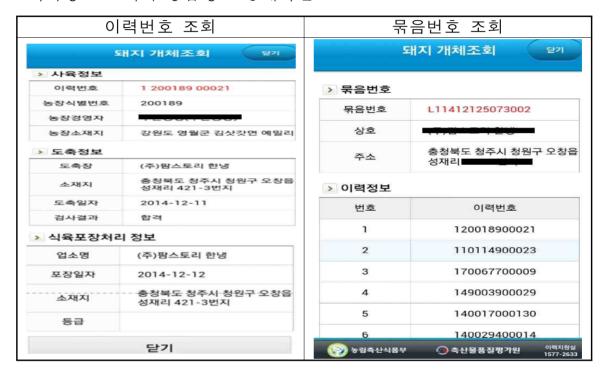
- 축산물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 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
- 법 제18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 명세서"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 별표12 및 별표13에 따라 해당 영업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말함

4. 이력정보의 공개

- 이력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는 등 소비자가 이력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판매표지판의 등급표시는 식육포장처리업소와 판매장 등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특정등급이상으로 묶인 경우에는 구성된 최하위 등급을 표시
-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이력번호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이력번호가 구성된 개체의 가장 낮은 등급이 표시되며, 묶음번호는 <표16>의 구성 내역서 중 '⑦ 등급'란 신고한 등급이 조회 됨. 즉, 1개의 등급(단일등급) 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등급이 공개되고, 1⁺, 1등급으로 묶인 경우 에는 1등급이상(1⁺,1등급 포함) 으로, 1⁺,1 ,2등급으로 묶인 경우에는 2등급 이상(1⁺,1,2등급 포함) 으로 공개
- 포장처리업소를 포함한 식육판매업소는 최종 소비자 편익의 입장에서 특정등급, 성별 등의 표시가 구체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가축과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음
 - 1. 농장식별번호, 2. 소,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3. 이력번호 4. 출생(등록)연월일 또는 수입연월일, 5. 가축의 종류, 6. 암수 구분, 7. 농장경영자의 성명(법인명), 8. 사육시설의 소재지, 9. 도축장의 명칭 및 소재지, 10. 도축일 및 도축검사결과, 11. 축산물등급판정 결과 12. 식육포장처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이력관리대상가축이 가축및축산물식별 대장에 등록된 날부터 도축·폐사·수출된 후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

5. 전산신고를 위한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신청방법

- □ 이력관리시스템에 전산신고를 희망하는 식육판매업소는 돼지고기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이력관리시스템이용신청서<표15>를 다운로드하여 농림 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1577-2633)로 신청
 - '이력관리시스템 이용신청서'서식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www.mtrace.go.kr) 자료실 등재

거 래 내 역 서

식육・ 물량 매입처 래 원산지 부위 이력(묶음) 포장육의 등급 도축장명 연월일 번호 명칭 (kg) () 종 류

< 丑15>

	「가		처리기간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신청서 30일							
	①업체명				② 점포명 ※해당업체만 기재			
신	③사업자 등록번호	000-00	0-00000		④신고필증 번호	0000000	-000-0000-0000	
청	⑤소재지					(우편번	[호:)	
인	⑥대표자 성 명			(인)	⑦생년월일 또는 법인번호	000000-	0000000	
	⑧영업장 면적	m²	⑨종업원수	명	⑩전화번호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 ※ 구비서류
 - 1. 신고필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 이력관리시스템 등록 업무 담당자 1부(별첨)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이력관리시스템 업무 담당자

<대표자>

성명	직책	휴대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담당자>

성명	직책	휴대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문의: 1577-2633

팩스: 031-390-5559

묶음번호 관리요령

1. 묶음번호

가. 묶음번호 표시 방법

-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판매업자가 여러 개의 다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 처리·판매할 경우 이력 번호를 전부 표시하거나 <표16>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한 후 묶음 번호를 사용할 수 있음
-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등급표시 의무 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등은 같은 등급으로 포장한 경우에만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음
- 여러 개의 다른 이력번호를 하나의 포장지로 묶은 경우 소포장지마다 해당 이력번호를 표시
-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소의 종류가 같을 때에만 묶음 번호를 구성할 수 있음
- 묶음번호를 구성한 이력번호는 다시 묶음번호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묶음번호 구성내역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전산신고를 하는 돼지 고기의 경우 한 번 더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음
- 돼지고기의 묶음번호 가공시 선택적으로 성별, 등급별로 묶음번호 구성을 권장

나. 묶음번호의 관리

-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쇠고기의 개체는 20마리 이하로 함. 다만, 여러 마리의 쇠고기를 혼합하여 포장하는 갈비, 세절육, 분쇄육 등은 50마리 이하로 구성할 수 있음
-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돼지고기의 이력번호는 30개 이하로 함
-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는 구매자 등이 요청한 경우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함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산신고대상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는 소비자가 묶음번호를 인터넷 등으로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전산신고

○ 하나의 이력번호에서 특정등급이상으로 포장처리 하는 경우에도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음

다. 묶음번호 구성 체계

○ 묶음번호는 아래 구성체계와 같이 L을 포함한 문자, 숫자로 표시. 다만 전자저울 등에서 동 방식으로 표현이 어려운 경우 로트(LOT 또는 L)를 포함한 연월일과 일련번호의 조합 또는 연월일, 일련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의 조합으로 표시할 수 있음

<묶음번호의 구성체계>

구분	묶음고정코드	구분코드	묶음날짜코드	영업자코드	일련번호
길이	1	1	6	4	3
타입	영문자(L)	숫자	숫자	숫자	숫자

- 가. 묶음고정코드는 영문자 'L'을 표기한다.
- 나. 구분코드는 쇠고기는 '0'으로 하고, 돼지고기는 '1'로 표기한다.
- 다. 묶음날짜는 연도 2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로 표기한다.
- 라. 영업자코드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 (1). 포장처리실적 전산신고 대상 영업자의 경우 : 이력관리시스템으로 부여 받은 영업장의 고유번호를 사용한다.
- (2). 포장처리실적 전산신고 대상 영업자가 아닌 경우 : 영업자코드는 세무 서에 부여 받은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숫자 중 끝에서 마지막 한 자리 숫자를 제외한 4자리 숫자를 사용한다.
- 마. 일련번호는 묶음상품의 일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부여한다.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① 연월일	② 구분	③ 묶음번호	④ 부위명	⑤ 이력번호	⑥ 구성개체수 (구성번호수)	⑦ 등급
2014.12.28.	국내산 돼지고기	L11412281234001	삼겹살	16005840004	2	
			목심	18009450005		
			전지			
			후지			
		L11412281234002	삼겹살	17505840008	4	1등급이상
			목심	14009450009		
			전지	18808540010		
			후지	16508020011		
			갈비			
			등심			

유의사항

연월일은 묶음번호를 구성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 ② 구분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종류인 국내산쇠고기, 국내산돼지고기, 수입산쇠고기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③ 묶음번호는 별표 14에 따라 조합한 숫자를 적습니다.
- ④ 부위명은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모든 부위를 적습니다. 다만, 국내산돼지고기 또는 수입산쇠고기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⑤ 이력번호는 묶음을 구성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해당되는 모든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 ⑥ 구성개체수는 묶음을 구성하는 해당 쇠고기의 마릿수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쇠고기의 이력번호의 수가 5마리인 경우에는 "5"로 적습니다. 국내산이력축산물 중 돼지고기 또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이력번호의 수를 적습니다.
- ①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 등급별 구성인 경우에 해당 이력번호별 등급을 적습니다.

DNA 동일성 검사

1. 검사추진체계

가. DNA동일성검사의 실시목적

- 돼지고기이력제의 유효성을 확인·감시함으로써 소비자 등으로부터 신뢰 확보
- 위생·안전성, 원산지 표시 등의 문제 발생에 대비한 추적검사 시스템 확립으로 문제발생시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 폐기 등을 신속하게 조치

나. 시행기관

○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다. 이력단계별 지도단속 ·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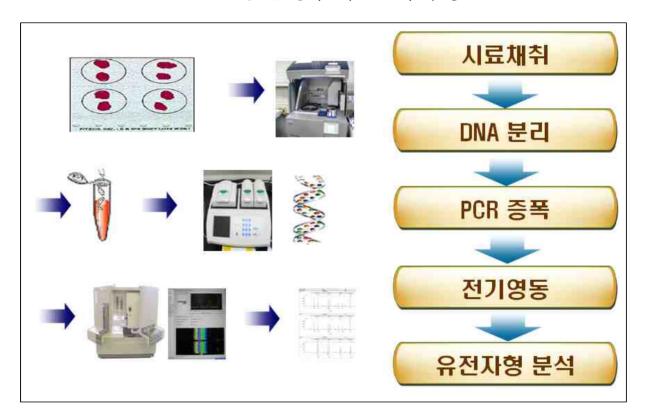
- 지도단속(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검사 및 수거)
- 시·도 : 사육농가,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식육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유통 전문판매업소
- 모니터링(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거 및 검사)
- 축산물품질평가원 : 사육농가,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 모니터링 : 축산물품질평가원(이력정보 검증, 단속기관 정보제공)
- 이력단계별 시료채취 및 검사기관(모니터링 포함)
- 도축단계 : 축산물품질평가원(시료채취 및 보관)
- 포장처리단계 : 시·도, 축산물품질평가원
- 판매단계 :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라. DNA동일성검사의 분석 및 판정절차

- 분석과정
- 일반적인 DNA동일성검사의 분석과정은 5단계로 실시

시료채취 ▷ DNA추출 ▷ PCR증폭 ▷ 전기영동 ▷ 유전자형 분석

DNA동일성검사 분석과정



2. DNA 동일성검사의 시료채취 및 관리

가. 검사용 시료의 채취

○ DNA 동일성검사 검사용 시료채취 방법

	업무흐름	추진요령
시료채취 후 지퍼백에 밀봉	300	칼, 가위 등 도구를 이용하여 살코기 부분을 약 20g 채취, 이를 약 10g정도로 이등분, 작은 크기의 지퍼백(5cm×10cm)에 밀봉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과 채취시료 봉투 밀봉		지퍼백에 넣은 시료는 발송대장에 기록한 후, 시료 채취 확인서 사본과 함께 시료봉투에 밀봉
담당자간 서명날인	The same state state of	지정판매장 담당자와 시료채취자 쌍방이 밀봉한 부분에 서명 날인
검사용 지정봉투의 추가봉인	The state of the s	밀봉한 검사용 시료채취 지정봉투를 큰 크기의 지퍼백(25cm×30cm)에 넣음
분 석 실 우 송	Self-Augustania August	지퍼백에 넣은 검사용 시료채취 지정봉투를 얼음 및 냉매와 함께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밀봉한 후, 축산물품질평가원(유전자분석실)에 택배 등을 이용하여 우송

나. 검사용 시료채취 및 운송 방법

- 포장처리업소·판매장에서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상태로 판매(포장 또는 대면)되는 경우에만 시료를 채취
- 채취방법은 날카로운 도구(칼, 가위 등)를 사용하여 살코기 부분을 약 20g 채취하고 이를 약 10g 정도로 2등분하여 각각 지퍼백에 밀봉
- 채취한 시료는 지정된 봉투에 넣어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과 함께 밀봉하고, 판매자와 시료 채취자 쌍방이 밀봉한 부분에 서명 날인하여 축산물 품질평가원(유전자분석실)에 택배 등을 이용하여 우송

다. 시료채취 및 우송시 주의사항

- 세척 후 채취기구(핀셋)에 이물질이나 혈흔이 없도록 할 것
- 동일성 검사에서 다른 개체의 조직 및 혈흔이 묻어 있으면 오염이 일어나 다른 개체로 판명이 나거나 다른 개체 같다고 판명이 날 수도 있음
- 사용시 물기 없이 완전히 건조 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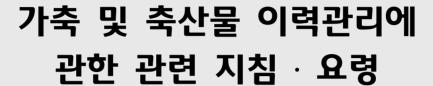








- 여름철(5월~10월)시료는 얼음과 냉매 등을 이용하여 우송
- 온도 상승시 부패 등으로 DNA가 손상될 우려가 있음
- DNA 시료채취 확인서 및 시료봉투작성은 볼펜 등을 이용할 것
- 얼음과 냉매 등이 있을 경우 번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1. 농장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요령
- 2. 사육단계 전산신고 요령(한돈팜스 VS 이력관리시스템)
- 3. 이력번호 자동표시기 관리요령

이력관리에 관한 관련지침 · 요령

1 농장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요령

1. 목적

이 요령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력 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을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농장식별번호 관리요령에 대해 규정하여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 가. "농장식별번호"란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이하 "가축 사육시설"이라 한다)을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 사육시설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 나. "이력관리대상가축"이란 소와 돼지를 말한다.
- 다. "이력관리시스템"이란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출생, 이동, 폐사 등의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라. "농장경영자"란 농장을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 실제 농장을 경영하는 위탁경영자 및 관리책임자 등을 말한다.
- 마. "현장 확인"이란 농장식별번호 발급을 위해 축산농장 기본정보에 대한 정합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농장식별번호 체계

- 농장식별번호에는 권역코드(1자리), 일련번호(5자리)로 구성된 6자리의 고유 번호로 구성
 - 권역코드 : 서울·인천·경기(1), 강원(2), 충북(3), 세종·대전·충남(4), 전북(5), 광주·전남(6), 대구·경북(7), 부산·울산·경남(8), 제주(9)

4. 농장식별번호 부여

가. 부여 대상

-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사육하는 일정 경계 선상에 있는 지번단위의 모든 가축사육시설을 대상으로 함
-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사육, 휴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축사육시설에 농장식별번호 부여, 단 폐업의 경우 부여대상에서 제외

나. 부여 기준

- (1) 축종에 관계없이 가축사육시설을 기반 '땅(지번) 중심'으로 1개의 농장 식별번호 부여
 - 부여된 농장식별번호는 농장경영주, 관리자 등의 정보의 변동이 있어도 땅 중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변하지 않음
- (2) 동일 지번의 가축사육시설에서 물리적으로 농장경영자(신청자)가 분리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신청을 받아 다른 농장식별번호를 부여 할 수 있음
 - 농장식별번호 추가 발급을 원하는 경우, 사육시설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증빙서류(축산업등록증) 등을 이력지원실에 제출
- (3) 이력관리대상가축을 함께 사육하는 시설은 단일 농장식별번호 사용

다. 부여 방법

- (1) 농장식별번호는 권역코드(1자리), 일련번호(5자리)로 구성된 6자리의 고유번호를 부여
- (2) 6자리 고유번호는 첫 번째 자리를 권역코드, 두 번째 자리를 축종별 구분하여 행정자치부의 법정동순으로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됨

1	0	0	0	5	6
1	2	3	4	5	6
권역코드	축종코드		일련	번호	

○ 축종별 구분은 다음과 같이 분류

- 소 : 1, 2, 3, 4번

- 돼지 : 0, 8, 9번

(3) 단, 돼지 사육시설의 농장식별번호는 배부된 농장식별번호 표시기를 기초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신규 사육시설은 이미 부여된 농장식별번호 다음부터 부여 방법(2)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

라. 부여 절차

- (1) 신규농장 개설자 또는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사육시설의 농장경영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
-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사육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육시작일 5일 전까지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를 이력지원실에 제출
 - 다만, 지리적 여건으로 서면으로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같은 신청서의 내용을 신청할 수 있음
- 소를 사육하고자 하는 농장경영자는 해당지역 위탁기관을 경유하여 이력 지원실에 발급신청서를 제출
-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의 기입사항은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에 따름
- (2)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접수된 발급신청서의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을 통해 농장식별번호 부여

- 소의 경우 부여된 농장식별번호가 소 사육시설에 정확히 부여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위탁기관 등의 관계기관에 현장 확인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음
- 돼지의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부여된 농장식별번호가 돼지 사육 시설에 정확히 부여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
- (3) 신청된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됨과 동시 농장식별번호 발급 및 등록대장의 내용을 이력과리시스템으로 기록·관리
- 농장식별번호 발급 및 등록대장 내용은 <표18> 서식에 따름
- (4) 최종 확정된 농장식별번호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농장 식별번호 발급증(이력관리시스템으로 통지를 포함)을 교부

5. 농장식별번호의 폐업 및 승계

가. 추가발급

- 동일 농장식별번호 가축사육시설에서 농장경영자의 추가를 원할 경우 농장경영자 추가 신청서<표17>를 작성하여 이력지원실로 제출
 - 신청인은 농장경영자 추가 신청서에 최초 농장경영자의 확인 및 서명을 받아 이력지원실에 제출

나. 폐업

- 가축사육시설의 폐업 등으로 농장식별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력 관리시스템에서 해당지번에 부여된 농장식별번호가 회수(결번)되며, 동일 지번의 사육시설을 재개할 경우 해당 농장식별번호 사용 가능
 - 소의 경우 위탁기관에서 관리농장의 폐업정보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
 - 돼지의 경우 농장경영자가 직접 폐업신고 하거나, 시·도(시·군·구)에서 이력지원실로 폐업 사실을 통보

다. 승계

-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을 승계한 농장경영자는 해당 지번의 농장식별번호를 그대로 사용 가능함
 - 농장경영자는 가축사육시설의 소유권 변동여부 등에 대하여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력지원실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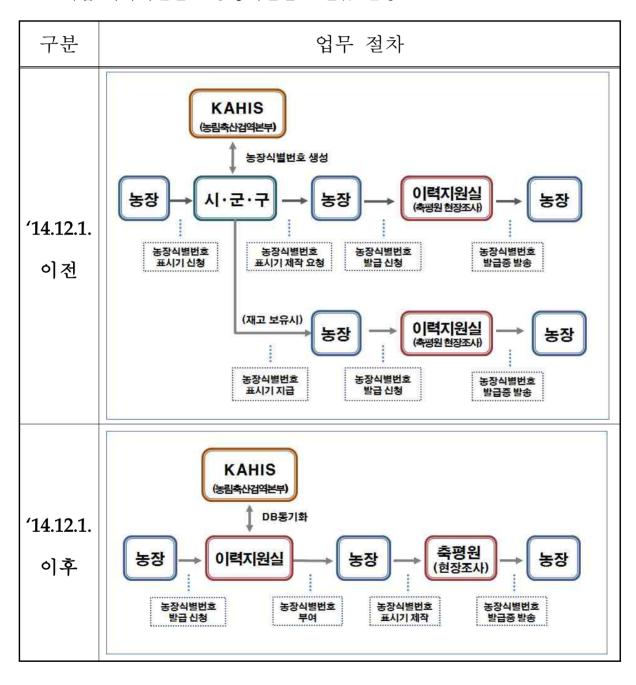
6. 농장식별번호 및 축산농장 정보 제공

- 최종 부여된 농장식별번호와 축산농장 정보는 가축방역 등에 활용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통합DB과 연계
 -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최종 부여한 농장식별번호를 농림축산검역 본부의 통합DB 관리시스템에 주기적으로 동기화하여 제공

<참고자료>

□ '14.12.1 부터 발급 절차 변경사항

- O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농장식별번호 생성 업무를 축평원으로 이관
- 시·군·구에서 KAHIS로 농장식별번호 생성요청이 중단되고 농가에서 직접 이력지원실로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



Ⅱ 돼지사육시설 현장 확인 방법

가.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농장의 방문일정 등록 및 주소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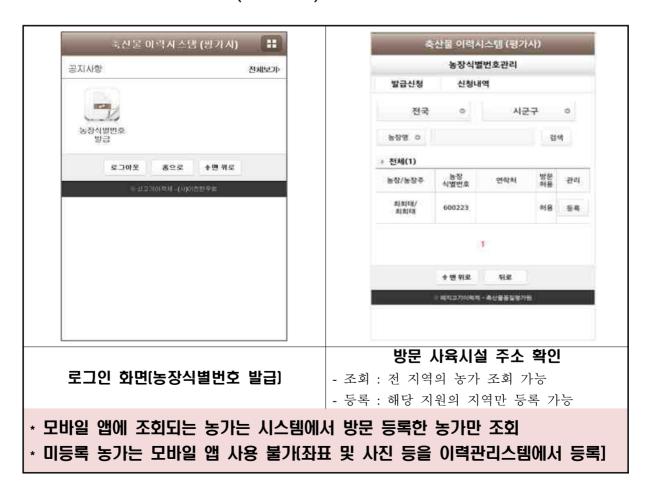


- 나. 돼지사육시설 정보(사진 등) 등록 모바일 앱 설치
 - 모바일 앱 주소: m.mtrace.go.kr/down.mdo





다. 돼지사육시설 정보(사진 등) 등록 모바일 앱



라. 농장 위치(GPS 좌표) 등록





농장위치(GPS좌표) 좌표등록 선택

현재위치(입구) 좌표생성

- * 현재 위치 클릭
- * 첫 화면 : 조사농가의 GPS 좌표 현위치 클릭 후 화면 : 평가사 현재 좌표



좌표등록

- ① 농장주(KHAIS)에 해당하는 위치 표시
- ② 현재 위치 표시
- ③ 현재위치로 이동 버튼 클릭(②번 표시가 현재 위치로 이동)
- ④ 좌표값 보내기 버튼 클릭(수정화면으로 현재위치 좌표값 전송)

마. 농장 입구사진 업로드



바. 농장식별번호 표시기 사진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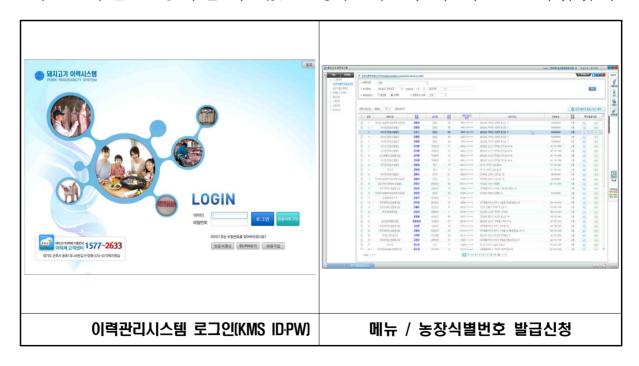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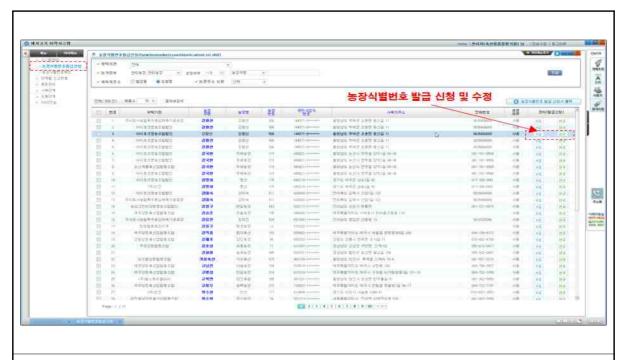
사. 농장식별번호 표시기(종이에 찍은) 사진 업로드

→ 표시기를 일반 용지에 찍어 사진 상으로 동 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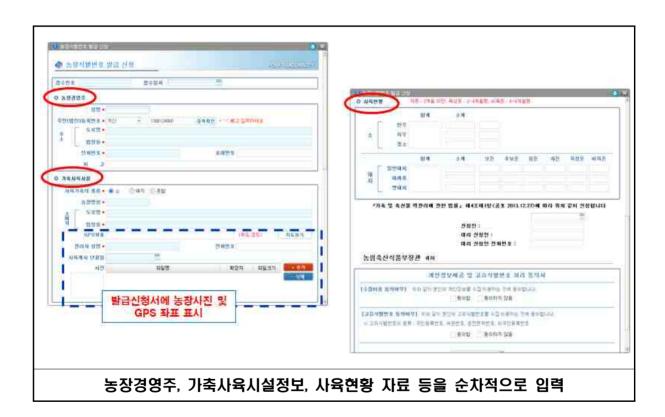


아. 모바일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시스템에 자료를 직접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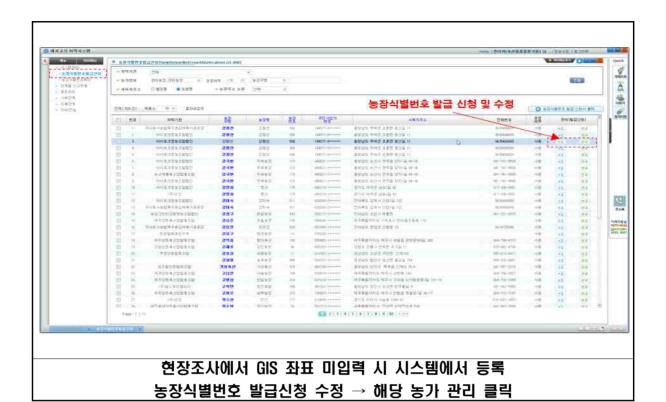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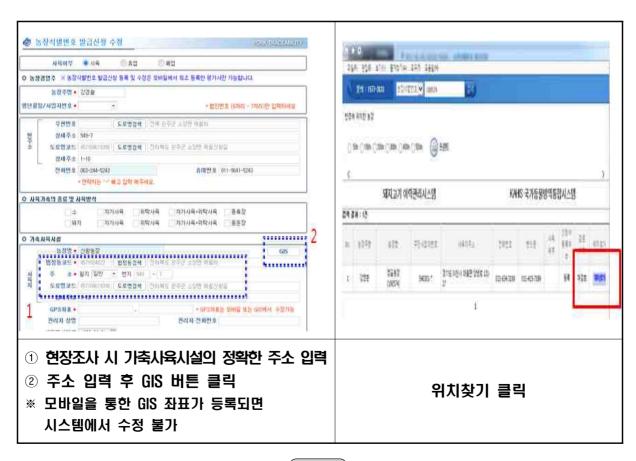
해당농가 선택후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 관리 등록



※ 입력과 검증이 끝난 농가는 완료버튼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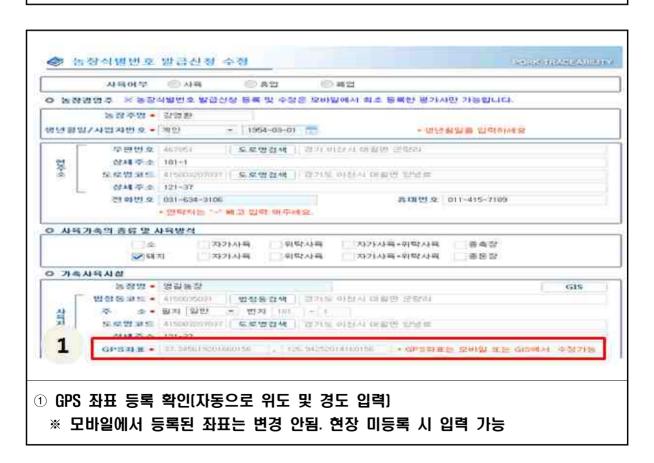
자. [이력관리시스템에서 GPS 좌표 및 사진 등록 요령]







- ① 조사 후 시스템에 등록한 주소 표기(정확한 주소 입력)
- **②~③ 해당되는 주소에 [60] 표기되며, 위도 및 경도 표기**[®]
- ④ 위치 및 좌표 확인 후 GPS 좌표 수정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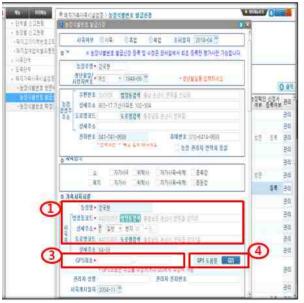
모바일 GPS 좌표 등록 기능 삭제 및 사진 등록 개수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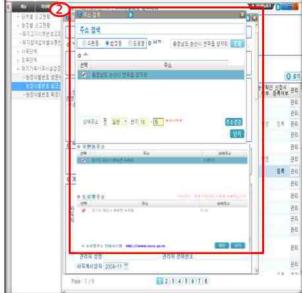


농장식별번호 표시기 사진 1매 표시기를 종이에 찍은 사진 1매

농장식별번호 표시기와 번호를 기재한 사진 1매

시스템에서 GPS 좌표 등록하는 방법





- ① 이력관리 시스템 →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 → 사육시설 주소 입력
- ② 주소 입력(초기화면: 기존에 입력된 주소가 보여짐 / 도로명 주소관리시스템 참조) → 수정
- ③ '②'등록 후, GPS 좌표 자동 입력
- ④ GIS 클릭

GIS에서 사육시설입구로 GPS 좌표 변경 방법





- ① (①(사육시설 입구) 위치에 미우스 왼쪽 클릭돼지 표시는 초기회면의 주소를 기반으로 하여 표시)
- ② 안내문 "클릭한 곳을 농장입구로 지정하시겠습니까?" → 확인
- ③ '②' 후에 '농장좌표수정' 클릭 → 농장입구로 GPS 좌표 변경됨

(현장확인 후) 결과 등록 시, 조사정보 입력화면 변경



- ① 조사 전 농장식별번호(자동입력)
- ② **조사 후 농장식별번호**(수동입력)
- ③ 문신기 번호 입력(수동입력) (여러 개일 경우, 1'로 구분하여 모두 입력)

농장정보(첨부파일)



① '농장식별번호 및 표시기 사진'으로 등록 개수 축소 ※ 기 조사된 농가는 '번호 및 표시기 사진'에 2개(표시기 및 종이에 찍은 사진) 등록되어 있음

① 농장식별번호 표시기 유형

배부된 농장식별번호 표시기 SET (손잡이 1개 + 여유침 1개 + 잉크 + 잉크통 + 문신기 청소도구)



자체구입한 표시기 SET (손잡이 1개 + 여유침 1개) → 침이 일체형이 아닌 각각의 번호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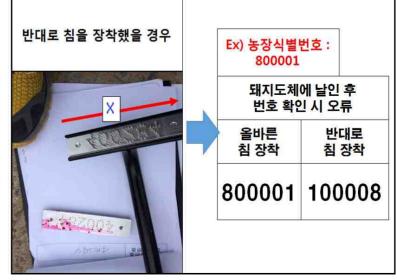
농가에서 편의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제작한 표시기 (나무에 여유 침을 연결)



- ② 농장식별번호 표시기 장착의 올바른 유형 ※ 표시기 침이 아래와 같이 장착될 수 있도록 필히 교육
 - 농장식별번호 표시기에 침을 넣을 때 올바른 방법

침이 반대로 있을 경우, 농가에게 오른쪽에 번호가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알림





③ 이력관리시스템에 "이력지원실"표기농가에 대한 확인

※13년도에 유선조사로 실시했던 농장 중에 미사육으로 조사된 농장을 대상으로 1차 조사

이력지원실 등록된 농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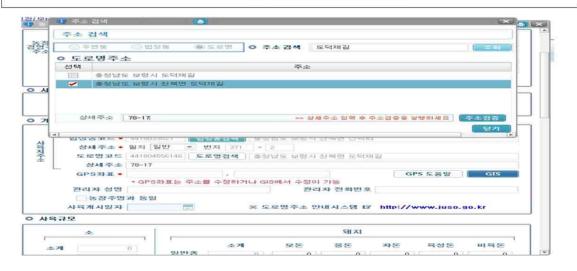
- 「돼지고기 이력관리시스템/방문예약/이력지원실」표기 농가 1차 유선조사 완료 조사완료(미사육 + 미수령) 농가는 방문예약 버튼에 "완료"로 변경 → 그 외 농가는 현장확인 필요 ※ 이력지원실로 표기된 농가지만, 재등록 시 등록자로 예약자 변경
- 방문예약에서 미사육 + 미수령 등록 시 자동으로 조사완료로 변경 ※ 발급신청서에서 조회안됨



④ 시스템에 주소 입력 시 주의사항

주소 입력 시 주의사항

○ 발급신청 주소 입력 시, "면" 소재지를 포함하여 주소 선택 Ex) '도덕재길' 검색 → [충남 보령시 도덕재길 / **충남 보령시 천북면 도덕재길**] 조회 되나, 면단위 주소 선택



② 현장조사 주의사항

- O GPS 좌표 획득방법 통일화
- ⇒ 모바일 GPS 좌표 서비스를 삭제하고, **시스템에서 좌표 획득** 단, 이력관리시스템의 **GIS를 통해 농장입구로 좌표를 수정**하여 최종등록 점취 참조
- O 현장확인 시, 사진촬영 최소화
- 표시기 관련 사진 2매(표시기 및 종이에 찍은 사진)를 1매로 축소
- ⇒ 표시기와 농장식별번호 번호를 수기로 적은 내역 1매를 촬영 후 시스템 등록^{(참무 참죄}
- O 시스템 등록 시, 도로명 주소가 조회 안 될 경우
- 도로명 주소시스템(www.juso.go.kr)에서 확인
- ⇒ 동일한 사육시설 내에 여러 개의 구주소가 있을 경우, 도로명이 있는 위치로 등록※ 농장입구 촬영 시, 가능하면 도로명 표시판이 보일 수 있도록 촬영
- O 조시농가에 기존(5자리)의 농장식별번호 표시기를 화수하지 않고 보관 할 경우
- 돼지사육시설 현장 확인조사는 6자리(숫자) 표시기 대상임
- → · 숫자 6자리('1210월 신규지급), 영문+숫자 혼용 5자리(기존에 지급되었으며 회수됨)
 · 5자리 표시기 보관여부를 문의하여, 보유 시 이력관리시스템 '기타'에 관련 내역 입력
 ※ 5자리 표시는 농가에 보관토록 하고, 차후에 회수 등 검토 예정
- O 현장확인 시, 대리신청인(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 가능 여부
- 가축사육시설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도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이 가능함
- ⇒ 관련: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1항 및 부칙 제4조※ 단, 대리 신청인(관리자)이 한돈협회 자료제공에 동의 시 이력지원실에서 유선확인 예정
- O 생산자 단체 등에서 자체조사 가능 여부
 - ⇒ 자체조사(발급 신청서 작성 및 사진 촬영) 결과를 축평원 지원으로 제출
 후, 해당지원의 사육시설 전담반이 현장 검증 필요
 ※ 시전조사 된 농장위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거부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유 등록

③ 현장조사 전화유대 요령

▶ 인사말을 하고 소속과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응대 안녕하세요? 축산물품질평가원 입니다. 잠시 통화가 가능하신지요? ▶ 전화목적 설명 → 올해 말부터 돼지고기이력제가 본 사업으로 시행되며, 사업에 대한 설명과 사육시설 위치 확인 등을 위하여 농장을 방문하였으면 합니다만. 언제쯤 가능하신지요? 사전 ▶ 방문을 거부 할 경우 조사 → 농가의 방역관리를 위해 **농장입구에서 조사가 이루어짐을 강조** (유선) ※ 해당 농가의 방문 거부 사유를 파악하여 시스템 등록 ▶ 농장식별번호 표시기 보관여부 확인 → (표시기 보관) 사육하지 않을 경우 표시기 회수일정 협의 → (표시기 미보관) ㆍ 사육하고 있을 경우. 지자체를 통하여 조사 전 해당 농가에 배부토록 요청 · 사육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 해당 표시기 보관여부 확인 ▶ 정중히 인사를 하고. 소속과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진행 → 안녕하세요? 농장식별번호 확인을 위해 연락드렸던 축산물품질평가원 ○○○입니다. ▶ 조사 전 가벼운 인사 : 날씨, 최근 근황(많이 바쁘시죠? 등) ▶ 돼지사육시설 출입을 금지할 경우 농장입구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방역물품은 항상 휴대 혂장 ▶ 돼지고기이력제도에 대한 생산농가의 인식이 저조할 경우 확인 → 조사 전 동 제도를 충분히 숙지 후 제도의 효과 등을 친절하게 설명 조사 후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의 **사육두수 등 정확한 기재 요청** (사육단계 이행사항인 사육현황 신고를 대체할 수 있음을 설명) ▶ 현장확인 후 홍보물품 전달 등

→ (정중하게) 바쁘신데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확인된 정보는 돼지고기의 이력제도에만 사용되고 보안은 절대적으로 유지됩니다.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④ 돼지사육시설 현장확인 Q&A

특이사항	조치사항	절차 등
· 농장식별번호 부여 신청서 작성	· 농장경영주	• 돼지의 실소유자 현황 기재 ①성명: 실소유주 성명, 법인명 등 ②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기재 ③주소, ④전화번호: 실소유자 정보 기재
(위탁사육의 경우)	· 가축사육시설	· 가축사육시설 현황 기재 - 조사시점 가축사육시설 현황 기재 ※ ® 관리자 성명, 전화번호 - 현재 사육관리자 정보 기재
· 가축질병(PED)으로 현장방문을 거부하는 경우	· 농가 자체 확인 후 조사 결과를 해당지원으로 제출 토록 교육(email, fax 등)	 유선조사 → 방문거부 → 자체조사 요청 → 조사방법 설명 및 양식 전달(fax, 우편 등) → 시스템(방문예약 → 자체조사로 등록) → 축평원(해당 지원)제출 (fax, 우편 및 모바일) → 시스템 등록 → 추후 현장확인
·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서 작성 거부	· 돼지고기이력제 법률 4조에 따라 이력관리대상 가축 의 사육시설에 대해 농장 식별번호 부여를 위한 신	 * 사진 등은 email 또는 모바일 등으로 접수 · (유선조사 시 자체조사 거부) 시스템 방문예약에 거부 등록
· 위탁사육으로 조사 거부	청서 등을 축평원 지원 사무소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림	 ※ 유의사항 ・ 자체조사한 농가에 대해 추후에 현장확인 필수 ・ 농장식별번호 신청서 원본 수령 후 보관 (현장확인 시 수령 가능)
• 표시기 보유한 신규농가 ※ 신규농가 : 시스템에 미등록된 농가	· 현장확인 후, 조사결과 (신청서 및 사진) 이력관리팀 제출 ※시스템은 검역본부에서 농장식별번 호를 발급한 내역 중 기초자료(주소 등)가 있는 농가만 등록되어 있음	· 조사 진행 → 결과제출(이력 관리팀) → 자료 확인 후 시스템 조사결과 등록(이력관리팀)
• 표시기 미보유 신규농가 ※ 신규농가 : 시스템에 미등록된 농가	 현장확인 후, 조사결과 (신청서 및 사진) 이력관리팀 제출 * 농장경영자에게 농장식별 번호 신청 및 표시기 제작을 위한 절차 설명(첨부 참조) 	· 조사 진행 → 결과제출(이력관리팀) · 농장식별번호 신청 및 표시기 제작 절차 설명(해당농가) → 발급번호 확인(지자체 또는 해당 농가) 및 표시기 사진 확보(해당 농가) → 확보 자료(농장식별 번호 및 사진) 이력관리팀 제출

특이사항	조치사항	절차 등
· 돼지 사육을 하고 있으나 표시기가 없음	[표시기 미수령] · 해당농가에 지자체에서 표시기를 배부했으나, 수령한 적이 없다는 경우	• 표시기 보관여부 파악 (표시기 배부 기관: 지자체 및 한돈협회 각 지부) (보관) 해당농가에게 배부요청 → 표시기 수령(농가) 후 사진 확보 → 시스템 등록 (미보관) 해당 표시기 수령자 확인 → 해당수령자에게 표시기 여부 파악 ※ 수령자 확인 표시기 배부 기관(지자체: 읍·면사무소 및 한돈협회)에서 수령인 확보 가능
	[표시기 분실] · 농가에서 분실하였을 경우	· 표시기 구입절차 설명(첨부참조) → 구입 후 농가로부터 표시기 사진확보 → 시스템 등록
· 농장식별번호 표시기 침(번호) 장착 요령 교육	 · 손잡이를 아랫방향으로 하여첫 번째 번호(시도 구분)가 오른쪽에서 시작 할 수 있도록 교육 	※ 붙임2 참조
· 동일사육시설에 축산업 등록증 2개일 경우 (농장식별번호 및 표시기 1개) ** 동일사육시설에 축산업 등록증이 2개일 경우 농장식별번호 2개 보유 가능	· 해당 사육시설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각각의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할 수 있음(의무사항은 아니며, 2개를 보유할 경우, 사육시설 내에 돼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출하 시 각각의 표시기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함) ※동일사육시설이더라도 각각의 축산 업등록증 사육지 주소는 다름	· [첨부]의 절차에 따라 농장식별번호 발급 절차 설명 → 농장식별번호 확인(자체 또는 해당 농가) 및 표시기 사진 확보(해당농가) → 확보자료 제출(이력관리팀) ※동일사육시설에 축신업등록증이 2개라도
· 현장확인 후, 농장 식별번호(시스템)와 표시기 번호가 불일치 하는 경우	· 최종 농장식별번호 발급은 표시기 번호를 기준으로 부여 할 예정	

특이사항	조치사항	절차 등
· A농가가 폐업 후, 신규 B농가가 동일한 사육시설에 사육을 하고 있을 경우	 해당 사육시설을 B 농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해당사육 시설의 축산업 등록증 사진 촬영 후 등록 해당 지자체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알림 	· 현장방문 → 변경된 농가정보 현황 확인 → 해당농가가 변경 신고서를 이력지원실로 제출 도록 교육 → 변경신고서 제출
· 사육시설은 휴업이고, 표시기 없을 경우 현장방문 여부	 현장방문 필요 없음 (표시기 있을 경우에만 조사 실시) 단, 사육 재개 시 농장식별 번호 발급신청서를 축평원으로 제출토록 필히 교육 	· 미방문 → 사육 재개 시 신청서 제출(이력지원실) → 현장확인 → 농장식별번호 부여
· (위탁사육)돼지 이동시 번호 표시기준 (실소유자 표시기 또는 위탁농가의 표시기)	· 위탁농장에서 돼지 출하 시, 해당 위탁처리 시설의 표시기를 사용토록 교육	
금년도 내에 다른 사육시설로 이전 할		
· 폐업 등으로 표시기 회수	· 보급받은 시·군·구로 반납 토록 교육	
· 지자체로부터 도로명 주소가 미배정 되었을 경우	· 도로명 주소 발급은 농장 경영자가 해당 시·군의 새주소팀에 직접 방문하 여 발급신청토록 알림	발급신청(시·군 새주소팀) →

농장경영자 추가 신청서

※ 이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일사 			일
				추가 신청인 정보		
농장식별 번호	최 초 농장경영 자	성 명 (위탁자)	생년월일 (시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 소 (거주지)	전화번호	농장경영 자와 관계

같이 동 농장식별번호에서 농장경영자를 추가로 신청합니다.

	월		일
신청인	(또는	인)
확인자(농장경영자)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장식별번호 발급 및 등록대장

				신청자 성명	농장 명칭		사육	두수	
발급 (등록) 연월일	발급 (등록) 번호	농장식별 번호	사육가축의 종류	(법인인 경우 시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사육시설 소재지 (GPS좌표)	사육개시 년월일	소	돼지	비고

가. 사육농가 신고업무 접수처별 업무분장

돼지 농장경영자	신고업무	전화신고 접수처	
	· 사육현황신고	이력지원실(1577-2633)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원 관할 지원	
일반 농장경영자	· 이동신고		
	· 변경신고*		
한돈팜스 회원	· 사육현황신고	(사)대한한돈협회 지부 ※ 이력관리시스템에 사육현황 입력 후 한돈팜스로 자료 전송	
(위임장 제출 농가)	· 이동신고	이력지원실(1577-2633) 또는	
	· 변경신고*	축산물품질평가원 관할 지원	

^{*} 변경신고는 지원에서 접수 받고 이력관리팀에서 확인 후 처리

나. 한돈팜스 사육현황 등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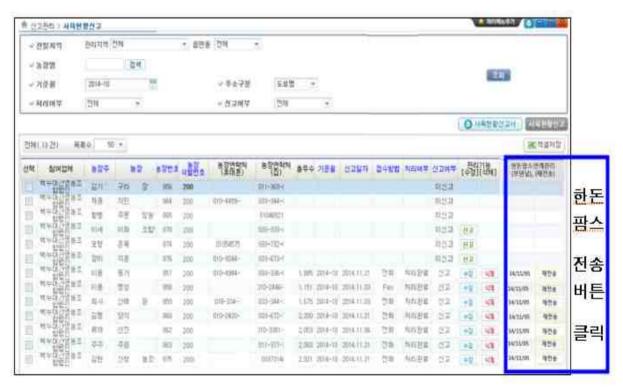
- 한돈팜스 회원농가가 사육현황을 이력제와 한돈팜스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농가의 사육현황 등의 정보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동 정보를 한돈팜스에 제공
- 업무처리 절차

이력관리시스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돈팜스 회원의 사 육 현 황 과 한돈팜스 필수 내용 입력	사육현황신고 내용 회원농가 에게 문자메세지 전송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을 한 돈 팜 스 로 전송버튼 클릭
한돈협회 지부	한돈협회 지부	이력관리시스템	한돈협회 지부

○ 사육현황 신고 화면



○ 한돈팜스 전송 화면



<첨부>

축산물품질평가원 양돈농가 관할지역

호턴이 키이	(시·도 및	시·군·구)		
축평원 지원	관할 지역	한돈협회 지부		
서울지원 (032-674-0323)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부천시, 김포시, 동두천시, 구리시, 가평군, 남양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인천지부, 가평지부, 강화지부, 김포지부, 고양지부, 양평지부, 양주지부, 연천지부, 파주지부, 포천지부, 철원지부		
경기지원 (031-466-2633)	경기도 안양시, 수원시, 과천시, 광명시, 안산시, 오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용인시, 평택시, 이천시, 성남시, 안성시, 하남시, 광주시, 화성시, 여주시, 양평군	안양시흥지회, 이천지부, 안성지부, 여주지부, 용인지부, 평택지부, 하남광주지부, 화성지부		
강원지원 (033-813-2633)	강원도(철원군 제외),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	강원영동지부, 원주지부, 춘천화천지부, 태영평정지회, 횡성지부, 홍천지부, 제천지부		
대전충남지원 (041-585-1865)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공주지부, 금산지부, 논산지부, 당진지부, 보령지부, 부여지부, 서산태안지부, 세종지부, 서천지회, 아산지부, 예산지부, 천안지부, 청양지부, 홍성지부,		
충북지원 (043-882-7358)	충청북도(제천시, 단양군 제외)	괴산지부, 보은지부, 영동지회, 음성지부, 진천지부, 청원지부, 증평지부, 충주지부		
광주전남지원 (062-573-3645)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강진지부, 광주장성지부, 광양지회, 고흥지부, 곡성지회, 구례지부, 나주지부, 담양지회, 목포신안지부, 무안지부, 보성지부, 신안지부, 순천지부, 여수지부, 영암지부, 영광지부, 장흥지회, 화순지부, 함평지부, 해남지부		

축평원 지원	(시·도 및	시·군·구)
13676	관할 지역	한돈협회 지부
전북지원 (063-275-2366)	전라북도	고창지부, 군산지부, 김제지부, 남원지부, 부안지부, 순창지부, 익산지부, 임실지부, 장수지부, 전주완주지부, 정읍지부, 진안지부
대구경북지원 (053-384-2633)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지부, 김천지부, 구미지부, 군위지부, 고령지부, 경주지부, 대구지부, 문경지부, 봉화지부, 상주지부, 성주지부, 안동지부, 영덕지회, 영일포항지부, 영주지부, 영천지부, 예천지부, 의성지부, 울진지회, 청도지부, 칠곡지부
부산경남지원 (055-723-2699)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고성지부, 진주지부, 거창지부, 김해지부, 밀양지부, 부산지회, 사천지부, 산청지부, 울산지부, 양산지부, 의령지부, 창녕지부, 창원지부, 하동지부, 함양지부, 함안지부, 합천지부,
제주지원 (064-799-7690)	제주도	남제주지부, 서귀포지부, 제주지부, 제주서부지부

(사)대한한돈협회 지부별 연락처

구분	도	지부	전화번호	팩스	주소
1		강화지부	032-932-0145	032-933-8941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44-3번지
2	경기	안양시흥지회	031-461-3388	031-461-3388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607-10
3	경기	양평지부	031-771-3905	031-772-3391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01-7
4	경기	연천지부	031-833-1147	031-833-7805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4리 6반 296-6번지
5	경기	이천지부	031-632-6445	031-632-6446	경기도 이천시 단월로 17-13
6	경기	파주지부	031-941-2217	031-946-2042	경기도 파주시금촌동 437-4 축협물류센터2층
7	경기	포천지부	031-535-2387	031-535-0455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769번지
8	경기	화성지부	031-354-9111	031-352-4114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146-1(모이지오종합상가A동206호)
9	경기	고양지부	031-977-4484	031-977-448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242-22층
10	경기	김포지부	031-981-1092	031-981-1094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109-17
11	경기	안성지부	031-675-3264	031-676-5934	경기도 안성시 가현동 188-5
12	경기	양주지부	031-836-2533	031-837-2533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657-20 광적공구상가 2동 207호
13	경기	여주지부	031-883-5317	031-884-5526	경기도 여주시 주내로 699-164(삼교동206번지)
14	경기	용인지부	031-338-4412	031-338-441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520 황소식당2층
15	경기	인천지부	032-466-3313	032-469-306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5동 906-20
16	경기	평택지부	031-663-1082	031-663-3082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2 65-1(1층)
17	경기	하남광주지부	031-774-4596	031-774-4595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샛담길266-16
18	경기	가평지부	031-582-9905	031-582-9937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산227
19	강원	횡성지부	033-343-3003	033-343-3013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142-1
20	강원	철원지부	033-452-3385	033-452-6475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17227철원축협3층
21	강원	홍천지부	033-434-5160	033-434-5170	강원도 홍천군 동면 덕치리479-3
22	강원	춘천화천지부	033-261-8985	033-261-8985	강원도 춘천시 효자3길 6번지 효자동 542-12층
23	강원	태영평정지회	033-333-4007	033-333-4007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경강로 2398-23
24	강원	원주지부	033-762-3680	033-762-3681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948-10번지
25	강원	강원영동지부	070-4206-0109	033-644-0109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198-1
26	충북	괴산지부	043-834-3440	043-834-3442	충북 괴산군 사리면 중부로 3312번지
27	충북	보은지부	043-543-9830	043-543-9831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삼산5리 41823
28	충북	영동지회	043-744-9923	043-744-9924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58-12
29	충북	음성지부	043-883-5633	043-883-8633	충북 음성군 감곡면 장감로 217번지
30	충북	제천지부	043-642-9731	043-642-9732	충북 제천시 의병대로 1190
31	충북	진천지부	043-533-2616	043-532-2616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진로 1433
32	충북	청원지부	043-258-1450	043-258-1451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791-5 태웅프라자 601호
33	충북	충주지부	043-847-0667	043-842-1854	충북 충주시 용관동 21582
34	충북	증평지부	043-836-2237	043-836-2622	충북 증평군 증평읍 삼보로 3길 19
35	충남	논산지부	041-736-3633	041-734-2802	충남 논산시 내동 806번지
36	충남	당진지부	041-355-3998	041-353-4752	충남 당진시 동부로 220 해나루빌딩4층
37	충남	보령지부	041-641-8503	041-641-8501	충남 보령시 천북면 천광로 89
38	충남	부여지부	041-832-6807		충남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116
39	충남		041-664-0909		충남 서산시 동문동 884-2번지 오성약국 2층
40	충남	서천지회	011-9826-1848	041-952-1999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275번지3층

구분	도	지부	전화번호	팩스	주소
41		아산지부	041-542-9170	041-547-9170	충남 아산시 번영로 93번길 73층
42	충남	예산지부	041-331-2746	041-334-4879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791축산회관 2층
43	충남	천안지부	041-576-6946		충남 천안시 동남구 차돌로50(다가동)양돈농협빌딩6층
44	충남	청양지부	041-942-3129	041-943-8129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375-3
45	충남	홍성지부	041-633-4303	041-633-6466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26330 축산회관1층
46	충남	공주지부	041-855-1192	041-855-1193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1-8번지 공주축협4층
47	충남	세종지부	044-866-5111	044-864-5508	세종시 연서면 부국길 179
48	충남	금산지부	041-752-5016	041-752-1083	충남 금산군 금산읍 오리정로 68번지
49	전북	고창지부	063-564-6063	063-564-6083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138
50	전북	군산지부	063-466-1375	063-466-2067	전북 군산시 삼학동 315-5 익산군산축협2층
51	전북	김제지부	063-542-6644	063-544-2331	전북 김제시 요촌동 541-1(2층)
52	전북	남원지부	063-631-4717	063-633-0601	전북 남원시 하정동 202-4 축협 1층
53	전북	부안지부	063-581-1222	063-581-1294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574-43 축협 2층
54	전북	익산지부	063-854-0693	063-843-0693	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 536-6
55	전북	,완주지부	063-241-9476	063-242-2546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766-3
56	전북	정읍지부	063-531-9776	063-531-9775	전북 정읍시 수성동 525-15 축산유통센터 2층
57	전북	장수지부	063-353-3388	063-353-3883	전북 장수군 번암면 논곡리 356-23 56-2
58	전북	임실지부	063-643-0070	063-643-0207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182-4
59	전북	순창지부	063-653-9996	063-653-9923	전북 순창군 유등면 향가로45 2층(구주소:유등면창신리)
60	전북	진안지부	063-433-0381	063-433-2338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 453
61	전남	강진지부	061-432-9866	061-432-9867	전남 강진군 신전면 영관리 183-6
62	전남	광주장성지부	062-973-3465	062-973-3463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284-43
63	전남	구례지부	061-782-6011	061-782-6011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남리 155-52층
64	전남	나주지부	061-332-8080	061-332-8089	전남 나주시 남외동 22
65	전남	담양지회	061-383-0213	061-383-0213	전남 담양군 수북면 대방리 580(지부장자택)
66	전남	목포신안지부	061-284-9578	061-284-9579	전남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226-1
67	전남	무안지부	061-452-0393	061-452-9570	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 1046
68	전남	보성지부	061-852-2935	061-852-5718	전남 보성군 보성읍 용문리 342-11
69	전남	순천지부	061-752-0414	061-752-0413	전남 순천시 가곡동 994-14
70	전남	영암지부	061-473-2626	061-471-1913	전남 영암군 영암읍 역리 159-92층
71	전남	장흥지회	061-864-8864	061-864-8863	전남 장흥군 용산면 어산운주길 208번지
72	전남	해남지부	061-536-4989	061-536-4678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450-1
73	전남	화순지부	061-372-0808	061-374-4843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738-4
74	전남	고흥지부	061-835-4769	061-835-5769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664-4
75	전남	함평지부	061-324-0411	061-324-0412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198
76	전남	광양지회	061-722-2717	061-772-5410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1024-1
77	전남	곡성지회	061-363-8104	061-363-9104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96
78	전남	영광지부	061-352-4644	061-351-4898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830-4
79	전남	신안지부	061-261-4353	061-262-4416	전남 신안군 지도 읍자동리 417
80	전남	여수지부	061-682-9740	061-682-7546	전남 여수시 학동 191-1 여수축협내 작목반

구분	도	지부	전화번호	팩스	주소
81		안동지부	054-859-0420	054-859-3878	경북 안동시 수상동 820-118농업인회관1층
82	경북	김천지부	054-433-8145	054-433-8144	경북 김천시 성내동 8-1번지 축협내
83	경북	문경지부	054-552-0426	054-552-0663	경북 문경시 흥덕동 223-33층
84	경북	상주지부	054-532-3080	054-532-3080	경북 상주시 죽전길 148-29
85	경북	영덕지회	054-734-4262	054-734-5117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산166
86	경북	영일포항지부	054-277-1162	054-272-6333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635-63층
87	경북	영주지부	054-636-6149	054-636-4399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성내1리 19-18번지
88	경북	영천지부	054-331-0888	054-334-4472	경북 영천시 천문로 622-13(영천농업인회관내)
89	경북	예천지부	054-654-5577	054-654-5537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251-1예천축협하나로2층
90	경북	의성지부	054-832-7668	054-832-7669	경북 의성군 의성읍 문소1길 133번지2층
91	경북	청도지부	054-371-1332	054-372-6402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서4길 1청도 축협지하1층
92	경북	칠곡지부		054-975-3236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오2리 1303-1
93	경북	대구지부	053-382-2248	053-381-9906	대구시 북구 검단동 1393-167
94	경북	봉화지부	054-674-1555	054-674-1556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231-482층
95	경북	구미지부	054-457-5807	054-457-5808	경북 구미시 고아읍 봉한리34
96	경북	경산지부	053-802-5343	053-811-5343	경북 경산시 계양동 672-3
97	경북	성주지부	054-933-9910	054-933-9920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79-1번지202호
98	경북	고령지부	054-956-4477	054-956-4478	경북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330-6
99	경북	경주지부	054-776-0309	054-741-6091	경북 경주시 동천동 821
100	경북	군위지부	054-383-5858	054-383-5857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670-8
101	경남	합천지부	055-933-7799	055-932-9246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129-5 문화예술회관210호
102	경남	고성지부	055-674-8074	055-674-8076	경남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30590 신공설운동장2층
103	경남	부산지회	051-728-4789	051-728-5465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매학리 산41775
104	경남	산청지부	055-973-0501	055-973-7976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179-1
105	경남	울산지부	052-262-2922	052-262-2921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171-8 축산회관2층
106	경남	진주지부	055-762-8941	055-762-8942	경남 진주시 남강로 1689 진주시농업인회관2층
107	경남	창원지부	055-296-2297	055-293-4992	경남 창원시 중동 628-1
108	경남	함안지부	055-583-1377	055-583-1307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132-2향군회관2층
109	경남	거창지부	055-944-8948	055-943-9948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215거창군농업인회관1층
110	경남	김해지부	055-333-6712	055-334-6712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55번길 364층
111	경남	밀양지부	055-352-7770	055-352-3426	경남 밀양시 삼문동 4-10번지(밀양축협3층)
112	경남	사천지부	055-854-3900	055-854-4900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154-2(농업인회관2층)
113	경남	양산지부	055-372-7011	055-372-7013	경남 양산시 북부동 691-23층
114	경남	의령지부	055-572-5589	055-572-1483	경남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463-10번지
115	경남	창녕지부	055-532-9451	055-532-8712	경남 창녕군 장마면 유리53267 창녕군지부공동자자원화센터
116	경남	하동지부	055-884-0610	055-884-0612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69-1번지농업인회관2층
117	경남	함양지부	055-963-6565	055-962-9386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192층
118	제주	남제주지부	064-794-8292	064-794-4434	제주특별자치도 남제주군 대정읍 동일리2963
119	제주	서귀포지부	064-763-0469	064-763-04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499-22축협4층
120	제주	제주지부	064-747-6076	064-748-254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26(노형동)제주양돈농협2층

구분	도	지부	전화번호	팩스	주소
121		제주서부지부	064-796-8644	064-796-8645	제주특별자치도 북제주군 한림읍 동명리1951-4번지2층

3 이력번호 자동표시기 관리요령

1. 이력번호 자동표시기 개요

■도축과정에서 이력번호를 도체의 표면에 자동으로 표시하는 장치

2. 기관·업체별 관리사항

□ 축산물품질평가원

- O 이력번호자동표시기의 시설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 O 작업 시작과 종료시설의 전원상태, 공압 및 잉크 상태 확인
- O 세척 및 시설 점검 미비사항을 체크(도축장 경영자와 업무협조)
- O 이력번호자동표시기 컴퓨터의 등급판정(Pig-Grade) 데이터 관리 및 점검

□ 도축장

<공무팀>

- O 이력번호자동표시기의 시설 점검 및 보완 담당자를 지정
- O 주간·월간 점검표를 작성하여 이력번호 자동표시기를 관리
- O 장비·설비 장애발생시 응급(보완) 조치
- O 응급조치 이외 상황발생시 장비 설치업체로 A/S 신청

<생산팀>

- O 이력번호를 생성하여 이력번호자동표시기 컴퓨터에 입력
- O 도축번호가 뒤바뀔 경우 등급판정 전에 축산물품질평가사에 공지
- O 도축장 상온에서 설비가 구동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
- O 이력번호자동표시기에서 인쇄된 이력번호의 일치 여부 확인
- O 시설·장비 세척 담당자 지정하여 일일, 주간세척을 진행
- O 공정상 특수도체(미 이분체, 통돼지, 절개돼지, 한쪽 걸림 돼지, 박피, 모돈 등) 응급조치

- 특수도체는 이력번호 자동표시기의 도체진입 인식이 안 되거나 인쇄품질 저하 및 심각한 경우 자동표시기 파손의 위험을 초래 함
- 특수도체의 예시 및 처리방법
- ① 미 이분체 : 비상정지 후 이분절단 또는 한쪽진입 유도로 인쇄 안함
- ② 통돼지 : 한쪽진입 유도 및 이력번호 인쇄 안함
- ③ 절개돼지 : 마킹센서 인식률 저하로 인쇄 안함
- ④ 한쪽 걸림 돼지 : 한쪽진입 유도 및 이력번호 인쇄 안함
- ⑤ 박피 및 모돈 : 인쇄품질이 떨어지고, 슬림현상으로 도체 카운터 문제가 발생하여 주의가 요구됨



<전산팀>

- O ERP전산 : 돼지고기이력제 이력번호를 생성·입력, 등급결과를 입력하는 프로그램 관리 및 업그레이드
 - ※ ERP 미사용 도축장은 이력번호를 Pig-Grade(축산물품질평가원 제공)에 연계 할 수 있도록 조치

■ 장비·설비 설치업체

- O 권역별(수도권, 전라권, 경상권) 서비스망을 통한 신속한 AS 대응
- 현장 응급조치가 불가능 할 경우 해당 문제점 원인 파악 후 조치
- O 접수된 장애발생황의 원인파악 후 권역별 서비스망에 전달
 - 설치업체는 접수된 장애발생상황 및 처리결과를 이력관리팀에 보고
 -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전체 장비·시설 보완

3. 장비·설비 관리요령

□ 세척관리를 위한 주요 확인사항

- O 일일세척
- 프레임(중앙,윙,베이스,회전가이드,유도가이드) 세척
- 프린터 헤드부 브러쉬 세척 및 이물질 제거 등
- O 주간세척
- 헤드 노즐을 온수 및 전용세척제를 이용하여 세척
- 헤드 관절부위, 엔코더 등을 브러쉬 정밀세척
- 물기 제거기, 회전가이드, 유도가이드, 프레임 등을 수세미 세척
- 각종 센서 및 프린터 헤드 이송 샤프트의 이물질 제거 등
- O 월간세척
- 각종 배관 점검, 장비·설비 전체 정밀세척 및 이물질 제거 등
- ※ 철저한 세척 및 이물질 제거로 장비 오작동을 최소화

□ 일일 시설점검 사항

- O 점검자 : 축산물품질평가사
- O 이력번호 자동표시기 운행전 워밍업시 매일 점검하고, 작업종료 후 전원관리를 함
- O 세척상태를 점검 후 도축장의 이력번호 자동표시기 청소담당자 에게 협조 요청
- 주요 점검사항 : 헤드부(엔코더, 오링이탈, 헤드 노즐 막힘 등) 육안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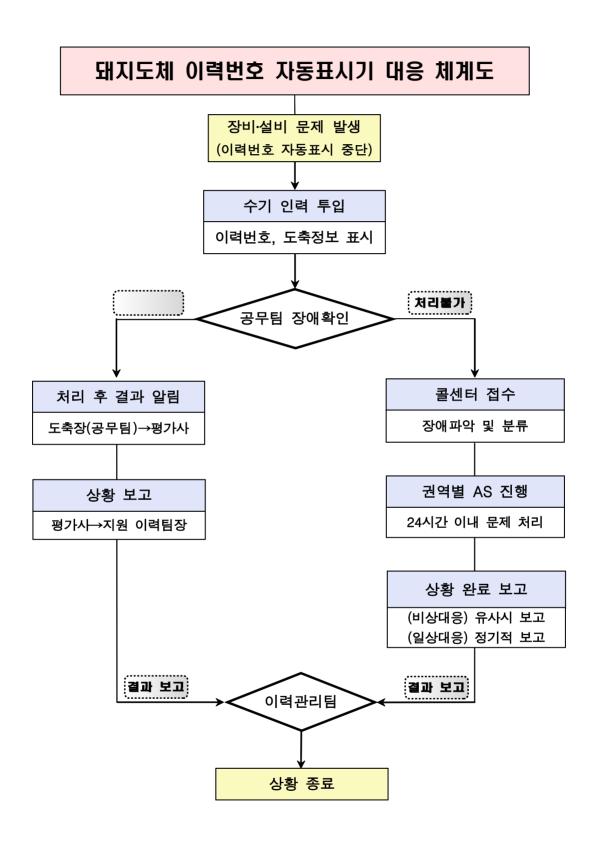
□ 주간 시설점검 사항

- O 점검자 : 공무담당자
- O 주 2회 이상 도축장 공무담당자는 장비·설비 점검
- O 이력번호 자동표시기 세척부위(주요부위)를 주간 점검
- O 주간일지 작성
 - 공압 체크 : 메인공압(Dran Port 수분제거), 스윙실린더, 잉크 공압 잉크 잔량을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함

- 프린터 헤드 전/후/좌/우 관절 작동, 헤드관절 및 스프링 체결상태를 확인하고 헤드이송 샤프트에 주기적으로 유활유를 도포함

□ 월간 시설점검 사항

- O 점검자 : 공무담당자
- O 월 1회 이상 도축장 공무담당자는 장비·설비 점검
- O 이력번호 자동표시기 세척부위(주요부위)를 월간 점검
- O 월간일지 작성
- 매월 1회 시설 정밀점검 및 보완작업
- 전기/제어부 : 전원상태, 각종센서 노후 상태 점검 및 보완
- 헤드부 : 이송벨트 및 샤프트 노후 상태, 헤드 관절부 체결상태, 각종 연결 부위 윤활유 작업, 엔코더/오링/휠 작동 등
- 마킹헤드 : 노즐막힘 여부, 인쇄상태 점검
- 프레임 : 스윙작동여부, 베어링, 프레임 윤활유, 세척수 공급 등
- O 인쇄상태 확인
- 헤드노즐 온수 및 전용세척제 세척
- 잉크분사 상태, 노즐 막힘 점검



이력번호 자동표시기 주간 점검표

분류	점검사항	점검 값	비고
	전원 On/Off	(정상) / (비정상)	
	공압 체크(메인, 실린더, 잉크)	(정상) / (비정상)	
	윙프레임 작동 상태(수동Test)	(정상) / (비정상)	
자이 권	도체감지센서 작동(수동Test)	(정상) / (비정상)	
작업 전	헤드노즐 이물질 막힘상태(육안)	(유) / (무)	
	오링 이탈 확인(육안)	(여) / (부)	
	엔코더/오링/휠 작동(수동Test)	(여) / (부)	
	유도 가이드 세척상태(육안)	(상) / (중) / (하)	
	회전 가이드 세척상태(육안)	(상) / (중) / (하)	
	물기제거기 세척상태	(상) / (중) / (하)	
	헤드이송 샤프트 이물질 제거	(여) / (부)	
	각종 센서 이물질 제거	(여) / (부)	
세척상태	헤드노즐 막힘상태	(유) / (무)	
	헤드관절 부위 세척상태	(상) / (중) / (하)	
	엔코더 세척상태	(상) / (중) / (하)	
	회전롤러 /유도가이드 세척상태	(상) / (중) / (하)	
	Main공압(0.4Mpa±0.05Mpa)	()Mpa	
77.01	스윙실린더 (0.2Mpa ± 0.05Mpa)	()Mpa	
공압	잉크 공압 (0.5Mpa ± 0.05Mpa)	()Mpa	
	잉크 잔량 체크 (5%미만 시 보충)	() %	
	헤드이송 샤프트 윤활유 상태	(상) / (중) / (하)	
헤드	헤드관절 및 스프링 체결 상태	(정상) / (비정상)	
	헤드 전/후/좌/우 관절 작동 (수동체크)	(정상) / (비정상)	
		※점검일	:
점검의견			
		※ 점검자	:



단계별 질의응답

- 1. 사육단계(종돈·비육돈)
- 2. 도축단계
- 3. 포장처리 단계
- 4. 판매단계
- 5. DNA동일성 검사
- 6. 위반자 처분
- 7. 기타질문 등

1-1. 사육단계(종돈) 질의응답

→ 질의 1 → 이력법에서 정한 종돈의 개념은?

□ 「축산법」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 및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종축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고 있는 돼지로서 「축산법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종축등록기관에서 공고한 기준에 따라 혈통 또는 고등등록된 돼지와 혈통이 확인된 번식용 씨돼지

■ 질의 2 ▼ 종돈이력제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는?

☞ 종돈을 사육하고 있는 종돈장, AI센터, 검정소 등이 해당됨

→ 질의 3 → 종돈장도 월별 사육현황신고를 해야 하나?

□ 종돈의 사육현황신고는 해당 월의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이내에 (사)한국종축개량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방법은 (사)한국종축개량협회(전화 02-588-9301, 팩스 02-3473-8166) 등을 이용하여신고할 수 있고 종축개량협회의 종돈업혈통관리프로그램을 통해 할 수있음.

■ 질의 4 **▼ 종돈의 출생·폐사신고 방법은**?

☞ 종돈의 출생은 종축등록기관에서 공고한 종축등록 규정에 따라 혈통 또는 고등등록된 돼지, '번식용씨돼지 혈통증명규정'에 따라 번식용 씨돼지로 혈통이 확인된 돼지이며 출생신고는 종돈 등록일로부터 5일 이내, 폐사신고는 폐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종축개량협회장에게 신고(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질의 5 **■ 종돈의 폐사 신고시 폐사원인 등의 신고방법은?**

☞ 종돈이 폐사한 경우 종돈업혈통관리프로그램(http://eswine.aiak.or.kr/) 접속 후 개체관리 → 폐사관리 → 조회(품종 선택 및 생년월일 등 조건 입력) → 폐사신고 대상돈 선택(√) → 폐사원인 선택 → 폐사처 리방법 선택 → 매몰장소 및 폐기처리업체(연락처 포함) 입력 → 저장

→ 질의 6 **> 종돈의 양도·양수신고 방법은?**

『 종돈의 양도·양수신고는 종축개량협회의 종돈업혈통관리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하며 이동관리 → 이동등록 → 조회(품종, 등록구분, 생년월일 등 입력) → 이동농장(양수농장) 조회 및 선택 → 이동대상돈 선택(√) → 저장

→ 질의 **7** ▼ 종돈의 경우 수입·수출신고 방법은?

☞ 종돈의 수입시 (사)한국종축개량협회(http://www.aiak.or.kr/) 접속 후
→ 종돈개량부 → 서식 및 양식 → 종축수입신고서 작성(종돈장별) 및
관련 구비서류 접수(개체별 혈통증명서 등)하며 되고, 수출시 혈통・
고등등록 및 번식용씨돼지 혈통증명로 신고

→ 질의 8 → 종돈의 신고내역중 변경사항이 있을 시 신고방법은?

□ 농장명, 경영자의 소유자 등 신고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서의 양식으로 종축개량협회에 신고하며, 종축개량협회장은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가축 및 축산물 식별대장에 기록하고 관리

질의 9 종돈의 경우 개체관리를 위한 개체식별번호 부여방법은?

□ 출생 신고 또는 수입 신고된 종돈에는 국가코드(KOR), 농장식별번호(6 자리), 개체관리번호(6자리), 바코드 및 농업이미지 엠블렘 등이 표시된 15자리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질의 10 개체식별번호가 무엇인가?

- □ 이력관리대상가축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
 - ※ 개체식별번호 구성 : 국가코드(KOR) + 농장식별번호(6자리) + 개체 관리번호(6자리)로 구성된 15자리

질의 11 중돈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은?

□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는 귀표등을 이용하여 종돈의 귀에 부착 또는 표시를 할 수 있으며 표시방법은 귀표, 이각, 입묵의 방식으로 할 수 있음.

→ 질의 12 → 종돈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 종돈으로 등록된 돼지 중 기형 등으로 개체식별표시를 할 수 없거나 또는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 등으로 귀표 부착이 곤란한 경우 개체식별 번호가 표시된 목줄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음

질의 13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중 이각의 방법은?

□ 이각(돼지의 귀를 절개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 이각방법은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이각번호에 해당하는 개체 식별번호를 종축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종돈혈통증명서, 번식용 씨돼지혈통확인서 등)에 표시해야 한다.

→ 질의 14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중 입묵의 방법은?

□ 입묵('살 속 에 먹물 로 글씨 나 그림 을 새겨 넣는다 '의 의미)은 귀에 문신을 찍어 표시하는 것으로 통상 생후 3일령 개체식별번호 중 고정된 번호인 농장식별번호를 압인하여 숫자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입묵하기 전에 귀의 안쪽을 잘 닦아주고 가능한 귀의 부드러운 부분에 입묵한 후 입묵기의 바늘, 돼지의 귓등, 손에 잉크를 발라 압인한 후에 잉크가 잘 스며들도록 골고루 잘 문질러 준 후 입묵

질의 15 ▼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중 귀표부착시 적용방법은?

- □ 귀표는 돼지의 귀에 개체식별번호 등이 표시된 귀표를 귀에 장착하는 방법으로 종돈으로 등록되는 시점에 부착하게 됨.
 - 귀표의 표시사항 : KOR, 농업로고, 바코드, 농장식별번호, 개체관리번호, 종돈장명

→ 질의 16 ▶ 종돈에 부착하는 귀표의 경우 색깔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 종돈의 귀표는 밝은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색상을 원칙으로 함. 다만, 종돈의 경우 품종에 따라 귀표의 색깔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질의 17 종돈의 경우 이각을 대부분 실시하고 있어 귀표부착시 이각 번호를 매직 등 수기로 귀표에 표시해도 무방한가?

종돈의 귀표에 포함되는 개체관리번호는 사전에 일련번호를 인쇄한 귀표를 부착해도 되고, 일련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이각번호를 매직 등을 이용하여 수기로 작성해도 무방함

→ 질의 18 → 종돈의 경우 귀표 공급방법 및 신청절차는?

□ 종돈의 개체관리를 위한 귀표는 공급할 예정이며 귀표는 종축개량협회를 통해 신청

1-2. 사육단계(비육돈) 질의응답

골의 1 ► 농장식별번호란?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소·돼지) 축종을 사육하는 시설을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가축사육시설마다 부여하는 번호이며 농장식별번호는 권역코드(1자리), 일련번호(5자리), 총 6자리로 구성됨
 - ※ 권역코드: 서울・인천・경기(1), 강원(2), 충북(3), 세종・대전・충남(4), 전북(5), 광주・전남(6), 대구・경북(7), 부산・울산・경남(8), 제주(9)

질의 2 **농장식별표시기란?**

□ 농장식별번호를 돼지에 표시할 수 있는 기구(문신기)이며, 농장경영자는 돼지를 이동(도축출하 포함)할 때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돼지에 표시하는 기기임. 농장경영자는 돼지를 이동하기 전에 오른쪽 엉덩이에 표시하여 이동해야 함

→ 질의 **3** → 농장식별번호 발급절차는?

□ 농장경영자가 양돈장을 개설하는 경우 사육시작일 5일 전까지 농장식별 번호 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 (1577-2633)에 제출하면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음. 참고로 농장 식별번호가 있어야만 전산등록이 되어 도축장에서 이력번호 발급이 가능함

<신규사육농장 농장식별번호 발급절차>

- ① 사육개시 5일전 축산물품질평가원(1577-2633)에게 농장식별번호 신청
- ② 부여된 농장식별번호로 농장식별번호 표시기 구입(농장경영자)
- ③ 신규사육농장 사육 현황조사(축산물품질평가원)
- ④ 농장경영자에게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통보(5일 이내)

질의 4 ► 농장식별번호를 부여 받았으나 농장식별표시기가 없을 경우는?

☞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1577-2633)에 농장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기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와 같은 번호를 농장식별표시기 제조업체에 의뢰

하여 제작해야 함 <농장식별표시기 제조업체>

제조업체	연락처	비고
송강지엘씨	031-776-0780	자사판매표시기 AS
한국이어텍	031-225-3645	자자한테효시기 A5

→ 질의 5 기존에 운영하던 농장을 폐업하고 새로운 곳에서 농장을 개설할 경우 기존 농장식별번호표시기를 사용해도 되는지?

□ 농장식별번호 부여방법은 축종에 상관없이 가축사육시설이 위치한 "땅"(지번)을 중심으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운영하던 농장이 폐업되었다면 해당 농장식별번호 표시기는 해당 시군에 반납하여야 하고, 새로운 농장에 맞는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질의 6 ► 농장식별표시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 농장경영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1577-2633)로 전화하시면 보유하고 계신 농장식별번호 표시기의 번호와 실제 전산상에 등록된 번호와 확인을 하게 되며 축산물품질평가원 직원의 현지조사 등을 거쳐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됨

→ 질의 **7** → 돼지를 판매 또는 위탁하기 위하여 다른 사육지로 이동할 때 신고 방법은?

□ 농장경영자가 돼지를 판매 또는 위탁사육을 하기 위해 돼지를 이동 시키는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1577-2633)로 해당농장의 농장식별번호와 도착농장의 농장식별번호 및 종류별 이동두수 등을 신고해야 함. 단, 도축을 위하여 도축장으로 출하 할 경우 돼지열병・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로 갈음이 되므로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음

→ 질의 8 → 돼지를 다른 사육지에서 구매하였을 경우 신고방법은?

□ 돼지를 구매한 농장경영자는 구매한 농장의 농장식별번호와 돼지종류별 두수 등을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1577-2633)로 신고

→ 질의 9 → 돼지를 이동할 경우 농장식별번호 표시방법은?

- □ 농장식별번호표시기 사용하여 돼지의 오른쪽 엉덩이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여 이동하여야 함. 단 어린돼지(3개월 이하)의 경우에는 돼지의 몸에 페인팅 등을 표시하여 이동
- ※ 돼지 이동시 농장식별번호 표시

출 하 구 분	농장식별번호 표시	비고
60두 이하	10두 이상	
61두 이상	20% 이상	하나의 차량으로 다수농장의 돼지가 이동할 경우, 농장별
어린돼지(3개월 이하)	몸통에 페인팅 표시	로 모든 돼지에 표시
씨돼지(모돈, 웅돈)	모든 돼지에 표시(100%)	

의 10 위탁사육장의 경우, 돼지의 도축을 위하여 출하할 때 돼지 열병·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에 돼지 소유주의 농장식별번호를 기입해야 하는지?

□ 위탁사육장에서 돼지를 출하하는 경우 농장식별번호는 소유주의 농장 식별번호가 아닌 위탁사육지의 농장식별번호를 기재와 농장현황(주소, 대표자, 사육두수, 전화번호 등)을 기입해야 함. 단, 대표자란에 실소유 주의 이름을 기재함

제 호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농장	농장 식별병	실제 사육지			주	주 소			전화번호				
현황	대 표 지	실제 소유자 사육두수			두수	두(모돈 , 웅돈 , 자돈 , 육성돈 , 비육돈))				
(۱۱)	□ 식욕결핍	□ 거품	섞인 최	인 침흘림 🗌 고열 🔲 입술·혀·유두·특			입술·혀·유두·발굽	굽 등 수포, 가피, 궤양					
임상 검사	□ 최근 15일내 폐사두수 () □ 변비 □ 여러마리가 한곳에 포개어져 있음 □ 설사 □ 피부청색증(귀, 복부, 사타구니) □ 비틀거림 □ 뒷다리마비												
매매·출하	농장 매매·	출하두수		ጘ	- (자된	Ē:	, 육성	성돈	: , 비육돈 :	, 종	모돈 등)	
구제역	개체별 예방 (예방접종 시	구 분 일령(율		(월령)	일렁) 매매·출하두수		이전 예방접종일 다음 접		다음 접종 예	정일			
예방접종	하지 않은 자 예방접종일'\ 것을 기												
돼지열병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1 -7 -1 -2	구 분 일령(월		(월령)	[령) 매매·출하두수		1차 예방접종일		2차 접종 예기	정일		
예방접종	개체별 예방	섭송 현황											
수집상.	가축수집상				주 소				전화번호				
운반업자,	운송업자					전화번호			운반차량				
구매자 등	구매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1 " 1 0	출하 도축장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상기 기	상기 가축은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기재요령 :	기재요령 : 임상검사 항목은 해당사항에만 ∨표시, 자돈의 경우 "일령"을 기재하고, <u>위탁사육장의 경우 대표자란에 실소유주 기재</u>												

- → 질의 11 농장식별번호의 농장경영자(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인이 이전 농장경영자의 정보를 모르는 경우, 변경신고서의 변경 전 항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 □ 변경신고서의 내역 중에서 변경 전 농장경영자의 정보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미확인"으로 기재하면 되나, 정확한 농장정보 변경을 위해서는 이전 농장경영자의 정보를 포함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함
- 글의 12 농장식별번호의 농장경영자(명의) 변경 시 변경신고인과 이전 농장 경영자의 사육지 주소가 일부 다른데 이전 농장경영자의 사육지 주소가 잘못된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 □ 이전 농장경영자의 사육지 주소가 잘못된 경우 변경신고인은 증빙서류 (축산업등록증 등)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로 제출

→ 질의 13 ► 농장식별번호 발급증에 농장경영자를 추가하고 싶은데 방법은?

□ 하나의 농장에 농장경영자가 2명이상인 경우 "농장경영자 추가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농장식별번호 발급증에 경영자를 추가할 수 있음

□ 법 제8조에 의해 농장경영자는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을 신고해야하나 농장경영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함. 또한 조합, 협회 등을 통해 농장경영자가 대리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받아 대리신고 할 수 있음

질의 15 농장식별번호 발급증의 내용에 대한 변경신고는 농장경영자만 할 수 있는지?

□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 당시 기재된 관리인 또는 농장경영자가 지정한 관리인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변경신고서에 대리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함

→ 질의 16 →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 방법은?

□ 농장경영자는 사육하는 돼지의 종류(일반종, 재래종, 멧돼지)와 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의 사육현황을 해당 월의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장 (1577-2633)에게 신고

<돼지 사육현황 신고방법>

신 고 내 용	신 고 방 법	비고
	전화(구술), fax(사육현황신고서)	이력지원실(직접신고) 또는 축평원 지원
돼지 사육현황 (종류별 사육두수)	SMS 신고 * 신고일 기준으로 이력지원실에서 전송	이력지원실(전송) → 해당 농가(입력) → 이력지원실 (완료)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기재 * 해당월 마지막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까지	도축장 제출 → 품질평기사 입력

<u>질의 17</u> 한돈팜스를 이용하는 농장경영자로서 구체적인 월별 사육현황 신고방법은?

한돈팜스를 통해 가축사육현황을 신고하고자 하는 농장경영자는 한돈 협회 관할지부에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매월 마지막일과 다음달 5일 사이(공휴일, 토요일 제외)에 한돈지부에 신고하면 됨. 신고를 받은 한돈지부의 사무장이 이력관리시스템으로 로그인하여 사육현황 및 한돈팜스 필수정보(이유자돈수 등) 등을 입력하며 한돈 팜스를 통해서는 월별사육현황신고만 가능하고, 이동신고 및 기타 변경신고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원사무실 또는 이력지원실(1577-2633) 으로 신고 해야 함

2. 도축단계 질의응답

의 1 도축 출하시 농장식별번호를 발급받은 농장경영자만 도축검사 신청이 가능한지?

- □ 농장식별번호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의 지번단위에 부여한 고유번호이며 발급신청인은 농장경영자를 말하지만, 도축검사 신청서에 표시하는 출하농가는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경영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자로 농장식별번호를 발급 받은 자와 도축검사신청서의 출하농가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 예) 남편이 농장경영자인 경우 아내명의로 출하하거나, 위탁농장의 경우 위탁을 받은 대표자 명의로 출하하는 사례 등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도축 출하시 농장식별번호 발급자에 명단이 없다면 미리 받아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함

질의 2 이력번호란?

□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력 관리대상축산물에 부여하는 번호로서 돼지의 경우, 도축장경영자가 도축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해야 함. 이력번호의 구성은 축종코드(1) + 농장식별번호(6) + 일련번호(5)로 총 12자리로 구성됨

→ 질의 3 → 출하된 돼지의 계류장 입고 방법은?

□ 도축장경영자는 출하된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및 출하두수를 확인 후, 농장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계류하고 농장별 순서대로 도축하여야 함

질의 4 이력번호 발급 신청 방법은?

대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등을 통하여 출하농가의 농장식별 번호를 확인하고 돼지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 매뉴얼에 따라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력번호발급 관련 문제 발생 시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1577-2633)로 문의하면 됨

→ 질의 5 → 돼지의 이력번호를 표시하기 위한 방법은?

☞ 돼지의 이력번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력번호 자동표시기, 라벨부착, 휴대용

이력번호 표시기를 통해 가능함.

→ 질의 6 → 도축장에서 돼지도체를 여러 부위로 분할하여 반출하고자 할 때 이력번호 표시방법은?

□ 정확한 이력관리를 위하여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분할 부위마다 이력 번호를 표시하여 반출하여야 함

→ 질의 7 → 도축장에서 이력번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 도축장과 포장처리업소 시설이 연접하여 도축 후, 이동레일에 의하여 즉시 포장처리업소로 이동되고 도축된 돼지고기의 농장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력번호와 대응된 도축번호로 표시할 수 있음. 단 해당 도체가 도축장 밖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 질의 8 → 돼지도체에 표시한 이력번호의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방법은?

□ 도축과정에서 이동레일을 벗어나거나(위생검사, 돼지의 탈락 등), 도축 순번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돼지도체에 표시한 이력번호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도축검사관과 축산물품질평가사에게 오류가 발생한 돼지도체의 도축번호, 이력번호를 통보하고 수정하여야 함. 또한 이력 번호를 수정할 경우에는 오류 이력번호에 수정표시를 하고 그 주위에 수정한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 질의 9 돼지도체 이력번호 자동표시기를 활용하는 도축장의 경우 왜소돈, 통돼지, 모돈 등 이력번호 표시가 어려운 돼지도체의 경우 이력번호 표시방법은?

□ 돼지도체 이력번호 자동표시기를 설치한 도축장은 왜소돈, 통돼지, 모돈의 경우에 이력번호 라벨지 부착 또는 휴대용 이력번호표시기를 활용하여 표시하는 것이 자동표시기의 원활한 사용에 유리함

→ 질의 10 도축처리(경매)결과 신고 방법은?

도 도축장경영자는 도축(경매)결과를 돼지고기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도축(경매)이 완료된 날까지 신고하여야 함. 단,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완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

3. 포장처리 단계 질의응답

■ 질의 1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언제부터 돼지이력제를 이행해야 하는지?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의한 법률」의 시행일인 2014.12.28일부터 적용됨. 단, 국내산 이력축산물의 경우 시행령 부칙 제1조에 의한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자의 거래신고에 관한 사항은 2015. 6. 28일부터 적용

질의 2 되지고기이력제 시행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자가 해야 할 일은?

□ 돼지고기를 포장처리 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는 포장처리실적과 거래 내역을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해야하며 포장처리 하는 최소단위의 용기 및 포장에 해당하는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해야 함

□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는 이력번호 표시의 편리를 위해 라벨 출력이 가능한 저울이 있어야 하며, 전산신고를 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인터넷이 가능한 PC를 통해 지육거래 및 소, 돼지고기를 포장처리한 실적과 거래내역을 전산 신고할 수 있어야 함.

질의 4 돼지고기 포장처리실적 및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 전산신고대상 업소의 범위는?

□ 법 시행령 제 4조에 의하여 도축업의 작업장 시설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접한 시설에서 영업을 하거나, 종업원이 5인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소가 해당됨. 또한 그 외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되기를 희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

→ 질의 5 전산신고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신고와 장부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 돼지고기 전산신고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포장 처리한 경우 이력관리대상축산물(소,돼지) 포장처리실적과 거래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포장처리일별로 기록 · 관리해야 함

→ 질의 6 → 식육포장처리업자의 경우 이력제 이행업무에 대한 위반시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공표가 되는지?

- □ 식육포장처리업자가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연 2회 이상 위반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과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게 됨
 - ※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공표일이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인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 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공 사업자를 의미함

□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통해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며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돼지고기이력관리시스템 자료실의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대상 사업자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 관리팀(FAX: 031-390-5559)로 송부 하고 지정신청이 완료되면 이력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ID/PW가 부여됨 <이력지원실(1577-2633)로 문의>

→ 질의 8 →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이력제를 시행하면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입고되는 도체 또는 부분육에 표시된 이력(묶음) 번호를 확인한 후 포장처리 하여야 하며, 포장처리시 이력(묶음)번호간 혼입이 없도록 하고 이력(묶음)번호 표시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포장육의 최소단위 용기・포장에 동일한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해야 함

→ 질의 9 → 식육포장처리업 관련 전자거래 신고 대상자에 경리업무 직원, 납품기사 및 대표이사도 5인 이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식육포장처리업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사항이며, 동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 따라 허가관청에서 허가증을 발급할 때 영업허가 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이 관리대장에서는 업소명, 영업 허가 번호·영업장 소재지·대표자·종업원 수 등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동 관리대장에 포함된 종업원수가 연간 5인 이상이면 전산신고 대상에 포함됨.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질의 10 → 묶음번호를 만들 경우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는지?

□ 이력번호에 따라 포장처리 및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수의 이력번호를 한 개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음. 묶음 번호를 구성하는 돼지고기의 이력번호를 최대 30개 이하로 하여야 함

→ 질의 11 → 묶음번호 구성시 영업자코드는 무엇인지?

□ 영 제4조에 의한 전산신고 대상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영업자코드를 부여하고 전산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숫자 중 끝에서 마지막 한 자리 숫자를 제외한 4자리 숫자를 사용함. 따라서 5인 이상의 전산신고 대상 식육포장처리업소는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 (1577-2633)로 전화하면 영업자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음

→ 질의 12 - 묶음번호란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지?

- □ 묶음번호란 다수의 이력번호이거나 이력번호 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것을 말하며 묶음번호는 고정코드(L), 구분코드(0=소, 1=돼지), 묶음날짜코드(6), 영업자코드(4), 일련번호(3)자리로 표시할 수 있음.
 - 예시(2014년 12월 28일 3번째 묶음번호를 표시한 경우) < L 1 141228 0001 003 >

[묶음번호 구성 체계]

- 가. 묶음번호는 아래 구성체계와 같이 L을 포함한 15자리 문자, 숫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저울 등에서 동 방식으로 표현이 어려운 경우 로트(lot 또는 L)를 포함한 연월일과 일련번호의 조합 또는 연월일, 일련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조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 나. 묶음번호 구성체계

	묶음고정코드	구분코드	묶음날짜코드	영업자코드	일련번호
길이	1	1	6	4	3
타입	영문자(L)	숫자	숫자	숫자	숫자

- (1) 묶음고정코드는 영문자 'L'을 표기한다.
- (2) 구분코드는 쇠고기는 '0'으로 하고. 돼지고기는 '1'로 표기한다.
- (3) 묶음날짜는 연도 2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로 표기한다.
- (4) 영업자코드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 가) 포장처리실적 전산신고 대상 영업자의 경우 : 이력관리시스템으로 부여 받은 영업장의 고유번호를 사용한다.
 - 나) 포장처리실적 전산신고 대상 영업자가 아닌 경우: 영업자코드는 세무서에 부여 받은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숫자 중 끝에서 마지막 한 자리 숫자를 제외한 4자리 숫자를 사용한다.
- (5) 일련번호는 묶음상품의 일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부여한다.

→ 질의 13 - 묶음번호를 한번 만들면 다시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지?

□ 묶음번호를 구성한 이력번호는 다시 묶음번호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돼지고기에 한하여 묶음번호 구성내역에 대한 관리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관리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이력번호 30개 범위내에서 재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음

→ 질의 14 → 학교급식을 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입니다. 1등급이상으로 납품하 고자 하는데 이력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다수의 이력번호에서 특정등급 이상으로 포장처리 하는 경우 도축일자, 이력번호, 도축번호 등이 포함된 매입내역을 근거로 1등급 이상의 지육을 선택할 수 있음. 이 경우 전산신고된 자료와 실제 포장육의 제품이 일치하 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 등급판정확인서 등이 있어야 함.

질의 15 등외등급은 별도로 구분하여 포장처리 하는데 이력(묶음)번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등외등급은 정상등급(1⁺,1,2등급)과 별도로 구분하여 포장처리 하여야 하며 등외등급은 등외등급 끼리 묶음을 구성하여 표시하여야 함

교 질의 16 도축장에서 연접한 포장처리업소로 돼지를 반출할 경우 도축번호 대신에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련번호 등을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도체번호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43조(도축장경영자의 준수사항) 제3항에 의거 도체번호 및 중량을 표시토록 하고 있음. 다만, 계량장치를 통해 별도로 도체중량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중량의 표시를 생략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돼지의 이력번호 생성은 도체번호(농장간 구분)가 반드시 있어야 함

→ 질의 17 → 지육 판매시 반드시 도체에 이력번호가 있어야 하나요? 이력표시기 고장시 라벨이라도 붙여야 되는지? 전산상으로 출력해주면 되는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9(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방법 및 관리 등)에 의거 도축장경영자는 도체를 반출할 때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력번호 표시는 도축장별로 자동이력번호 표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라벨출력, 혹은 휴대용 이력 번호표시기로 표시 가능

■ 질의 18 ☑ 일반등급과 등외등급은 반드시 분리해야 하는지?

□ 돼지고기 포장처리시 등외등급은 일반등급(1⁺,1.2등급)과 별도로 구분하여 포장처리 해야 함. 이 경우 동일농장(이력번호가 같은)에서 정상등급과 등외등급이 발생하면 정상등급에는 이력번호를 등외등급에는 묶음번호 요령을 적용하여 표시

→ 질의 19 → 이력번호를 관리해야 하는 부위가 따로 있는지? 부산물은?

☞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은 이력관리법률 제2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라

지육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이 포함되므로 부산물은 해당되지 않음

의 20 포장처리 과정에서 잔여육 등이 발생하여 속포장지와 박스 포장지의 이력(묶음)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3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포장육의 이력번호 표시는 최소 단위의 용기・ 포장에 대하여 동일한 이력번호를 표시토록 하고 있음

→ 질의 **21** → 하나의 이력번호에 개체가 100두인 경우 도체번호 단위가 아닌 총중량 단위의 매입신고가 가능한지?

□ 이력번호에 해당하는 지육의 도체번호별로 가급적 예시1)의 매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예시2)의 총 두수에 대한 총 중량단위로 신고가능

예시1) 이력번호 123456723012 0001 도체번호 90kg 중량 이력번호 123456723012 0100 도체번호 85kg 중량 예시2) 이력번호 123456723012 100두에 대한 총 중량으로 매입신고

→ 질의 **22** → 매입 후 지육 출고 시 먼저 묶음번호를 구성하여 출고 할 수 있는지?

□ 예, 다만, 매입 후 지육을 출고한 후 구성된 묶음번호를 그대로 사용 하여 포장처리 할 경우는 묶음번호 출고가 가능함.

→ 질의 **23** → 묶음에 묶음인 경우 재 묶음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 L1과 L2를 L3로 재 묶음의 경우 묶음번호는 L3로 신고하고, 구성내역서의 이력번호란에서 해당 묶음번호가 구성되기 전 묶음번호인 L1과 L2에 기록된 이력번호를 기재해야 함

질의 24 ▼ 포장지에는 도축장명을 모두 표시해야 하는지?

□ 도축장명 표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4-107호) 축산물의 표시 기준 <별표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에 의하면 "두 곳 이상의 도축장 에서 도축된 식육이 서로 혼재된 경우에는 도축된 도축장 모두를 각각 표시"토록 하고 있음

→ 질의 **25** → 하나의 이력번호를 묶음번호로 생성할 수 있는지?

□ 묶음번호 생성은 다수의 이력번호를 하나로 묶음을 하는 경우 생성해야함. 다만, 하나의 이력번호가 정상등급(1⁺, 1, 2)과 등외등급으로 구분이되는 경우 등외등급을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음

→ 질의 26 → 같은 이력번호인데 서로 다른 매입처로부터 매입된 경우 전산신고는?

□ 포장처리는 동일한 이력번호로 사용할 수 있으나 매입신고시 매입처는 다르게 입력하면 됨

→ 질의 **27** → 등급별 포장처리를 하고 싶은 경우 전산신고가 가능한지?

□ 등급별 포장처리를 원할 경우, 매입신고단계에서 해당등급의 도체번호를 사전선택하고, 이력(묶음)번호 생성 후 포장처리 한 후 해당결과를 전산신고

의 28 모든 제품박스에 100% 이력관리를 해야 하는데, 거래내역신고서에 이력번호를 빈칸으로 두고 수량, 중량을 작성하거나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 거래내역서에 이력번호, 수량, 중량 등을 빈칸으로 작성하시면 실제 거래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질의 29 회사 내 내부 사무소(창고)간 판매가 아닌 물건의 이동도 거래 내역신고서를 주고받아야 하는지? 예를 들어 사업자번호가 다른 내부 사무소 간 이동하거나 물류를 위탁한 외부 회사에 물건을 이동하는 경우

□ 축산물의 거래내역은 출고(판매・반출)와 입고(매입・반입)의 경우를 말하며 출고처와 입고처는 국내산 이력축산물이 포장처리 또는 보관되어 있는 창고를 포함하고 있음. 즉, 사업자번호, 영업장인허가번호가 다른 식육 포장처리업소나 식육판매업소 및 물류창고(거래명세서상의 사업자번호

등록)로 거래신고 할 수 있음

질의 30 거래처간 거래명세서는 기존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첨부로 거래 내역신고서를 첨부해도 되는지?

□ 법 제18조에서 정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력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가 첨부하여 거래 현황을 알 수 있다면 거래내역서를 첨부해도 무방함

→ 질의 31 →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며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등 규정을 위반하여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법32조에 의거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부과대상이 됨

4. 판매단계 질의응답

→ 질의 1 → 전산신고대상인 식육판매업소에서 해야 하는 일은?

'14.12.28일부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력대상 축산물(국내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 수입산쇠고기)을 판매시 이력(묶음)번호를 라벨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표시해야하며, 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거래(매입·매출)내역을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전산신고(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여야 함. 전산신고 관련 접속권한 (아이디 등)은 이력 지원실(1577-2633)로 문의

질의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식육판매업소에서 전산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 국내산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을 취급하는 영업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기타식품판매업소(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의 매장내에서 영업을 하는 식육판매업소 중 영업장면적이 50㎡이상 또는 종업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내역을 전산신고 해야 함.

→ 질의 3 → 2개이상의 이력축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육판매 표지판에 이력(묶음)번호를 모두 표시해야 하는지?

₩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자는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으로부터 매입한 국내산이력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의 포장육 등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식육판매표시판 등에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2개이상의 이력번호가 혼합된 축산물을 한 개의 채반에서 판매하는 경우 해당되는 모든 이력번호를 표시하거나 하나의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음

질의 4 돼지고기이력제도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지육, 정육만 이력제를 실시하는지?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8항의 "이력관리

대상축산물"은 국내산의 경우 돼지를 도축하여 얻은 지육(枝肉)과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된 정육 또는 포장육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부산물은 제외됨

➡ 질의 **5 ➡** 판매업소에서 축산물이력제 시행을 위해 준비할 사항은?

전산신고 대상 판매업소는 거래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 가능한 PC를 통해 지육거래 및 쇠고기 · 돼지고기를 포장처리한 실적과 거래 내역을 전산신고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력번호 표시 라벨이 인쇄되는 저울을 이용하여 이력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음.

질의 6 식육판매장에 입고된 돼지고기의 이력번호 확인방법은?

■ 지육상태로 입고된 경우 지육에 표시된 이력번호(또는 라벨지)와 거래 명세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에 기재된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전산신고대상인 납품 포장처리업소는 이력정보 조회를 통하여 해당 포장처리업소명 등을 확인 할 수 있음

질의 7 ⊌ 냉장고에 보관하는 쇠고기, 돼지고기에도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는지?

□ 거래·판매 후 남은 이력축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도 이력번호를 표시 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판매시 다른 축산물과 혼동하여 이력번호가 뒤 바뀌지 않도록 이력(묶음)번호를 관리해야 함.

생산된 원료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표시한 것은 이력 번호로 다시 표시해야 하는지요?

돼지 및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것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국내산 돼지고기의 이력관리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법 적용이전에 생산된 원료육 즉,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것은 동 법 부칙 제5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력번호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가로 이력 번호 표시는 하지 않아도 됨. 다만, 해당되는 축산물은 가급적 빨리 소진되도록 하여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 하여야 함

→ 질의 9 저육식당에서도 쇠고기 · 돼지고기를 판매시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는지?

☞ 정육식당의 경우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가 있다면 식육판매업소에 해당 되므로 이력대상 쇠고기,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거래내역서를 기록·관리해야 함.

질의 10 소비자가 구매한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을 비닐봉지 등에 담아 줄 때에도 영수증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는지?

소비자는 식육표지판매판에 이력번호가 표시되어 있고, 이를 확인하여 구매할 수 있으므로 구매한 쇠고기, 돼지고기를 포장한 비닐봉투에는 별도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됨. 다만, 소비자가 이력번호를 표시한 영수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판매시 영수증 등에 이력번호를 기록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과 질의 11 대형마트의 영업장은 대부분 EDI(전자데이터교환)를 통해 필요한 고기량을 본사에 주문하며 본사에서 주문량과 재고량을 파악 후 육가공업체에 발주하는 방식임. 이 때 납품업체는 본사에서 정한 물류센터(보관창고)에 상품을 먼저 배송한 후 물류센터는 영업점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정육을 제공합니다. 이 때 각각의 거래내역 신고는?

** 축산물을 납품하는 업체가 최종 판매처를 모르고 물류센터로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 최종 반출처를 물류센터로 할 수 있음. 다만, 물류센터는 식육판매업소 등이 아니므로 신고 의무는 없으나 물류센터에서 최종 식육판매업소로 반출시 해당 식육판매업소는 거래내역 신고를 해야 함

글 질의 12 돼지이력법이 적용되는 12.28일 이후에는 기존 포장육(냉동육)의 경우 개체식별번호 및 LOT등의 묶음표시를 그대로 식육판매표지 판에 표시하여도 되는지?

법 시행이전에 생성된 개체식별번호와 묶음번호는 그대로 표시해도 되며, 조회도 가능함. 단, 묶음번호를 소와 돼지 동일하게 L+14자리의 표시를 원칙으로 하지만 전자저울 등에서 동 방식이 어려운 경우('LOT' 또는 'L')를 포함한 연월일과 일련번호 및 사업자번호 조합으로도 표시할 수 있음

● 식육판매업소에서도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전산신고 대상 업소는 소비자가 묶음번호를 인터넷 등으로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내역서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하고, 비 전산신고 대상자는 서류를 보관한 후 구매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함.

→ 질의 14 → 묶음번호가 표시되어 입고된 돼지고기를 판매시 하나의 판매표지 판에 묶음번호 2개를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 식육판매업소에서는 하나의 식육표지판매판에 하나의 묶음번호를 표시 하여야 함. 다만, 2~3개 이상의 이력번호를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묶음구성 후 묶음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 질의 15 돼지고기도 등급표시를 해야 하는지?

☞ 돼지고기는 쇠고기와 달리 등급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님. 다만, 식육포장 처리단계에서 등외등급은 별도로 구분하여 포장처리토록 하고 있고, 등외등급은 묶음번호를 사용토록하고 있음. 등외등급과 일반등급 (1⁺,1,2)은 구분되어 입고되므로 돼지고기에 등급표시를 하고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소의 경우에서 해당 돼지고기의 정확한 이력번호와 등급을 확인한 후 판매해야 함

→ 질의 16 → 식육판매장에서 이력번호 표시를 위해 반드시 전자저울을 구입해야 하는지?

■ 식육판매업소의 경우 포장육에 표시된 이력(묶음)번호를 식육판매표지판에 표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자저울을 추가로 구입할 필요는 없음. 다만, 라벨지 등을 수기로 작성하기 어렵거나 매장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전자저울을 사용하는 경우 이력(묶음)번호의 출력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할 필요성은 있음

<묶음번호 표시 : (기존) LOT → (개선) L+묶음번호,14자리>

로 질의 17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이마트 등 대형 식육판매업소로 포장육을 납품하는 경우가 많으나, 전산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최종 납품처에서 전산으로 요청할 가능성이 있음

- ☞ 전산신고는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이외에 희망하는 경우 전산신고를 할 수 있음.
 - * 일정규모 이상
 - ① 도축장과 일체 또는 연접한 식육포장처리업소, ② 연간 평균 종업원 5인 이상 식육포장처리업소, ③ 기타식품판매업 신고대상에서 정한 300㎡ 이상의 영업장내에서 영업을 하는 국내산 이력관리대상축산물(쇠고기, 돼지 고기)을 취급하는 종업원 5인 이상 또는 영업장 면적이 50㎡ 이상인 식육 판매업소, ④ 그 밖의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식육부산물판매업소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중 희망업소

→ 질의 18 → 식육판매장의 이력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은 점포단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괄로 회원가입이 가능한지?

● 이력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은 이력관리시스템에 신청서가 등재되어 있으며 점포단위 혹은 일괄로도 회원가입이 가능함. 다만, 일부 대형마트의 경우 1~2개의 대표 사업자번호에 점포별로 각각의 영업장 인허가번호가 있는 경우는 영업장 인허가번호에 따라 별도의 ID · PW의 부여가 가능함

→ 질의 19 → 종업원 5인 이상은 전산신고 의무대상인데 종업원의 범위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종업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축산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식육포장처리업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사항이며, 동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 따라 허가관청에서 허가증을 발급할 때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고, 이 관리대장에서는 업소명, 영업 허가번호·영업장 소재지·대표자·종업원 수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를 종합해볼 때 정확한 종업원 수는 영업허가권자인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종업원 수가 연간 5명이상인 경우전산신고 대상자에 해당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참고> 과태료 부과 기준

□ 식육포장처리업소·식육판매업소

위반행위 내용 근 거 법조문		위빈	· 횟수	-별 고 구액	바태료	· 적용시기
기반영귀 대중 	법조문	1회	2회	3회	4회 이상	[역중시기
o 쇠고기, 국내산 돼지고기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6호	10	20	40	160	'14.12.28 부터
o 쇠고기, 국내산 돼지고기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7호	40	80	160	320	* 돼지고기 취급(식육 포장처리, 식육판매업,
o 쇠고기, 국내산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명시한 거래명세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8호	30	60	120	240	역 독관대입, 유통전문판 매업)자 및 , 식품접객 업자(수입
o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기록하거나 규정에 정한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21호	20	40	80	320	쇠고기) 등 은15.6.28 부터

□ 기타 모든 이행대상자

위반행위 내용	근 거 법조문	위빈	횟수별 과태료 금액			적용시기
T D S T	법조문	1회	2회	3호	4회 이상	76/1/1
o 이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9호	30	60	120	240	
o 이법에 따른 보고 및 출입·검사 등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 시료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50	100	200	400	'14.12.28 부터

5. DNA동일성 검사 질의응답

→ 질의 1 → DNA는 무엇이며, 축산물이력제 DNA동일성검사의 의미는?

DNA(Deoxyribo Nucleic Acid)는 사람 또는 동물 등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 속에 존재하면서 생명체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는 물질로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 사람 또는 동물마다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음. DNA동일성검사는 모든 개체마다 유전자(DNA)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축산물로부터 채취한 시료에 대해 유전자 감식기법을 활용하여 각각의 시료에서 추출된 DNA의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동일성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함.

→ 질의 2 → DNA동일성검사를 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대상은?

도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의 영업장에서 도축·포장처리·진열· 보관·판매되고 있는 이력번호 표시 돼지고기가 시료 채취의 대상이 됨.

→ 질의 3 → DNA동일성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은?

도 도축장에서 도축된 돼지의 경우에는 도체의 조직 등에서 시료를 채취함. 또한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식육포장처리·진열·보관·판매하고 있는 돼지고기는 피 채취자(당해업주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입회하에 살코기 부분을 약 20g를 채취하여 10g정도로 2등분 후 각각의 시료채취 봉투에 넣어 채취자와 피 채취자가 모두 봉인한 후에 1점은 피 채취자에게 인계하여 검사가 끝날 때까지 변질되지 않게 보관하도록 조치하고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하여 채취된 시료와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을 해당 검사기관으로 송부함.

□ 질의 4 DNA동일성검사의 결과 판정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하며, 판정 결과는 얼마동안의 기간 내에 통보받을 수 있는지?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DNA동일성검사를 하고, 보관용 시료와 검사용 시료의 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대립유전자가 일치할 경우에는 '일치', 대립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일치'로 판정함. 판정 결과 통보는 DNA동일성검사 신청에 따른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판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검사신청기관에 DNA동일성검사 결과 통보서에 의해 통보하여야 하며,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시료채취 대상자에게 7일 이내에 알려주어야 함.

→ 질의 5 예를 들어 칠레산 돼지고기와 국내산을 섞었을 경우 쇠고기처럼 DNA분석이 가능한지?

☞ 돼지고기도 쇠고기처럼 동일성검사에 대한 기술 확보는 되어 있으며 연간 30,000건 이상을 검사할 계획이며, 검사방법도 쇠고기처럼 DNA 동일성 검사방법과 동일함

의 6 시·도에서 시료를 채취하였으나 여건상 DNA동일성검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 DNA동일성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또는 장비 등이 미비하여 채취 시료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채취한 시료와 함께 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

6. 위반자 처분

→ 질의 1 → 각 단계별 위반행위별 과태료부과 세부기준 및 부과금액은?

의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사육장 또는 영업장 단위이며,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경우에 적용함.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용한 날로 함. 또한 부과원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나 가중하는 경우에 과태료의 총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과태료가 부가되는 대상 및 위반행위별 부과 금액은 다음의 표와 같음.

□ 사육농가

(단위 : 만원)

			위반	횟수별	과태로	로 금액	
위	반행위 내용	법조문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적용시기
o 농장식별번호 경우	호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10	20	40	160	
	호 신청한 내용에 대한 ·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우		10	20	40	160	
· '	(돈)의 출생, 폐사, 이동,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3호	10	20	40	160	
	종돈의 개체식별번호가 표등을 부착하지 않은		10	20	40	160	'14.12.28
o 돼지에 농 않은 경우	·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법 제34조 제1항 제5호	10	20	40	160	부터
	의 사육현황 등을 신고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10	20	40	160	
되어 있지 훼손되어 2 양도·양수,	종돈의 귀표등이 부착 아니하거나 귀표등이 개체식별이 곤란한 가축을 , 수출하거나 가축사육 이동하게 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20	40	80	320	

□ 도축장

	 		횟수별	TIO LIT		
위반행위 내용	법조문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적용시기
o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하거나 가축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 돼지 또는 가축식별대장에 등록 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한 돼지를 도축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50	100	200	400	'14.12.28 부터
o 소, 돼지의 도축 또는 경매신고나 돼지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10	20	40	160	

□ 축산물수입업자

	근 거	위반	횟수별	과태로	로 금액	
위반행위 내용	법조문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적용시기
o 수입쇠고기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0호	10	20	40	160	
o 수입쇠고기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10	20	40	160	
o 수입유통식별표가 훼손되어 유통 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수입 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산쇠고기를 양도·양수 또는 수출한 경우	제1항	20	40	80	320	'14.12.28 부터
o 수입쇠고기 이력번호가 표시된 수입 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10	20	40	160	
o 수입쇠고기의 양도 또는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4호	10	20	40	160	
o 수입쇠고기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5호	10	20	40	160	

□ 유통업자

	근 거	위반	횟수별	과태로	로 금액	TI O 1171
위반행위 내용	법조문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적용시기
o 쇠고기, 국내산 돼지고기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6호	10	20	40	160	'14.12.28
o 쇠고기, 국내산 돼지고기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		40	80	160	320	부터 *돼지고기취급 (식유포즈하리,
o 쇠고기, 국내산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명시한 거래명세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l	30	60	120	240	식육판매업, 유통전문판 매업자 및 , 식품잡객업자
o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기록 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규정에 정한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20	40	80	320	(수입쇠고기) 등은15.6.28 부터

□ 기타 모든 이행대상자

	근 거		횟수별	과태로	로 금액	T. C. J. T.
위반행위 내용	법조문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적용시기
o 이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9호	30	60	120	240	
o 이법에 따른 보고 및 출입·검사 등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 시료수거를 거부 및 방해 하거나 기피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50	100	200	400	'14.12.28 부터

질의 2 ★산물이력제를 위반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13.12.27일 개정 공포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관리대상 가축인 소, 돼지 사육농장 경영자, 도축장, 식육포장처리 업소, 식육판매업소 등이 축산물이력제 이행사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부과될 수 있음.

→ 질의 **3** 축산물이력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관은?

구분	시·도, 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부과 대상자	-사육농가 -가축시장개설자 -도축장경영자 -축산물수입판매업소, 포장처리업소, 축산물 유통전 문판매 업소, 식육(부산물)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 집단 급식소, 통신판매업소	-소 수입·수출업자 -수입쇠고기 취급 축산물 수입판매업소, 포장처리 업소, 축산물유통전문 판매업소, 식육(부산물) 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통신판매 업소	-국내산이력축산물 (국내산 쇠고기, 돼지 고기)취급 포장처리 업소,식육판매업소

→ 질의 4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은?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면 부과권자는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됨. 다만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징수하게 됨.

<u>질의 5</u> 이력번호 거짓표시가 식육판매업소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누가 처벌되는지?

□ 이력번호를 도축장·포장처리업소에서 잘못 표시하여 식육판매업소에 공급되었다면 공급자를 조사하여 처벌함. 그러나 이력번호가 정상적으로 표시된 쇠고기, 돼지고기를 공급받아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에는 판매업소에 책임이 있음.

의 6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전화가 있는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원산지표시 위반 등에 관한 신고접수를 위해 안전 상담센터를 운영중이며 전화번호는 1577-1203번임.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별도의 원산지표시 관련상담 전화를 운영중(1588-8112번)임. 이와 별도로 축산물이력제와 관련하여 사육농가, 유통업체, 소비자 등의 실시간 민원 상담을 위해 "이력지원실"을 운영중이며 전화번호는 '1577-2633'임. 이와함께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 의 질의응답 코너도 운영하고 있음.

7. 기타 질문 등

→ 질의 1 개체식별번호, 이력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의 용어의 정의와 해당 되는 용어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쇠고기 판매시 국내산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 수입쇠고기는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사용했으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소에 이어 돼지까지 이력관리대상에 포함됨. 이에 개체식별번호와 수입유통식별번호로 구분되는 용어를 동 법률에 따라 이력이 관리되는 축산물은 유통단계에서 "이력번호" 란 용어로 통일 하여 소비자 혼선을 최소화 시켰음. 다만, 개체식별번호는 사육단계에서 소와 종돈의 경우 개체별로 이력관리를 해야 하므로 개체식별번호 용어는 그대로 사용됨

→ 질의 2 → 우족, 돼지족발, 꼬리, 뼈, 지방 등의 부산물도 이력번호 표시 대상에 해당되는지?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이력 관리대상 축산물은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지육(枝肉)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이 해당됨. 따라서 우족, 돼지족발, 꼬리, 뼈, 지방 등은 이력번호 표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 3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C)





→ 질의 **4** → 국내 돼지고기이력제도와 유사한 이력제도가 있는지?

☞ 아래는 우리나라 식품관련 이력추적제도 비교표

구분	쇠고기이력제 (축산물이력제)	농산물이력제	식품이력제	수산물이력제
BI	BEEF PRACEABLE	安社類 ((日本平河)	利表的は中国沿山場を	수산물이딱제
개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이력관리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관리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까지 이력관리	수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관리
본 사업 개시	2008년(쇠고기) 2010년(수입쇠고기)	2008년	2009년	2008년
근거법령	소 및 쇠고기이력추적에 관한 법률('07. 12. 21) *기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법률 전부개정('13.12.27), 시행('14.12.28)	농산물품질관리법 (*05. 8. 4)	식품위생법 ('08. 6. 21)	수산물품질관리법 ('08. 3. 28)
대상품목	의무제 (모든 소 및 쇠고기) *14.12월부터 돼지 및 국내산 돼지고기 이력제시행	GAP농산물 중심 과실 등 총3,878건, 88,218농가 참여 중("10년)	185개품목, 18개업체 참여 중('10년) *14.12월부터 영유아 및 건강기능식품	굴, 김, 굴비 등 16개품목, 1,300개업체 참여 중('11년)
운영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국내산)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산)	농립축산식품부 국립농산품질관리원 농람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www.mtrace.go.kr (국내산) www.meatwatch.go.kr (수입산)	www.farm2table.kr	www.tfood.go.kr	www.fishtrace.go.kr
이력 관비번호	번호구성 기준 有 (12자리, 국가코드포함 15자리)	번호구성 기준 有 (12자리)	18자리	번호구성 기준 有 (13자리)
활용매체	웹, 오픈서비스, 매장내 터치스크린, 모바일(모바일주소, QR코드, 앱)	웹, 오픈서비스, 모바일(모바일주소, QR코드, 앱)	웹, 단말기, 모바일	웹, 모바일, 바코드스캔
추진방향	'04~ '07 : 시범시업 의무화 '08. 12 : 사육단계 '09. 06 : 유통단계	'03~ '05 : 시범사업 '06 : 자율등록 실시 '09. 12 : 자율등록 전품목 GAP 인증시 의무	'08~ : 시범사업 '09~ : 12업체, 77품목 등록('10. 9. 30 기준)	'05~ '07 : 시범사업 '08~ : 확산홍보활동



- 1. 돼지고기이력제 관련 기관·단체
- 2. 돼지고기이력제 시·도 담당 부서
- 3.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원별
- 4. 위탁기관(한국종축개량협회)

1. 돼지고기이력제 관련 기관·단체 연락처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FAX)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044-201-2362~3 (044-868-0628)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	1577-2633 (031-390-555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054-429-4159 (054-429-4168)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	031-467-1700 (031-467-1906)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041-580-3358 (041-580-336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02-3299-4378 (02-960-0164)
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	02-2080-6552 (02-2080-6560)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사업본부	031-390-5552~3 (031-390-559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유통관리부	070-8282-2657 (031-436-8776)
대한한돈협회		02-581-9751~4 (02-581-9768~9)
한국종축개량협회		02-588-9301~5 (02-3473-8166)
축산기업중앙회		02-466-2573 (02-466-2574)
한국축산물처리협회		031-391-9766 (031-395-6661)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031-394-8147 (031-394-8150)

2. 돼지고기이력제 시·도 담당 부서 연락처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FAX)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	02-2133-4724 (02-2133-4911)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051-888-4845 (051-888-4819)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053-803-3422 (053-803-3439)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032-440-4395 (032-440-8663)
광주광역시	생명농업과	062-613-3984 (062-613-3969)
대전광역시	농업유통과	042-270-3764 (042-270-3729)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052-229-2934 (052-229-2919)
세종특별자치시	산림축산과	044-300-4441 (044-300-4429)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031-8030-3483 (031-8030-3479)
강원도	축산진흥과	033-249-2656 (033-249-4042)
충청북도	축산과	043-220-3732 (043-220-3719)
충청남도	축산과	041-635-4107 (041-635-3057)
전라북도	축산과	063-280-2686 (063-280-2729)
전라남도	축산과	061-286-6553 (061-286-4787)
경상북도	축산경영과	053-950-3686 (053-950-2659)
경상남도	축산과	055-211-5275 (055-211-3759)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정책과	064-710-2331 (064-710-2129)

3.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원별 연락처

지원명	전화번호 (FAX)	사육현황 신고	주소
본부 (이력관리팀)	031-390-5553 (031-390-5594)	1577-2633	경기도 군포시 용호1로 46번길 9
서울지원	032-671-6368 (032-671-6340)	032-674-0323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송내대로 518번길 71 농협부천축공 內
경기지원	031-466-4539 (031-466-4117)	031-466-263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298 협신식품 內
강원지원	033-813-1583 (033-732-1582)	033-813-2633	강원도 원주시 저금어지길 456 강원엘피씨 內
대전충남지원	042-626-3860 (042-822-3890)	041-585-1865	대전시 유성구 반석서로 77 스마트빌딩 3층
충북지원	043-882-7356 (043-882-7357)	043-882-7358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룡로 183-9 농협중앙회 음성축산물공판장 內
광주전남지원	062-573-3644 (062-573-3644)	062-573-3645	광주시 북구 첨단연신로 107번길 45-22 토담빌딩 8층
전북지원	063-278-2363 (063-272-2363)	063-275-23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506 대림빌딩 4층
대구경북지원	053-384-2711 (053-384-2713)	053-384-2633	대구시 북구 유통단지로 24길 16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 2층
부산경남지원	055-336-1862 (055-336-1863)	055-723-2699	경남 김해시 분성로 569번길 12 김해축공 內
제주지원	064-799-7691 (064-799-7692)	064-799-769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해암이길 215 제주축협 內

4. 돼지고기 위탁기관(한국종축개량협회) 연락처

연번	시도별	위탁기관명	전화번호 (FAX)	주소
1	서울	본부	02-588-9301~5 (02-3473-8166)	서울 서초 명달로88(서초3동 1516-5 축산회관)
2	경기	경기강원지부	031-282-9303~4 (031-282-9305)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 12번길 17 (구갈동 414 KT신갈지점 4층)
3	세종	충청지부	044-865-9301 (044-865-9302)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아홉거리길 100 (월하리 948-8 KT세종지사 4층)
4	전주	호남지부	063-24-9301~2 (063222-9304)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27 (효자2동 1238-7 4층)
5	군위	경북대구지부	054-383-9605 (054-382-9605)	경북 군위군 동서길 22 (서부리 364-11 KT군위빌딩)
6	김해	경남부산울산지부	055-346-6313~4 (055-346-6315)	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20번길 28 (진영리 275-1 KT진영지사 2층)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2. 시행령 별표
- 3.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 서식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3.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이력관리대상가축"이란 소와 돼지를 말한다. 5. "종돈"이란 「축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축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된 돼지를 말한다. 6. "농장식별번호"란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이하 "가축사육시설"이라		제2조(종돈의 범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된 돼지"란 「축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종축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고 있는 돼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돼지를 말한다. 1.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종축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이 공고한 기준에 따라 혈통등록되거나고등(高等)등록된 돼지 2.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한 기준에 따라 혈통이 확인된 번식용 씨돼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다)을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가축사육시설마다 부여하는 고유번 호를 말한다. 7. "개체식별번호"란 이력관리대상가축의 개 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가축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8.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가. 국내산이력축산물: 개체식별번호가 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이나 농장식별번 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지 육(枝肉)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한다]로서 식용 으로 제공되는 것 나.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가 부여된		제3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부산물) 법 제2조
수입 쇠고기(지육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9. "이력번호"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 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 한다. 10. "귀표등"이란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이력관 리를 위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기 위하		제1항제8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별표 1과 같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포함한다] 등으로 기재하여 귀나그 밖의 곳에 부착 또는 표시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 등을 말한다. 11. "수입유통식별표"란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이력번호 및 수입산이력축산물 관련 정보를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포함한다]로 기재하여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포장박스 등 포장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를 말한다. 12. "위해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압류·폐기 또는회수 대상 축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13. "수입"이란 외국 가축이나 축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축산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위해축산물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2 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쇠고기를 말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		
제1절 사육단계의 이력관리		
제4조(농장식별번호의 부여) ①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식별할 수 있는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농장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는 신청한 내용이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의 방법, 절차 및 기한, 부여 방법, 변경신고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농장식별번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사육을 시작하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하 "품질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품질평가원장은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이하"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이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이라 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농장식별번호의 부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통보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 표 2와 같다.
제5조(출생 등의 신고) ①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수입·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 종돈이 출생(종돈의 경우에는 등록을 말한다)하는 경우 2. 소, 종돈이 폐사한 경우 3.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양도(도축을 위한 출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양수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시킨 경우 4.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수입하는 경우 5.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수입하는 경우 6.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가축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절차·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		제6조(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① 농장영영자 및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수입·수출하는 자는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출생(종돈의 경우에는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폐사, 양도·양수·이동 또는 수입·수출한 이력관리대상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소는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종돈은 영제12조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종돈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돼지(종돈은 제외한다)는 품질평가원장에게 각각 다음 각호의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1. 소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2. 종돈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3.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하여야한다. 1. 출생·폐사 신고: 출생·폐사한 날부터 5
의 방법·절차·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줄생·폐사 신고: 줄생·폐사한 날부터 5 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만, 종돈의 폐사는 14일 이내(공휴일과 토
		요일은 제외한다)
		2. 양도・양수・이동 신고: 양도・양수・이동
		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
		외한다)
		3. 수입ㆍ수출 신고: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③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
		른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5조제1항제6
		호에 따라 가축의 거래내역을 이력관리시스
		템을 통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거래가 완료
		된 다음날(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
		하여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거래가 완료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
		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품질평가원장이 정
		하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및 종돈등록기
		관의 장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가축
		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
		다.
		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
		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
		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및 종돈등록기관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 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체식별번 호를 부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는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귀표등의 부착 등) ① 제6조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해당되는 소 또는종돈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농장경영자, 소 또는 종돈을 수입하는 자등은 소,종돈의 귀표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을 새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표등의 규격과부착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		제8조(귀표등의 부착기한 등) ① 법 제6조제1 항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기한까지 소 또는 종돈에 귀표등을 부착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로서 그 기한 전에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 는 경우에는 그 이동 전에 귀표등을 부착하 여야 한다. 1. 출생 신고된 소의 경우: 출생 신고 후 30 일(육우의 경우는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 일은 제외한다) 2. 등록된 종돈의 경우: 종돈 등록 후 7일 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3. 수입 신고된 소 또는 종돈의 경우: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② 출생 신고된 소의 농장경영자가 고령(高齡) 등으로 귀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귀표등의 부착을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육우의 경우는 7일, 다음 각 호의사육지역에서는 90일) 이내에 귀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1.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제외한다) 2. 소를 방목하여 사육하는 소 방목 사육지③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표등의규격・부착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돼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생략할 수 있다. 1. 도축을 위하여 출하하는 돼지 2.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돼지 ② 농장경영자는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돼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및 관리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2. 출생 후 3개월 이내의 돼지인 경우. 다만, 페인트를 이용하는 등 임시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기 한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한다.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 시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돼지의 사육현황 신고) ①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경영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별지 제5호서식의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서를해당월의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돈을 사육하는 농장경영자는 종돈등록기관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9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소, 종돈에 부착된 귀표등 또는 돼지의 농장식별번호표시를 위조·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훼손하여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양도·양수하거나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여서는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의 예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 2.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된 경우	

기호 미 호사묘 이러고니에 가는 병로	기준 미 중사묘 이러고기에 가진 병로 비행력	기호 미 호사묘 이러자기에 자한 병로 비행기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		
란한 소나 종돈		
2.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돼		
지(종돈은 제외한다)		
 제2절 도축단계의 이력관리		
제10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도축금지) ①		제11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처리 등) ① 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
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축업자"라		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		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가축을 도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		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귀표등이
등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떨어지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1. 귀표등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 또는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돼지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득이하다
2. 귀표등 또는 농장식별번호 표시가 훼손되		고 인정하는 경우
어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한 이력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
관리대상가축		의 신고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
3.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		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 종돈 또는 같은		따른다.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사육시		
설에서 출하한 돼지		
② 도축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력		
관리대상가축이 도축 의뢰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의		
검사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도축 등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 ①		제12조(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 ① 「축산
도축업자가 이력관리대상가축을 도축하거나		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
경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축업자"라 한다)는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돼지를 도축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도축 또는
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경매가 완료된 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의 사유
돼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이력번호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		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
보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③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② 도축업자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이력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하		번호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축산물 위생
는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그 국내산이력축산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축검사신
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이력번호		청서를 작성할 때 귀표등의 부착, 개체식별번
를 기재한 도축검사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호 또는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및 가축및축산
교부하여야 한다.		물식별대장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축산법」 제40조에 따라 국내산이력축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등에 관한 세부
산물에 대한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품질평가		적인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사는 이력번호를 기재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		게107/므츠싱키싱 시러비소 바그 기위 드\
서를 해당 축산물의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교		제13조(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
부하여야 한다.		① 도축업자는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⑤ 도축업자는 도축한 이력관리대상가축에게서 얻은 국내산이력축산물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신고방법 및 기한 등과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돼지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돼지 이력번호 발급신청서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이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법제11조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제14조(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등) 법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축업자의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등은 별표 9와
제3절 수입단계의 이력관리		같다.
제12조(이력번호의 신청)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수입업자"라 한다)가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수입신고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한다.		제15조(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 조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수입업자"라 한다)가 법 제 12조제1항에 따라 수입쇠고기에 대한 이력 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이력번호 발급신청서를 수입신고 전까지 이 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이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제13조(이력번호의 부여 및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 에 따라 이력번호가 신청된 수입쇠고기에 대 하여 이력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력번호를 통보받은 축산 물수입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신고 이전에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에 그 이력번 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 방법,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부 착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이력번호의 부여방법,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부착방법 및 관리 등은 별 표 11과 같다.
제14조(수입신고 시 이력번호 표기) ① 축산 물수입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쇠고기의 수입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13조에 따라 부여받은 이력번호를 표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쇠고		

기의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축산물 위생관 리법」에 따라 축산물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할 때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수입유통식별표의 위조·변조 및 훼손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부착된 수입유통식별표를 위조·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이력번호의 식 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수입유통식별표가 부착되어 있	
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쇠고기를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판매 또는 영업 등의 목적으로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소유·관리하는 자(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업자는 제외한다)는 수입유통식별표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6조(거래신고 등) ① 축산물수입업자는 수	. 7조(축산물수입업자의 거래신고 등) ① 축 산물수입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

		T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절차·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이력축산물의 양도·수출의 거래 신고를 하려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 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신 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양도 또는 수출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거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변경신고서 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거래 신고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제4절 유통·판매단계의 이력관리		
제17조(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 ①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식육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라 한다)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	제4조(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법 제 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내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등)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식육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부산물전문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으로 정하는 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 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절차, 기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 중 도축업의 작업장 시설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 접(連接)한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자
- 나. 식육포장처리업자 중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평균(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연간 기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월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신규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규모나사업계획 물량 등을 고려한 연간 예상 평균으로 산정한다)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자
-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판매업자"라 한다)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이하 "기타 식품판매업"이라 한다)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자로서 종업원이 5명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자
- 라. 그 밖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 중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력 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 신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 별지 제10호서 식의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 신고서를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
- 2.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의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 신고서를 검 역본부장에게 제출
- ②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를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품질평가원장에게,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판매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는 다음 각 호의 기한(공휴일과 토요일은 제 외하다)까지 하여야 한다.
- 1. 거래 신고: 거래한 날부터 5일 이내
- 2. 포장처리 신고: 포장처리한 날부터 5일 이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가 되기를 희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에게 신청한 자 2.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나.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중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다.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중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자라.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에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다.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포장처리를 의뢰한 자다. 그 밖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희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 제5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 대상자)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판매 신고: 판매한 날부터 5일 이내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서의 제출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하되,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의 내용 및 신고서의 기록・관리에 관한 세 부적인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휴 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를 한 자 중 영업장 면적이 700제곱미터 이상인 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자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집단급식소설치・운영의 신고를 한 자 중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설치・운영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제18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①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지 및 식육의 판매표지판 등에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는 하나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하나의 이력번호를 표시	제6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자 등) ①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범위는 부산물을 제외한 수입산이력축산물로한다.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이력관리대상축산 물을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묶 음번호(다수의 이력번호이거나 이력번호 외 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것 을 말한다)로 표시할 수 있다.		
③ 축산물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이하 "식품접객업자"라 한다)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이하 "집단급식소운영자"라한다)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조리하거나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영업장이나제품, 인터넷 등에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또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수입산이력축산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명세서 등발급 대상자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식육포장처리업자 2. 식육판매업자 3.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4.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이하 "식품접객업자"라 한다) 6.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설치・운영자(이하 "집단급식소운영자"라한다)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의신고를 한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한다) 8. 이력번호를 요구하는 구매자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 12 및 별표 13에 따라 해당 영업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말한다. 제21조(식품접객업자 등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법 제18조제4항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제3장 가축 및 축산물 식별대장의 작성·관리 제19조(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은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였거나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 육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축및축산 물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농장식별번호 2. 개체식별번호 3. 이력번호 4. 출생 또는 수입 연월일 5. 암수 구분 6. 수입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은 원산지(국가 명), 수출국, 수출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 우에는 명칭) 및 수입한 자의 성명·주민등 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 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성명) 7. 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		제22조(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등) ① 법 제19조제1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 및 수입소로 구분한다) 2. 종돈의 종류 3. 소, 종돈의 부모(父母) 개체식별번호 4. 소, 종돈의 폐사 및 미사육(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사육기록을 삭제한 경우를 말한다) 내역 5.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양도·양수·이동 내역 6. 돼지의 종류(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 비육돈으로 구분한다)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도축검사 합격 여부 8. 「축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도체 등급판정 결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농장경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성명) 9. 도축업자의 경매에 따른 거래내역 10.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신고 및 변경 내역 11. 제17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내역 12. 돼지 사육시설의 사육두수(암수 구분) 13. 위해축산물 해당 여부 14. 그 밖에 축산정책상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9.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10.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의 종류 중 한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축등록기관의 장이 정 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0조(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유통식별대장을 작성하고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이력번호 2. 수입연월일 및 유통기한(수입 이전 도축일및 식육포장처리일과 유통기한의 만료일) 3. 원산지(국가명), 수출국, 수출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4. 거래품명 5. 상대국 도축장명(가공장명) 6. 축산물수입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및 대표자 주소·성명) 7. 제16조에 따른 거래 및 변경 내역		제23조(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법 제20조 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하증권번호(船荷證券番號) 2. 수입신고필증번호 3. 검사장소 및 입고일 4. 총 수량 및 무게(부위별 수량 및 무게를 포함한다)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 른 검사결과 및 검사일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제17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내역 9. 위해축산물 해당 여부 10. 그 밖에 축산정책상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식별대장의 관리 및 수정 등) ①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 물식별대장 및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 대장(이하 "식별대장"이라 한다)을 자기디스 크 등 전자적 처리방식(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확실하게 기록하여 둘 수 있는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기록·관리하여야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에 기초하여 식별대장의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관리하여야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별대장을 5년의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한다. ④ 농장경영자, 도축업자 등 관계자는 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정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제7조(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보존기간) 법 제 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24조(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신고 등) ①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수입유통식별대장"이라 한다)의 기록사항에 대하여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품질평가원장2. 수입유통식별대장: 검역본부장2 법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이하 "식별대장"이라한다)의 수정을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제12호서식의 수정요구서에 기록사항의 누락또는 오류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다만소의경우위탁기관을경유하여대한다.다만소의경우위탁기관을경유하여대한다는지를 함된하여다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수입유통식별대장: 검역본부장
제22조(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의 조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별대장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 밖의 사유로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된 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시정 등의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농장경영자, 도축업자 등 관계자는 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제3항에 따라 기록에 대한 수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제4장 지도·감독		
제23조(시정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 리대상가축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 시장개설자, 도축업자, 축산물수입업자, 식육 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 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품접객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보고 및 출입·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법을 시행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제3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해당 가축사육시설,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물건을 검사하게할 수 있으며,검사에필요한 최소량의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법을 시행하기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도축업자,축산물수입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식품접객업자,집단급식소운영자및통신판매업자,식품접객업자,집단급식소운영자및통신판매업자에게필요한보고를하게하거나관계공무원에게해당사무소,사업장,그밖의장소에출입하여관련서류와해당사업 또는 영업과관련된물건		제25조(관계 공무원의 중표)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른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 농장경영자, 가축의 소유자, 이력관리대상 가축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도축업자, 축산물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식육한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 그밖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를 거부·방해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따른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5조(이력정보의 공개 등)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이력관리대상가축과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의 이력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력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	제8조(이력관리대상가축·국내산이력축산물이력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이력관리대상가축과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같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는 등 소비자가 이력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수집된 정보로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방역의 효율성이나 축산산업 발전 등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이력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제 30조에 따라 이력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농장식별번호 소・종돈의 개체식별번호 이력번호 소의 출생연월일 및 종돈의 등록연월일 또는 소・종돈의 수입연월일 가축의 종류 소・종돈의 암수 구분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이하"가축사육시설"이라 한다)의 소재지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한다)의 이름 또는 명칭 도축장의 명칭 및 소재지 도축안월일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도축 검사 결과 「축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결과(돼지고기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장처리 신고를 개체별 및 등급별로 구분하여 한 경우만 해당한다)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이력관리대상가축이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재된 날부터 도축・폐사 또는 수출된 후 3년까지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기준 미 중사묘 이러고니에 고든 뿌르	기준 미 중사묘 이러고기에 고든 병로 나들먹	기호 미 호사묘 이러자기에 자한 버린 나앤그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번호 2. 선하증권번호(船荷證券番號) 3. 원산지(국가명) 4. 품명 5. 수출업체명 6. 수입업체명 및 수입연월일 7. 도축장명(가공장명) 및 도축연월일(가공연월일)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이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수입유통식별대장"이라 한다)에 등재된 날부터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장부의 비치 등) ① 도축업자 또는 식 육포장처리업자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의 도축 처리 및 경매,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 리 또는 거래·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기록 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축산물수입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 기록방법 등은 별표 16과 같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그 기록사항을 수입일부터 2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 등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기록하고, 매입에 관한 기록은 매입한 날부터 1년간, 매출에 관한 기록은 매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는 제1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기록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AT X TEE VITE IN CE BE A166	714 X ALE VIALENT LE BE MOILA
제27조(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력정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신고, 기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 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이력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개 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 통지 등의 업무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 여 처리할 수 있다.		2. 법 제5조에 따른 출생 등의 신고 3. 법 제6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 4. 법 제11조에 따른 돼지의 이력번호 발급신 청 및 통보 5.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신고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발급신 청 7.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 및 통보 8.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 력축산물의 거래신고 9.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장처리 또는 거래신고 10.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신고 11. 법 제21조에 따른 식별대장의 기록·관리 12. 법 제25조에 따른 이력정보의 공개 13. 법 제26조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 14. 법 제29조에 따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구축인증 신청 및 구축인증의 갱신 여부 확인 15. 그 밖에 원활한 이력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의 효율적인관리를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의 효율적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관계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따라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의 절차 등에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절차) ①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협조가 필요한 사유 2. 협조 기간 3. 협조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그 요 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 중)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정관은 농림축산식품부정으로 정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위해축산물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영업장에 대하여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		제28조(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 중) ① 검역본부장(수입산이력축산물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품질평가원장(국내산이력축산물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위해축산 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해축산물 전자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영업자의 신청에 따라 인증의 갱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을 받은 영업장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제24조에 따른 보고및출입·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신청·심사·발급·갱신·표시·취소 등에 대한기준, 방법 및 절차와 인증영업장에 대한 보고 및출입·검사 대상의 제외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로 정하는 정보"란 제1항에 따른 위해축산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위해축산물 정보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이하 이 조에서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증 사본 또는 축산물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2. 최근 2개월간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④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인증 갱신 신청을하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갱신 신청서를 검역본부장 또는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⑤ 검역본부장 또는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⑥ 검역본부장 또는 품질평가원장에 따른 인증 건청을 받았을 때에는 서류검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신청인이 위해축산물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인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 영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2 개월 이상 거래내역을 신고 또는 기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또는 기록한 경우 4. 부도ㆍ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이 법과 관련된 위반으로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6. 제7항에 따른 표시ㆍ광고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인증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⑦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다음 각 호의 표시ㆍ광고를 할 수 있다. 1. 영업장 출업구 등에 인증받은 영업장임을 표시한 간판 부착 2.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상, 인터넷 및 인쇄물을 통한 인증받은 영업장이라
		는 내용의 광고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위암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축산 관련 법인 또는 검정전문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내산이 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 육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	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수입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 대장의 기록, 관리, 기록 수정・삭제 등의 조치, 보존 및 변경신고의 접수 7. 법 제22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에 관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및 수입유통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 8.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소 수입자・수출자, 쇠고기 수입업자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출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시품접객업자・집단급식소운영자・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9.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출입・검사 및 수거(소 수입자・수출자, 쇠고기 수입업자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판매업자・수급업자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단판매업자・기품접객업자・집단급식소운영자・통신판매업자에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10. 질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와 조치 등을 위한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검사 1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수입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 증, 인증신청 접수 및 인증의 갱신 여부 확인(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13. 법 제34조제1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14. 법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소 수입자・수출자, 쇠고기 수입업자와 수입산이력 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식품접객업자・집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단급식소운영자·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15. 제4조제2호바목에 따른 신고 의무자 신청의 접수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출입·검사 및 수거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법 제4조에 따른 농장경영자의 농장식별번 호 발급 신청의 접수, 농장식별번호의 부여·통보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의 양도·양수·이동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3.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의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 5.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돼지 도축 전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의접수 및 이력번호의 부여·통보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중 국내산이력축산물의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의 접수 7. 법 제19조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에 대한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 8. 법 제21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기록・관리,기록 수정・삭제 등의 조치 및 보존 9. 법 제2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부정 요구의 접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 다만, 제6항제5호에 따라축산 관련 법인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10.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거 및 검사(가축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유자, 농장경영자, 가축시장개설자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도축업자, 식육 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및 축산물유 통전문판매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력 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 중, 인증신청 접수 및 인증의 갱신 여부 확인(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13. 제4조제1호라목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의무자 신청의 접수 14. 제10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 대상자에 대한 교육(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과 지역농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또는축산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통보(출생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74 X ALE NACION LE BE MOTT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출생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중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중 「축산법」 제6조에 따라 종돈의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에 위탁할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폐사・양도・양수・이동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접수 2. 법 제6조제1항에 개체식별번호의 부여・통보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육현황 등 신고의접수 4.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기록 5. 법 제2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기록 5. 법 제2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기록 5.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기록 5. 법 제20조제3항・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기록 5. 법 제20조제3항・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수정 요구의접수 기록 6.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영제10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보급 대상자에 대한교육에 관한업무(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가축전염병예방법」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위탁한다. 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단체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의 원활한	제13조(비용의 지원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1조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7조에 따른 귀표등의 부착에 드는 비용 2. 법 제8조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관리에 드는 비용 3. 법 제11조 및 제18조에 따른 이력번호의 표시에 드는 비용 4. 법 제13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표의 부착에 드는 비용 5.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관리등에 드는 비용 6. 법 제26조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보관등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에 드는 비용 7. 법 제27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및 운영등에 드는 비용 8. 법 제29조에 따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의 구축등에 드는 비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유통식별표에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 시한 자 9.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 를 거짓으로 표기하여 신고한 자 10.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 를 위조·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 손하여 이력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11.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2.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시행일:2015.6.28] 제32조제2항제12호의 개정 규정 중 돼지고기에 관한 사항과 식품접객업 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의 이력 번호 게시, 표시, 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장관(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부과한다.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발급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	
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지 아니한 자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	1. 법 제4조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의	
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등을 부착하지 아니	접수, 부여 · 통보, 변경신고 접수에 관한 사	
한 자	무	
5.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돼지에 농장식별번	2. 법 제5조에 따른 출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	
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이동ㆍ수입ㆍ수출ㆍ거래의 신고 및 변경신	
6.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매월 돼지의 사육	고 접수에 관한 사무	
현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3. 법 제6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및	
신고한 자	통보에 관한 사무	
7.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또는 농	4. 법 제11조에 따른 돼지의 이력번호 발급신	
장식별이 곤란한 가축을 양도·양수하거나	청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사무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게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 및	
한 자	통보에 관한 사무	
8.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또는 농	6.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식별이 곤란하거나 가축및축산물식별대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	
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 또는 가	장의 기록・관리 및 변경신고 접수 등에 관	
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	한 사무	
니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한 돼지를 도	7. 법 제22조에 따른 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	
축한 자	및 오류 수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9.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 또는 경매	8. 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정보 조사를 위한 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고나 돼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10.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1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한 자 1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 가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쇠고기를 양도·양수하거나수출한 자 13.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1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양도 또는 수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6.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여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8.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고 및 출입·검사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25조에 따른 이력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 10. 법 제27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에 관한 사무 11. 법 제29조에 따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의 신청 접수, 인증, 인증갱신, 인증취소에 관한 사무 12. 법 제31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13. 법 제35조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무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0.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 시료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1. 제26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정하여 진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시행일:2015.6.28] 제34조제1항제16호, 제34조제1항제17호, 제34조제1항제18호, 제34조제1항제21호의 개정규정 중 돼지고기에 관한 사항과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의 이력번호 게시, 표시, 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		
제35조(위반사실 공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2조제2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금 또는 제34조 제1항제13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 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제17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기준 미 중사묘 이러고니에 가린 버릇	기호 미 호사묘 이러자기에 가한 병로 비행력	기초 미 초사묘 이러고기에 고든 병로 비행그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 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 방법, 내용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천만 명 이상인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 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 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공사업자를 말한 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5조제1 항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합하여 연 2회 이상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농림축산식 품부,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 제1항에 따른 기관의 홈페이지 와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4. 위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등의 명칭 5. 위반 내용 6.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 칙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12호,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및 같은 조 제21호의 개정규정 중 돼지고기에 관한 사항과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의 이력번호 게시, 표시, 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산 돼지고기의 이력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국내산 돼지고기의 이력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한국내산 돼지고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자의 거래신고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2. 제4조제2호라목·마목의 개정규정 3. 제5조의 개정규정 4. 별표 제2호너목부터 러목까지 및 같은 호서목의 개정규정(돼지고기에 관한 사항과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의 이력번호 게시, 표시, 기록, 보관에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중 "③고유번호"를 "⑥이력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4호 중 "축산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여한 고유번호"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장식별번호"로 하며, 같은 란 제6호 중 "⑥·⑧"을 "⑱"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3호서식중 "개체식별번호"를 각각 "이력번호"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중 "도체번호"를 각각 "이력번호"로 한다.
률」의 규정에 따라 한 신고 등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소 및 쇠고기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에 행정기관이 한 행위는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소 및 쇠고기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의소유자등이 한 귀표의 부착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기국 및 국진을 이익한다에 한한 답할 시행당	기국 및 국인을 이익한다에 한인 답할 시청규칙
제4조(농장식별번호의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농장경영자에게 농장식별번호를 정하여이 법 시행일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체식별번호 및 수입유통식별 번호를 표시한 것은 이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따라 이력번호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 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제4호 중 "「소 및 쇠고기 이력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 항"으로 한다. ②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 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경우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법률 제11431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개정) 법률 제11431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23조제5항"을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시행령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사육장 또는 영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 나.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77	위법	반 횟수별	과태료 급	금액
위반행위	근거	1차	2차	3차	4차이상
	법조문	위반	위반	위반	위반
가. 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 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10	20	40	160
나.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10	20	40	160
다.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 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3호	10	20	40	160

		위병	반 횟수별	과태료 급	글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이상 위반
라.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 여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등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4호	10	20	40	160
마.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돼지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5호	10	20	40	160
바.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매월 돼 지의 사육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 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6호	10	20	40	160
사.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한 가축을 양 도·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 육시설에서 이동하게 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7호	20	40	80	320
아.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체식 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하거나 가 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 지 아니한 가축 또는 가축및축산물 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한 돼지를 도축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8호	50	100	200	400
자.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 또 는 경매 신고나 돼지의 이력번호 발 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9호	10	20	40	160
차.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력번 호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0호	10	20	40	160
카.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10	20	40	160
타.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 통식별표가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수입유통식별대 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쇠 고기를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20	40	80	320

	_	위법	반 횟수별	과태료 급	글액
위반행위	근거	1차	2차	3차	4차이상
,, ,, ,, ,, ,, ,, ,, ,, ,, ,, ,, ,, ,,	법조문	위반	위반	위반	위반
파.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이 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10	20	40	160
하.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산 이력축산물의 양도 또는 수출신고 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4호	10	20	40	160
거.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 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	법 제34조 제1항 제15호	10	20	40	160
너.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 하여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 를 하지 않은 자	법 제34조 제1항 제16호	10	20	40	160
더. 법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	법 제34조 제1항 제17호	40	80	160	320
러.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력번 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 하지 않은 자	법 제34조 제1항 제18호	30	60	120	240
머.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 한 자	법 제34조 제1항 제19호	30	60	120	240
버.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 시료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50	100	200	400
서.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거 래내역서 등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 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 록하거나 정하여진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않은 자	법 제34조 제1항 제21호	20	40	80	320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 서식

[별표 1]

수입산이력축산물의 부산물 범위(제3조 관련)

순번	품 명	영문명	비고
1	쇠고기 기타(고기가 붙어 있는 뼈)	Other Beef	
2	쇠고기 기타	Other Beef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소 식도	Beef Esophagus	
4	소 간	Beef Liver	
5	소 갑상선	Beef Thyroid Gland	
6	소 건	Beef Tendon	
7	소 골수	Beef Bone Marrow	
8	소 꼬리	Beef Tail	
9	소 뇌	Beef Brain	
10	소 뇌하수체	Beef Pituitary Body	
11	소 대망막	Beef Omentum	
12	소 머리고기	Beef Head meat	
13	소 목	Beef Neck	
14	소 방광	Beef Bladder	
15	소 비장	Beef Spleen	
16	소 생식기	Beef Reproductive Organ	
17	소 식용 가죽	Beef Edible Skin	
18	소 신장	Beef Kidney	
19	소 심장	Beef Heart	
20	소 위	Beef Tripe	
21	소 유방	Beef Breast	
22	소 입술	Beef Lips	
23	소 자궁	Beef Uterus	
24	염장 소장/ 염수장 소장(케이싱)	Salted/Brined Beef Gut(Casing)	
25	소 장간막	Beef Mesentery	
26	소 족	Beef Feet	
27	소 지방	Beef fat	
28	소 창자	Beef Gut	
29	소 척수	Beef Spinal Cord	
30	소 췌장	Beef Pancreas	
31	소 편도	Beef Tonsil	
32	소 허파	Beef Lung	
33	소 혀	Beef Tongue	
34	소 횡격막	Beef Diaphragm	
35	소 흉선	Beef Thymus	
3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	정한 부위	

[별표 2]

농장식별번호 신청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제5조제4항 관련)

1. 농장식별번호 신청 및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신청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서면으로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여건으로 서면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신청·신고할 수 있다.

2. 신청 내용

2. 1. 0 11 0	
항목	내용
신청인 (농장경영자)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주소(거주지) 라. 전화번호
가축사육시설 정보	가. 사육가축의 종류(소, 돼지) 나. 농장명칭 다. 사육시설 소재지 라. 관리자 성명 및 전화번호 마. GPS좌표 마. 사육개시일 연월일
사육규모	가. 가축의 종류별 사육 두수

3. 농장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방법

- 가. 품질평가원장은 농장식별번호가 신청된 시설에 대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신청자에 게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장식별번호 발급증을 발급(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나. 농장식별번호는 권역코드(1자리)와 일련번호(5자리)로 구성된 6자리로 부여한다.
 - * 권역코드: 서울·인천·경기(1), 강원(2), 충북(3), 세종·대전·충남(4), 전북(5), 광주·전남(6), 대구·경북(7), 부산·울산·경남(8), 제주(9)
- 다. 농장식별번호는 축종에 관계없이 땅(지번)을 중심으로 1개의 번호를 부여한다. 하나의 가축사육시설(농장)에 농장경영자가 여럿인 경우에도 1개의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번의 가축사육시설을 다수의 농장경영자가 물리적으로 분할 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을 받아 다른 농장식별번호 를 부여 할 수 있다.

4. 농장식별번호의 기록·관리

- 가. 품질평가원장은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농장식별번호 발급 및 등록대장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품질평가원장으로 하여금 농장식별번호가 가축사육시설에 정확히 부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다. 품질평가원장은 제1호 단서에 따라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5. 그 밖에 농장식별번호의 신청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기록·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농립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3]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제6조제6항 관련)

1.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가. 소의 출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수입ㆍ수출 신고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의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서를 서면으로 해당 지역의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여건으로 서면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나. 종돈의 출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수입ㆍ수출 신고

제6조제1항에 따른 종돈의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서면으로 종돈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산법」에 따라 종돈의 등록을 위하여 종축등록기관에 제출하는 종돈의 혈통등록·고등등록 신청서 및 번식용씨돼지혈통증명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 서를 대신하여 혈통등록·고등등록 신청서 또는 번식용씨돼지혈통증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리적 여건으로 서면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다.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의 양도・양수・이동 신고

제6조제1항에 따른 돼지의 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서면으로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증명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으며(돼지를 도축하기 위하여 출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지리적 여건으로 서면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의 종류 및 내용

가. 공통 신고사항

- 1) 농장경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대표자 성명)
- 2) 농장경영자의 주민등록번호(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3) 농장경영자의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소)
- 4)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5) 농장식별번호
- 6) 사육시설의 소재지
- 7) 사육개시 연월일
- 나. 출생 신고(소, 종돈만 해당한다)

구 분	소	종돈
신고 내용	 출생 연월일 암수 구분(암, 수, 거세우, 프리마틴) 소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 수입소, 기타) 부의 개체식별번호 모의 개체식별번호 	1) 출생 연월일2) 혈통등록 또는 고등등록, 번식용씨돼지 혈통확인 연월일3) 혈통 또는 고등등록, 번식용씨돼지 혈통확인 증명서 번호4) 암수 구분(암, 수)5) 종돈의 종류[대요크셔(Large Yorkshire), 랜드레이스 (Landrace), 두록(Duroc), 햄프셔(Hampshire), 웰시 (Welsh), 피어트레인(Pietrain), 스포티이드 (Spotted), 버크셔(Berkshire). 재래종], 수입종돈, 번식용씨돼지, 기타6) 부의 개체식별번호7) 모의 개체식별번호

다. 수입 · 수출 신고

- 1) 수입 · 수출 연월일
- 2)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
- 3) 암수 구분(암, 수, 거세, 기타) 및 마리 수
- 4) 소 또는 종돈의 종류
- 5) 원산지(국가명)
- 라. 양도・양수・이동(반입・반출) 신고
 - 1) 농장식별번호
 - 2) 개체식별번호
 - 3) 양도・양수・이동(반입・반출) 신고 구분
 - 4) 양도자 · 양수자 성명(사업체인 경우 명칭, 대표자 성명)
 - 5) 주민등록번호(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6) 양도 또는 양수 연월일
 - 7) 돼지의 경우 종류별 마리 수
 - 8) 정확한 양도자·양수자를 모르는 가축거래상인 등의 경우에는 가축거래상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록한다.
 - 9) 도축을 위한 출하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축업자가 도축검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마. 폐사 신고(소. 종돈만 해당한다)
 - 1) 개체식별번호
 - 2) 폐사일
 - 3) 가축의 종류(소, 종돈)
 - 4) 폐사 원인
 - 5) 폐사처리방법
- 바.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
 - 1) 가축시장정보(가축시장명, 소재지,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2) 거래 연월일
 - 3) 개체식별번호(소의 종류, 성별, 출생연월일)
 - 4) 농장식별번호(사육시설 주소)
 - 5) 양도・양수 신고 구분
 - 6) 양도자・양수자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대표자 성명), 연락처
 - 7) 양도자・양수자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8) 정확한 양도자·양수자를 모르는 가축거래상인 등의 경우에는 가축거래상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신고서의 기록 • 관리

제1호에 따라 서면 외의 방법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에 신고 내용을 기록·보관(전자적 서류를 포함한다)하고, 신고인으로부터 신고 기한까지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신고 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다.

4. 그 밖에 출생 등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4]

바에 따른다.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귀표등 부착 방법 등(제7조 및 제8조제3항 관련)

1. 소의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귀표등의 부착 • 관리 방법

	가. 위탁기관의 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출생 또는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하여 개체식별번			
	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1-11 x hadrah ==	나. 출생 신고된 소에는 국가코드(KOR), 바코드 및 농업이미지 엠블렘과 고유의 숫자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포함한 15자리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한다.			
부여방법	다. 수입 신고된 소는 해당 국가에서 부여된 개체식별번호를 사용하되,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개체식별번호와 호환되지 않는 번호체계인 경우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 정하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규격			
	1) 귀표의 크기			
	가) 일반형: (가로) 55mm~70mm, (세로) 65mm~85mm			
	나) 단추형: 원형으로 지름 25mm~35mm			
	2) 글자 색상: 검은색			
	3) 바탕 색상: 밝은 노란색			
	나. 재부착용 귀표의 규격			
귀표등의	1) 크기: (가로) 55mm~70mm, (세]로) 65mm~85mm			
규격	2) 농업 CI, KOR, 관리번호 인쇄			
	다. 귀표의 모양			
	일반형 단추형 재부착용			
	0070 0070 3393 1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귀표등의 규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 소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는 귀표를 소의 귀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한다.			
귀표등의	나. 귀표는 소의 오른쪽 귀에 일반형을, 왼쪽 귀에 단추형을 각각 부착한다.			
 부착·표시	다. 게 없는 기형이거나 농촌관광 또는 학술연구 등으로 사육되어 귀표의 부착이 곤란한 경			
방법	우에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목줄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가. 검역본부장 또는 위탁기관의 장은 귀표를 수령하여 배부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귀표 수령·배부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귀표등의	나. 검역본부장 또는 위탁기관의 장은 귀표 훼손·탈락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별지 제19호			
관리 등	서식에 따른 귀표 훼손·탈락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귀표의 구매·공급, 부착방법 교육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그 밖에 개최	에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및 귀표등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에 레 크 린				

2.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귀표등의 부착・관리 방법

	가.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출생 또는 수입 신고된 종돈에 대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
	여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출생 신고 또는 수입 신고된 종돈에는 국가코드(KOR), 바코드 및 농업이미지 엠
개체식별번호의	블렘과 농장식별번호(6자리), 개체관리번호(6자리)로 구성된 15자리의 개체식별
구성	번호를 부여한다.
	다. 수입 신고된 종돈은 해당 국가에서 부여된 개체식별번호를 사용하되,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개체식별번호와 호환되지 않는 번호체계인 경우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정하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귀표의 규격
	1) 귀표등의 크기
	가) 일반형: (가로) 25mm~55mm, (세로) 45mm~70mm
	나) 단추형: 원형으로 지름 25mm~35mm
	다) 재부착용: 일반형으로 (가로) 25mm~55mm, (세로) 45mm~70mm
	2) 귀표등의 글자 색상: 검은색
	3) 귀표등의 바탕 색상: 밝은 노란색을 기본으로 하되, 종돈의 종류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귀표등의	기 쓰기. 4) 귀표등의 표시사항: KOR, 바코드 및 농업이미지 엠블렘, 개체식별번호, 기타
규격	4) 기효장의 효계자장· KOK, 미고는 옷 중립하다시 꿈들림, 게세막들인모, 기다 종돈장의 로고 등
	아는 하여 모표 아 나. 귀표는 일반형, 단추형을 각각 양쪽 귀에 부착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한 쪽 귀에
	사용하여 부착할 수 있다.
	다. 이각(耳殼, 돼지의 귀를 절개하여 절개된 모양 등 에 따라 숫자로 표현되는 방식을
	막. 이식(平成, 게시의 기를 실계하여 설계된 도중 중 에 따다 깃자로 표현되는 중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격은 종돈등록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라. 입묵(入墨, 돼지 귀에 문신을 찍어 표시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되는
	다. 납국(八靈, 돼지 위에 표선들 적이 표시 중부를 필인다. 이라 끝다)으로 표시되는 숫자 하나의 크기 규격은 (가로)5mm (세로)7mm 이내로 한다.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귀표등의 규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는 귀표등을 종돈의 귀에 부착 또는 표시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를 위한 귀표등에는 귀표, 이각, 입묵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각 또는 입묵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 KOR, 기타 종돈장의 로고
	등을 생략할 수 있다.
	ㅇᆯ ㅇㄱᆯ ㄱ ㅆㄱ. 다. 귀에 이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종돈등록기관이 정하는 규격에 따라 표시하되,
귀표등의 부착 • 표시 방법	이각번호에 해당하는 개체식별번호를 종축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에 기록하
	여야 한다.
	어야 있다. 라. 귀에 입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장식별번호(6자리), 개체관리번호(6자리)를 귀에
	표시할 수 있다.
	마. 귀에 입묵과 이각을 병행하여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바. 귀 없는 기형이거나 농촌관광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육되어 귀표등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목줄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해당 시장
그 반에 개체	·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및 귀표등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그=한도의 가격하면 못 기표하여 비석 하게 한번 사용은 하십폭간격품구성단의 성이는

바에 따른다.

[별표 5]

돼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제9조제2항 관련)

1. 농장식별 번호 표시 방법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 등은 별표 2에 따라 부여된 농장식별번호(6자리)를 돼지를 출하하거나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기 전에 돼지의 오른쪽 엉덩이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농장식별번호를 돼지에 표시할 수 있는 기구(이하 "농장식별표시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돼지가 입는 상해 또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표시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등을 돼지에 부착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이동하는 모든 돼지에 농장식별번호를 각각 표시하여야 하되, 하나의 차량에 농장식별번호가 같은 농장의 돼지만을 실어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하돼지의 일부(60 두 이하의 경우 10두 이상 표시, 61두 이상인 경우 전체 출하돼지의 20퍼센트 이상 표시)만 표시할 수 있다.
2. 농장식별 표시기 의 규격 등	 가. 농장식별표시기 규격 1) 숫자판 크기: (가로) 20mm~25mm이내, (세로) 80mm~102mm이내 2) 사용 잉크: 식용색소 적색 3호 3) 표시기 모양(예) 나. 농장식별번호 표시 귀표등의 규격
3. 농장식별 표시기 등 의 관리 등	가.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 등은 농장식별번호가 적절하게 돼지에 표시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농장식별표시기는 질병 등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5 바에 따른 t	대지의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다.

[별표 6]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의 방법 등(제10조제2항 관련)

1.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농장경영자는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돼지 사육현황 신고서로 품질평가 원장(종돈의 경우 종돈등록기관의 장을 말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증명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증명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지리적 여건으로 서면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 내용

항목	내용
공통 신고사항	가. 경영자의 성명(사업체인 경우 사업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농장식별번호 라. 경영자의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소) 마.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바. 사육시설의 소재지 사. 사육개시 연월일
사육현황	가. 돼지의 종류(일반종, 재래종, 멧돼지) 나. 돼지(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사육단계별 세부 내역(두수) 다. 사육 총 두수

3. 사육현황 변경 시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인 등은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4항 및 이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기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제12호서식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기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되, 지리적 여건으로 서면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처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4. 기록·관리

제1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품질평가원장 또는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의 방법과 절차,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7]

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제12조제3항 관련)

신고의 종류	신고 내용
	1. 검사신청인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업소명 라. 주소(전화번호)
	2. 도축 의뢰인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업소명 라. 주소(전화번호)
	3. 도축 목적
	4. 출하 농장
	가. 성명(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장경영자 성명 등을 말한다)
	나.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주소
	라. 농장식별번호
도축처리 결과	5. 접수번호
	6. 가축의 종류(소, 돼지)
	7. 소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 수입소)
	8. 성별(소, 종돈만 해당)
	9. 연령(소만 해당)
	10. 생체량
	11. 총수량
	12. 도체중량
	13. 개체식별번호(소, 종돈만 해당)
	14. 이력번호
	15. 수입가축의 경우
	가. 수출국가명 나. 검역계류장 도착일
	16. 신청 연월일
	1. 개체식별번호(소만 해당) 2. 이력번호(돼지만 해당)
	2. 이익천호(돼지선 애용) 3. 접수번호(도체순번)
	3. 십기천오(소세천천) 4. 지육·부분육 중량
	5. 자체 도축이 아닌 지육・부분육의 경우
	가. 지육・부분육 구분
 경매 결과	나. 반입처 정보(업소·도축장명,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등)
0.11 5-1	6. 중도매인
	o. ㅎㅗㅠᆫ 가. 성명 나. 생년월일(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업소명 라. 주소(전화번호)
	7. 경매 거래·반출처
	가. 성명 나. 생년월일(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업소명 라. 주소(전화번호)
그 밖에 도출처	리 결과 및 경매 결과 신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I - !! " ^ !	7 E A 0 E U - 1 110, 0 E A E 0 E - U 0 U 0 E 0 U 0

[별표 8]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이력번호 부여 방법 등(제13조제2항 관련)

1.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내용

신청인	가.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또는 명칭) 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주소(연락처)
도축 의뢰인	가.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또는 명칭) 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주소(연락처)
출하 농장정보	가. 농장명 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또는 명칭) 다.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라. 농장식별번호 마. 주소(GPS좌표, 연락처)
출하 돼지정보	가. 출하 두수

2. 이력번호 발급신청서의 기록 • 관리

품질평가원장은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3. 이력번호 부여 방법

- 가. 이력번호는 축종코드 1자리, 농장식별번호 6자리, 일련(출하순번)번호 5자리 등 총 12자리 숫자로 구성하여 부여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이력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나. 품질평가원장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이력번호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등 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 4. 그 밖에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이력번호 부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따른다.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제14조 관련)

	가.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한 경우에는 그 소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해당 도체
	에 동일하게 이력번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도축업자는 돼지를 도축한 경우에는 해당 돼지의 농장식별번호가 포함된 이
	력번호를 해당 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도체에 표시하는 이력번호는 이동 또는 환경의 변화로 훼손・탈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표시라벨 등은 위생상 위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돼지의 경우 이력번호 표시라벨을 대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력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력번호를 표시
	하는 잉크 등은 식품위생상 위해가 없는 것이어야 하며, 인쇄용 색소는
1. 이력번호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규격에 따른다.
표시 방법	마. 라목에 따른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도축장은 이력번호가
	정확히 표시되는지를 정기적(가급적 매일)으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바. 도체를 2분체 또는 4분체로 분할하여 이동하는 경우 분할된 도체마다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사. 도축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귀표등이 떨어지거나 훼손
	되어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가축의 도축을 의
	뢰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도 소속 검사관에 신고하고, 검사관의 확인
	을 받아 별지 제20호서식의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및 농장식별번호 발급
	확인대장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개체식별식별
	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가 포함된 이력번호를 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가.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소의 시설이 직접 연결되어 도축 후 곧바로 식육
	포장처리업소로 도체가 이동되는 경우에는 그 이동 시 이력번호 대신 임
	의의 도축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포장처리
2.이력번호 관리등	를 마치고 시설 밖으로 도체를 반출할 때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도축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이력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다시 표시하여야 한다.
	다. 도축업자는 도축 후 지체 없이 귀표를 수거하여 소각, 파쇄 등의 방법으
	로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귀표가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여	기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별표 10]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방법·절차 등(제15조제2항 관련)

1.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내용

신청인	가. 성명(상호 또는 법인명) 나. 주민등록번호(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소재지 라. 전화번호 마. 영업신고(허가)번호 바. 팩스번호 사. 업종
검사(반입)장소	가. 검사(반입) 장소명
수입품목	가. 한글명 나. 영문명 다. 포장수량 라. 순무게(kg, t)
부위	가. 부위명 나. 부위별 수량 다. 부위별 무게(kg, t)
수입내역	가. 화물관리번호 나. 선하증권번호(B/L No.) 다. 생산국

2. 신청서의 기록 · 관리

검역본부장은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이력번호 발급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1]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제16조 관련)

1. 이력번호의 부여·통보 방법	 가. 이력번호는 수입업자코드 4자리, 원산지코드 2자리, 수입유통식별일 련번호 5자리, 체크코드 1자리 등 총 12자리 코드로 구성하여 부여 한다. 나. 검역본부장은 이력번호를 부여한 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수입유통식 별표의 표시 사항과 규격	수입유통식별표에는 이력번호가 표시되어야 하고, 이력번호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활자의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수입유통식 별표의 부착 방법	 가. 수입유통식별표는 수출지 라벨이 부착된 면에 부착할 수 있으나, 원래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날짜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표시 사항을 가려서는 안 된다. 나.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였으나, 전산장애 또는 사용자의 실수 등으로 수입유통식별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의 승인을받아 그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라 한글표시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포함하여 부착해야 한다. 		
4. 수입유통식 별표의 관리	검역본부장은 축산물수입업자가 수입유통식별표를 적합하게 표시하여 부착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5. 그 밖에 이력번호의 부여방법 및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2]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 포장처리 또는 판매 신고의 내용 등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제6항 관련)

1. 거래 신고 내용

항목	내 용			
신고인	가. 성명(법인명) 나. 대표자 다.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라. 영업허가(신고)번호 마. 주소 바. 연락처			
출고(입고)처	가. 영업장 명칭(상호) 나. 영업허가(신고)번호 다.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거래처 (양도・양수)	가. 성명(법인명) 나. 대표자 다.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라. 영업허가(신고)번호 마. 주소 바. 연락처			
거래내역 (양도·양수)	가. 거래일 나. 이력(묶음)번호 다. 제품명(부위명) 라. 수량 마. 무게 바. 도체순번(도체번호)			

2. 포장처리 신고 내용(식육포장처리업자만 해당한다)

- 가. 업체명(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나. 전화번호
- 다. 소재지
- 라. 포장처리일
- 마. 이력(묶음)번호
- 바. 원료 또는 부위명
- 사. 무게(kg, t)
- 아. 매입·반입처(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 바. 의뢰업체명(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3. 판매 신고 내용(수입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의 경우)

항목	내용			
신고인	가. 성명(법인명) 나. 대표자 다.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라. 주소 마. 연락처			
출고처	가. 영업장 명칭(상호) 나.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판매처(양도)	가. 성명(법인명) 나. 대표자 다.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라. 주소 마. 연락처			
판매내역(양도)	가. 판매일 나. 이력(묶음)번호 다. 제품명(부위명) 라. 수량 마. 무게			

4. 신고서의 기록·관리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를 받은 경우 검역본부장 또는 품질평가원장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5. 그 밖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 포장처리 또는 판매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3]

<u>식육포장처리업자 · 식육판매업자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 축산물유통전문판매</u> 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1항 관련)

1. 국내산이력축산물

구분	식육포장처리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식육판매업자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가. 도체 또는 포장처리된 부분육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확인한 후, 축산물을 재포장하거나 식육판매업소로 판매 등 이동을 할 경우 동일한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돼지고기를 포장처리할 경우 농장 간 혼입이 없도록 이력번호 단위로 구분・가공하여야 하며, 등외등급은 별도로 구분하여 포장처리하여야 한다. 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포장육의 이력번호 표시는 최소 단위의 용기・포장에 대하여 동일한 이력번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식육판매업자는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국내산이력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포장육 등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확인한 후 식육판매 표시판 등에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마. 이력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국내산이력축산물을 하나로 포장할 경우 묶음 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바. 이력번호는 국가코드(KOR)를 제외한 12자리로 표시한다.
이력번호의 관리	 가. 표시된 이력번호는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며, 이력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시 표시하여야 한다. 나. 거래·판매 후 남은 국내산이력축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방법과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식육판매업자가 식육판매 표지판 또는 라벨 등을 이용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바에 따른다.

2. 수입산이력축산물

구분	식육포장처리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판매업자 •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경우에는 해당 영업장에 입고된 수입산 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와 같은 이력번호 를 포장육 등에 표시해야 한다. 나. 이력번호의 표시는 소비자에게 판매하 는 포장육의 최소 단위의 용기·포장에 하여야 한다.	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진열대에 진열하 거나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장에 입고된 수입산 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와 같은 이력번 호를 식육판매 표지판 또는 비닐 포장 등에 표시해야 한다. 나. 이력번호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수입 산이력축산물을 하나의 묶음번호로 표 시할 수 있다. 다.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진열하여 판매하 는 경우 식별하기 쉽도록 식육 판매표 시판을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전면 에 설치해야 한다. 라. 수입산이력축산물을 보관하는 경우 이 력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해야 한다.			
이력번호의 관리		가. 표시된 이력번호는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밖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방법과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식육판매업자가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라벨 등을 이용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묶음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2항 관련)

1. 국내산이력축산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폭내산이덕	1402						
묶음번호의 표시방법	 가.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판매업자가 여러 개의 다른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 처리・판매할 경우 이력번호를 전부 표시하거나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한 후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나.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등급표시 의무 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등은같은 등급으로 포장한 경우에만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여러 개의 다른 이력번호를 하나의 포장지로 묶은 경우 소포장지마다 해당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소의 종류가 같을 때에만 묶음번호를구성할 수 있다. 마. 묶음번호를 구성한 이력번호는 다시 묶음번호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묶음번호 구성내역에 대하여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전산신고를 하는 돼지고기의 경우한 번 더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다. 바. 돼지고기의 묶음번호 가공 시 성별, 등급별로 묶음번호를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 						
묶음번호의 관리	 가.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쇠고기의 개체는 20마리 이하로 한다. 다만, 여러 마리의 쇠고기를 혼합하여 포장하는 갈비, 세절육, 분쇄육 등은 50마리 이하로 구성할수 있다. 나.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돼지고기의 이력번호는 30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는 구매자 등이 요청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라.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산신고 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식육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인터넷 등으로 묶음번호를 조회하여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묶음 						
변호 구성내역서를 전산신고 하여야 한다. 가. 묶음번호는 아래 구성체계와 같이 L을 포함한 15자리 문자·숫자로 표시하여 야 한다. 다만, 전자저울 등에서 위 방식으로 표현이 어려운 경우 로트(lot 또는 L)를 포함한 연월일과 일련번호의 조합 또는 연월일, 일련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조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나. 묶음번호 구성체계 무용과정코드 구분코드 묶음날짜코드 영업자코드 일련번호 길이 1 1 6 4 3 타입 영문자(L) 숫자 숫자 숫자 숫자 숫자 1) 묶음고정코드는 영문자 'L'을 표기한다. 2) 구분코드는 쇠고기는 '0'으로 하고, 돼지고기는 '1'로 표기한다. 3) 묶음날짜는 연도 2자리, 월 2자리로 표기한다. 4) 영업자코드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가)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산신고 대상 영업자의 경우: 이력관리시스템으로 부여 받은 영업장의 고유번호를 사용한다. 나)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산신고 대상 영업자가 아닌 경우: 세무서에 부여 받은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숫자 중 끝에서 마지막 한 자리 숫자를 제외한 4자리 숫자를 사용한다. 5) 일련번호는 묶음상품의 날짜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부여한다.							
그 밖에 묶음번	그 밖에 묶음번호의 표시 및 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2. 수입산이력축산물

가.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 업자가 여러 개의 다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 처리 · 판매할 경우 이 력번호를 전부 표시하거나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 묶음번호의 한 후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표시방법 나. 이력번호가 다른 여러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하나의 포장지로 묶은 경우 소포장지 마다 해당 이력번호 전부 또는 묶음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다. 원산지가 같은 수입산이력축산물만 묶음번호로 구성할 수 있다. 가.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는 5개 이하로 한다. 나. 묶음번호로 구성된 수입 쇠고기를 이용하여 다시 묶음번호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 묶음번호의 다.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 관리 업자는 구매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가. 묶음번호는 아래 구성체계와 같이 24자리 문자 또는 숫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수기로 식육판매 표지판 등에 표기할 경우에는 묶음번호 표시는 ILot를 포함한 묶음날짜와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I 는 수입을 의미한다). 나. 묶음번호 구성체계 기관코드 구분코드 영업자코드 영업장코드 일련번호 묶음날짜 길이 1 2 10 3 6 타입 영문자 숫자 숫자 숫자 숫자 숫자 묶음번호의 사업자등록번 코드 변동 변동 변동 Α 41 호 구성체계 1) 구분코드는 고정값으로 '41'을 표기한다. 2) 영업자코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의 숫자만 표기한다. 3) 영업장코드는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부여하여 활용하며, 단일 영업장인 경우 "000"으로 표기한다. 4) 묶음날짜는 연도 2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로 표기한다. 5) 일련번호는 묶음상품의 날짜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부여 한다.

그 밖에 묶음번호의 표시 및 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집단급식소운영자·통신판매업자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방법(제21조 관련)

1. 영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

- 가. 수입산이력축산물(부산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조리·판매하려는 경우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에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게시·표시하여야 한다.
 - 1) 메뉴판 또는 메뉴게시판
 - 2) 거래명세서 또는 거래영수증
 - 3) 수입신고필증
 - 4)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 출력물
 - 5) 별도 게시판 또는 푯말
 - 6) 인터넷 홈페이지(해당 영업장 정보가 포함된 홈페이지)
 -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품 표시사항을 포함한 스티커 또는 라벨
- 나. 제1호가목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 표시를 메뉴판, 메뉴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의 방법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장소 중 한 곳 이상에 비치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계산대
 - 2) 출입문 주변
 - 3)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
- 다. 이력번호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을 공급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7일(기준일 표기) 이내에 모두 게시하고,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소진한 시점까지 게시하도록 한다. 다만, 영업자가 공급받은 수입산이력축산물 모두를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음식으로 판매·제공할 때 게시할 수 있다.
- 라. 이력번호가 다른 2개 이상의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영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탁급식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 · 운영자

- 가.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수입산이력축산물을 급식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제1호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급식일을 기준으로 7일 (기준일 표기) 이내에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학교 홈페이지 등 학교명이 포함된 곳만 해당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력번호 게시를 대신할 수 있다.
- 나. 이력번호가 다른 2개 이상의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력번호를 표시 하여야 한다.

3. 영 제5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 가.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통하여 이력번호 표시제품임을 표시·고지하고 배송 상품에 해당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나. 인터넷, TV, 잡지 등 통신판매 수단의 특성상 문자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정보 주위에 자막, 별도의 칸 등을 이용하여 '이력번호 표시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1) 표시 시기: 전자매체의 경우 상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표시
 - 2) 표시 문구(예시): 이력번호 표시제품임. 이력번호는 배송된 상품에 표시됨.
- 다. 전화 등 통신판매 수단의 특성상 문자로 정보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력번호 표시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반복적으로 말로 설명하여야 한다.
 - 1) 설명 방법: 말의 속도 및 소리의 크기는 상품 설명과 동일하게 하고, 반복적(1회당 2번 이상)으로 설명
 - 2) 설명 문구(예시): 본 상품은 수입쇠고기 이력번호가 표시된 제품이며, 이력번호는 배송되는 상품에 표시됩니다.
- 4. 그 밖에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게시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6]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제26조 관련)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록 • 관리

가. 도축업자

도축업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축처리 및 경매 결과를 장부 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날짜별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나. 식육포장처리업자

- 1) 영 제4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포장 처리한 경우 별지 제 11호서식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포장처리일별로 기록·관리해야한다.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이력축산물은 별지 제10호서식, 수입산이력축산물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일별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 2) 영 제4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 외의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포장 처리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실적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판매・반출 실적을 자체적으로 장부에 날짜별로 기록・관리하거나 이력관리스템을 통하여 기록・관리해야한다. 다만, 포장처리 및 판매・반출 실적의 기록・관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라 원료수불, 생산・작업 및 거래내역 등에 관한 서류의 작성(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재사항 모두를 기록・관리한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다
- 3)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에게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판매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판매일별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록 · 관리

축산물수입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이력번호를 거래일 별로 구분하여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관리해야 한다.

3.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기록 • 관리

- 가. 영 제4조에 따른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매입한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이력번호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날짜별로 기록·관리하고,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반출한 경우에는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판매·반출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관리해야한다.
- 나. 영 제4조에 따른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외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 문판매업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매입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이력번호를 자체적으로 기록・관리하거나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관리하고,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반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판매・반출 실적을 자체적으로 장부에 거래일별로 기록・관리하거나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반출 실적의 기록・관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거래내역서의 작성(별지 제22호서식의 기재사항 모두 기록・관리한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다.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에게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판매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판매일별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한니다

접수번호	접수번호 김		접수일자	,	712 X 11 Y			j	허리기간	5일		
시원이	① 성당	명 명					②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신청인	③ 주:	소(거주지	l)				④ 전화번 <u>3</u>	호				
<u></u> ⑤ 사육	가축의	종류	□소	색대지□	·육 □위	탁사육	러시대□	위 위탁사물	육 🗆 방독	라 □ 종축	장	
및 사육방식		□돼지	시자□	육 □위	원사	원시대□	+위탁사육	□종돈	장 □기타			
		농장 명	칭:									
⑥ 가축사육시설	사육시설	설 소재지:	느재지 :									
	관리자	성명:				(건	전화번호:)			
가죽시다	자일	GPS좌표	:									
		사육개기	시 연월일:									
		:	소		돼지							
		종류	두수	종류			세부	내역(두	=수)			
@ 11 9	> – –	소 계		σπ	소계	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① 사원	유규모	한 우		일반종								
		육우		재래종								
	젖 소		멧돼지									
	「다운 만 소니면 이렇게이네. 기취 비를 느껴요~제나한 만 같은 데 나왔다면 제도로 제도로 제소를 받아 되었다.											

'가죽 및 죽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일 월

신청인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전화번호

유 의 사 항

- 1. ①~④란은 신청인에 대한 기초정보를 기재하되, 위탁사육인 경우 위탁자의 기초정보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2. ⑤란에는 사육가축의 종류 및 신청인이 자가・위탁사육을 분명히 하고, 종축장 또는 종돈장일 경우 같이 🛈 표시합니다.
- 3. ⑥란에는 신청인이 소유 및 관리하는 가축사육시설에 기초정보를 기재합니다.
- 4. 사육규모는 ⑦란에 소 또는 돼지의 사육두수를 기재합니다. 돼지의 경우 항목별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일반종: 우리나라 고유의 재래종을 제외한 서양종 및 모든 교잡종

*서양종: 대요크셔(Large Yorkshire), 랜드레이스(Landrace), 두록(Duroc), 햄프셔(Hampshire), 웰시(Welsh), 피어트레인(Pietrain), 스포티이드(Spotted), 버크셔(Berkshire)

- 나. 재래종(Korean native pig):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래종 고유의 외모기준을 유지하는 돼지이어야 하고, 실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다. 멧돼지: 가축화되어 집에서 사육하는 멧돼지
- 라. 모돈: 자돈을 생산하고 있는 번식용씨돼지 마리수
 - . 후보돈: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 중인 후보돈 마리수

바. 웅돈: 번식에 이 사. 자돈(2개월 미만			_			
				처 리 절 차		
	1		1			
신청서 작성	→	접 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농장식별번호 및 발급증 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축산물품질평기원)		처 리 기 관 (축산물품질평기원)		발 급 기 관 (축신물품질평기원)
					210m	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소, 종돈의 출생]소, 종돈의 폐사]양도·양수·이동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수입·수출]가축시장의 거래내역

[]는 해당	<u></u> 발에 √ 표시하며, ㅂ	바탕색이 어두운 ヒ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농장식별번호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및 허가(신고	.)번호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번	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U-1 -7-	l i l e l			
			건성 	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변경 사ㅠ							
	·산물 이력관리 신고사항의 변			및 같은 법 시형	행규칙 제5조제3	3항, 제6조제5	항에 따라 신
						년	월 일
			ļ	<u> </u>		_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벼걸사하은 주며	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1 1:4.11	60.105 00	e i we nill			210mm V	007mm/01HLQTI	없음 60g/m²(재활용포))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출생·수입·수출 소의 []양도·양수·이동 신고서 []폐사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경영자	① 성명 ③ 법인 명칭 ④ 주소			② 주민등록	번호(사업자 또	는 법인 등록번호)
신고 사항	정보 기축	⑤ 농장식별반⑦ 사육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호: ⑥ 위탁기관	휴대전화번 명	ই:)
	시육시설 정보	⑧ 사육 개시 ⑨ 관리자 성 ⑪ 관리자 주	명	(전화번호	100 관리자 ² 5: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	
2	출생 수입 수출 닌고	12 출생·수입14 암수 구분※ 송아지 개	2. 수 3. 거세 4. 프리마틴	③ 소의 종류 1. 한우 2. ⑤ 부 개체식 모 개체 식별번호 ※ 원산지	젖소 3. ⁵ 클번호 자가 생산 대리모 생신		입소 5. 기타
이동 변	•양수 (반출• 난입) 닌고	1. 양도(반 2. 양수(반 19 양도(반출)			!호 <u></u> 寸호(사업자 또	:는 법인 등 휴대전화번	
폐시	ㅏ 신고	② 개체식별t ② 폐사 원인 ② 폐사처리t	1. 법정가축전염병 살처	② 폐사일분 2. 일반2. 폐기처리		. 사고 , 전화번	4. 기타 호:)
「가· 합니!		<u>산물 이력관리</u> 0	세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조제	1항에 따라 년	위와 같이 신고 _월 일
	. —	열동조합장 등조합장		신고인 대리 신고인 대리 신고인 전	전화번호		선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협동조합 법인(축	합 산 관련 법인	<u>l</u>)	귀하			

()

- 1. 출생・수입・수출신고는 ①~ 란을 적습니다. ①~④란에는 농장경영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⑤~⑪란은 가축사육시설의 정보인 농장식별 번호, 관리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⑬란의 소의 종류 및 ⑭란의 암수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하며, ⑮란은 본인이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적고, ※ 송아지 개체식별번호는 귀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으며, 원산지란은 수입소만 해당합니다. ⑯ 모 개체식별번호는 "자가 생산란"에는 송아지의 모(母)의 개체식별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자가 생산이 아닌 대리모를 통해 생산한 경우, 자가 생산란에는 난소를 제공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적고, "대리모 생산"란에는 실제 출산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적습니다.
- 2. 양도・양수 및 이동(반입・반출) 신고는 ①~⑪란과 ⑪~⑫란을 적습니다. 또한, ⑪란의 양도(반입)・양수(반출)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합니다.
- 3. 폐사신고는 ①~⑪란과 ⑭란을 적고, ⑱란의 폐사 원인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하며, ㉑란의 폐사처리방법은 매몰인 경우 장소를 적고, 폐기(소각, 재활용)인 경우 업체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 4. 이 신고서는 경영자등이 직접 작성하되, 본인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대리인이 작성하고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 5. 전화 및 구술의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서의 해당란에 그 내용을 적어서 보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고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습니다.
- 6. 여러 마리의 출생 등 신고(기존 소의 신고를 포함합니다)를 할 경우 해당 신고 항목을 표시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7. 그 밖의 작성 참고사항
 - 가. 개체식별번호
 - 12자리 기재(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기입 예) KOR 002 123 456 785 ⇒ 002 123 456 785
 - 나. 소의 종류: 해당하는 숫자에 ○표 표시(1.한우, 2.젖소, 3.육우, 4.수입소)
 - 한우: 종축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한우기준에 부합하는 소
 - 젖소: 착유하고 있거나 착유를 위하여 사육중인 소, 젖소에서 암소로 태어난 송아지
 - 육우: 젖소 중 착유한 경험이 없는 암소, 수소, 그 밖의 육용 소
 - 수입소(수입국명): 동물검역관이 수입소로 인정하는 소
 - 다. 부 개체식별번호: 해당 소의 아비 소의 개체식별번호(정액번호를 포함한다)
 - 라. 모 개체식별번호: 해당 소를 분만한 어미 소의 개체식별번호(수정란 이식의 경우 난소를 제공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포함한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출생·수입·수출 종돈 []양도·양수·이동 신고서 []폐사

	시쪽의 신고 :번호	다 그 네 가입 다음 하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접수일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발급일 처리기간
통	경영자 정보	① 성명 ③ 법인 명칭 ④ 주소	②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신 고 사 항	기축 시유시 설 정보	⑤ 농장식별번호 ⑥ 사육 소재지 ⑦ 사육 개시 연월일 ⑧ 관리자 성명 ⑩ 관리자 주소	(: 휴대전화번호:) ⑨ 관리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2	출생 수입	(1) 개체식별번호 (1) 혈통·고등 등록일(등록번호): 2. 번식용씨돼지 혈통 확인일(확인번호):	(ⓑ 종돈의 종류(1.순종, 2.수입종돈, 3.번식용씨돼지, 4.기타) (Large Yorkshire), □랜드레이스(Landrace), □두록 (Duroc), □햄프셔(Hampshire), □웰시(Welsh), □피어트레인 (Pietrain), □스포티이드(Spotted), □버크셔(Berkshire) □재래종
	수출 <u>リ</u> 고	 ③ 출생(수입・수출) 연월일 ※ 수입 또는 수출 원산지(국가명) ⑩ 암수 1. 암 (두) 구분 2. 수 (두) 	부 개체식별번호 ① 모 개체식별번호
링이	E·양수 (빈입· 변출)	(8) 양도(반출)・양수(반입) 구분 1. 양도(두) 2. 양수(두) (2) 양도(반입)・양수(반출) 연월일 및 장소 (2) 양도자(반입자)・양수자(반출자) 성명(상호)	 ⑨ 개체식별번호 ② 농장식별번호 ②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신고	②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폐스	나 신고	② 폐사 원인 1. 법정가축전염병 살쳐) 폐사일 분 2. 일반질병 3. 사고 4. 기타 2. 폐기처리(업체명: ,전화번호:)
<i>기</i> 합니[·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2	조도드		년 월 일 !고인 (또는 인) H리 신고인 (서명 또는 인) H리 신고인 전화번호
		1 1 - 1 - 1 - 1	

(

- 1. 출생·수입·수출신고는 ①~ 란을 적습니다. ①~④란에는 농장경영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⑤~⑩란은 가축사육시설의 정보인 농장식별 번호, 관리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⑫란의 혈통·고등 등록일(등록번호) 또는 번식용씨돼지 혈통확인일(확인번호) 적으며, ⑭란의 암 수구분 및 ⑯란의 종돈 종류는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하며, 종돈의 품종을 아는 경우 √를 표시합니다. ⑯~⑪란은 본인이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2. 양도・양수・이동(반입・반출) 신고는 ①~⑩란과 ⑱~⑭란을 적습니다. 또한, ⑱란의 양도(반입)・양수(반출)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합니다.
- 3. 폐사신고는 ①~⑩란과 料란을 적고, ㉑란의 폐사 원인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하며, ಔ란의 폐사처리방법은 매몰인 경우 장소를 적고, 폐기처리(소각, 재활용)인 경우 업체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 4. 이 신고서는 경영자등이 직접 작성하되 본인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대리인이 작성하고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 5. 전화 및 구술의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서의 해당란에 그 내용을 적어서 보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고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습니다.
- 6. 여러 마리의 출생 등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신고 항목을 표시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7. 그 밖의 작성 참고사항
 - 가. 개체식별번호
 - 12자리(농장식별번호 6자리 + 농장별 개체관리번호 6자리)
 - 기입 예) 100001000001
 - 나. 종돈의 종류 구분
 - 대요크셔(Large Yorkshire), 랜드레이스(Landrace), 두록(Duroc), 햄프셔(Hampshire), 웰시(Welsh), 피어트레인(Pietrain), 스포티이 드(Spotted), 버크셔(Berkshire), 재래종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돼지(종돈 제외) []양도·양수·이동 _{돼지} []사육 현황

			_	-11 • •1							
* -	뒤쪽의 신.	고서 작성 유	우의사항을 침	참고하시기 ㅂ	l라며, 바팅		운 난은 신고	.인이 적지 :	않습니다		(앞쪽)
접수	<u></u>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	간 즉시	
		① 성명						② 주민들	<u>로</u> 버ㅎ(人		 등록버ㅎ)
		③ 법인 5	 명치					9 128	70-11		: 071:4/
	경영자	(4) 주소	0 0								
	정보	9 1 -					(:	-	휴대전화번호:)
통		⑤ 농장식	ļ별번호				(· ·		1-112-12-1	
신		⑥ 사육 :	소재지								
고		① 사육 2	개시 연월	일							
사	기축	8 관리지						9 관리기	다 주민·	등록번호	
' 항	사육시	10 관리지									
0	설 정보						(전화빈	<u>년호</u> :	Ē	휴대전화번호:)
	⑪ 농장유형			□ 종돈장		□AI센터		□검정소		□번식전문농정	: -
				□비육전	문농장	□ 일괄사	육농장 []기타			
			(13)				10 세트	부내역(두)			
	사육현황	⑫계(두)	종류	 소계	모돈	후보돈	웅돈	<u> </u>		육성돈	비육돈
사			일반종			1 — _	02		_	101	115
	신고		재래종								
			멧돼지								
		15 구분:					일자:				
양.	도・양	│	• 반줄	□ 양수・빈	·입	-	두수: 총				
	수					□ 모된				웅돈()□	자돈()
0	동(반입						, ,	□ 비육돈	` '		`
	반 <u>출</u>)							시(페인트 식	박상, 표시	시모양 등:)
	, 신고	18 경영지				19) 동상	식별번호:				
	_	20) 사육지	기 수소:						/ -	151015.	,
									(순	전화번호:)
「フ	h축 및 축	축산물 이	력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조	제1항 또	는 제8조제	레2항 및	같은 밭	섭 시행규칙 기	레6조제1항
또	는 제103	조제1항에	따라 위의	와 같이 신.	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또는 인)
		대리 신고인 (서당							(서명 또는 인)		
					대리 신	!고인 연릭	ᅡ처				
	추사도	무진평	가위자	귀하							

- 1. 란은 공통신고사항으로 모든 신고 시에 작성하며, 돼지의 경영자, 관리자에 대한 기초정보를 기재합니다.
- 2. 사육현황 신고는 ⑫~⑭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항목별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일반종: 우리나라 고유의 재래종을 제외한 서양종 및 모든 교잡종
 - *서양종: 대요크셔(Large Yorkshire), 랜드레이스(Landrace), 두록(Duroc), 햄프셔(Hampshire), 웰시(Welsh), 피어트레인 (Pietrain), 스포티이드(Spotted), 버크셔(Berkshire)
 - 나. 재래종(Korean native pig):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래종 고유의 외모기준을 유지하는 돼지이어야 하고, 실 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다. 멧돼지: 가축화되어 집에서 사육하는 멧돼지
 - 라. 모돈: 자돈을 생산하고 있는 번식용씨돼지 마리수
 - 마. 후보돈: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 중인 후보돈 마리수
 - 바. 웅돈: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 중인 숫돼지 마리수
 - 사. 자 돈: 2개월령 미만
 - 아. 육성돈: 2~4개월령 미만
 - 자. 비육돈: 4~6개월령 이상
- 3. 이동신고는 ⑮란에 양도(반입)·양수(반출) 구분의 □에 √를 표시하고, ~⑩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 가. 이동일자: 돼지의 양도(반입) 양수(반출)일자
 - 나. 이동 두수: 양도(반입)·양수(반출) 두수(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구분의 □에 √를 표시하고 두수기록)
 - 다. 경영자명: 신고인 입장에서 이동 전 후 경영자 성명
 - 라. 농장식별번호: 이동 전 후 사육지 농장식별번호
 - 마. 사육지 주소: 이동 전 후 사육지 주소
- 4. 이 신고서는 경영자 등이 직접 작성하되 본인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대리인이 작성하고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 5. 전화 및 구술의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은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서의 해당란에 그 내용을 적어서 보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고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습니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돼지 이력번호 발급신청서

	시쳐시 자서	으이시하으	참고하시기 법	네그니더	비타세이	$\Delta = 0$	1.10	시체이이	저기	아스니티
OLEU	건성시 작성	ㅠ의사망물	심포에게기 년	가다니다.	마음쪽이	어ㅜ군	민근	선정원에	역시	않답니다.

(앞쪽)

		접수일	발급일	발급일		즉시		
	(대표자 5	또는 명칭)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성명(대표자 드	<u> </u>		새녀워인(사)	지 또는 번이	드로버 ㅎ)		
도축	00/91117/1 -	-L O I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의뢰인	주소			연락처				
	농장명			성명(주민등록	번호)			
출하 농장정보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000-	주소	GPS좌표		연락처				
출하	출하 두수							
돼지정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신청서는 도축 출하시 농장식별번호 또는 도축 의뢰인별 단위로 작성합니다.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 발급신청서

아래 및 뒤쪽의	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	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	습니다.		(앞쪽)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주미드로버 6		- 버이 드	<u></u>
				100703		.	7 L' L' /
	주소			연락처			
검역 시행장							
	한글명			영문명			
수입 품목	포장수량			순무게(kg, t)		
			(단위:)			
	부위명						
부위	수량		/-I-I	순무게(kg, t)		
			(단위:)			
	화물관리번호						
수입 내역	선하증권(B/L)번호						
	생산국						
 「가축 및 ·	-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_」	제12조제1형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	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l청인			(서명 :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	
1 1 1 1 1 1	HA LI					없음	3
		유의	사항				

1. 신청서는 수입 당시 선하증권(B/L №)당 품목 단위로 작성합니다.

2. 다수의 부위가 있는 경우 부위명에는 '뒤쪽 참조'라고 적고, 뒤쪽에 부위별 목록을 작성합니다.

부위명 수량(:) 무게(kg, t)

- 1. 수입품목에 다수의 부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각 부위별 수량 및 무게[단위는 kg 또는 t(톤)으로 표시가능]를 적습니다.
- 2. 부위명은 대분할 부위명을 적으나, 소분할 부위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소분할 부위 명칭을 적을 수 있습니다. 국내기준에 맞지 않는 부위의 경우 수출국에서 표시된 대로의 부위 명칭을 적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국내기준에 해당되는 부위명칭이 많이 포함된 부위부터 먼저 적습니다.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기거래 신고서

아래 및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법인명)		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업종					
	영업장의 명칭(상호)		영업허가(신고	1)버ㅎ				
출고처 입고처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법인 등록번호	Ē			
	성명(법인명)		대표자					
거래(판매) 처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래(판매)일							
	7191(L:-1)/2							
거래(판매) 내역	이력번호		제품명(부위명)					
	수량(BOX)		무게(kg, t)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8조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앞쪽)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 1. (출고·입고)처란은 양도(매출)신고의 경우에는 "출고"에, 양수(매입)신고의 경우에는 "입고"에 "O"표를 하고, 수입산이력축산물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의 영업장 명칭(상호) 및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 수입산이력축산물 거래(판매) 신고서는 거래처별로 작성합니다.
- 3. 거래(판매)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뒤쪽의 거래(판매) 목록을 작성합니다.
- 4. 이력번호는 거래 당시 수입 쇠고기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는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첨부합니다.
- 5. 제품명은 수입 축산물의 신고필증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부위별(예: 갈비, 목살, 제4위, 목뼈 등)로 최대한 세부적으로 적습니다.
- 6. 수량 및 무게는 양도한 물량을 박스 갯수와 무게[kg 또는 t(E)] 단위로 적습니다.

(판매)일()	 이력번호	원료 또는 부위명	수량(BOX)	(무게(kg, t)
	이릭단호 	전표 ㅗㄷ ㅜㄲᆼ	T 9 (BOX)	Τ/II(Kg, t)

유의사항

거래(판매)내역이 다수인 경우에 작성하며, 거래일별로 각 이력번호, 원료 또는 부위명, 거래 수량 및 무게[단위는 kg 또는 t(톤)으로 표시 가능]를 적습니다.

수입산이력축산물 []거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는 해당라에 √표시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는 애당단	단에 √ 표시하며, 5	마당색이 어두운 단	는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즉시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호(사업자 또는	= 법인 등록번호	_)	
	농장식별번호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및 허가(신고	.)번호							
이력번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변경	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가축 및 축 경을 신고합 ^니		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	조제3항에 띠	나라 신고사항 변		
						년	월	일	
			신	닌고인			(서명 또는 연	기)	
		귀하							
구비서류	변경사항을 증명	l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	×297mm(일반용	 응지 60g/m²(재활용품	<u>-</u>))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신고서

아래 및 뒤쪽의	아래 및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1				1				
	(법인명)				대표자				
	생년월일(사업	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연락처				
	영업허가(신고))번호							
	주소								
					1				
(출고 • 입고)	영업장의 명칭	!(상호)			영업허가(신고)번호				
처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성명(법인명)				대표자				
7171171	생년월일(사업	자 또는 법인	연락처						
거래처	영업허가(신고))번호							
	주소								
	거래일		도축일		가공	일			
거래내역	이력번호 도축번호				원료 또는 부위명				
	수량(BOX, 마리)				무게(kg, t)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내산이 력축산물의 거래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 1. (출고・입고)처란은 판매・반출신고의 경우에는 "출고"에, 매입・반입신고의 경우에는 "입고"에 "O"표를 하고, 국내산이력축산물이 포 장처리 또는 보관되어 있는 창고의 영업장 명칭(상호) 및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 국내산이력축산물 거래내역 신고서는 거래처별로 작성합니다.
- 3. 거래내역이 다수인 경우에는 뒤쪽의 거래내역 목록을 작성합니다.
- 4. 이력번호는 거래 당시 국내산이력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는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첨부합니다.
- 5. 원료 또는 부위명은 거래한 국내산이력축산물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부위별(예: 갈비, 목살, 제4위, 목뼈 등)로 최대한 세부적으로 적습니다.
- 6. 수량 및 무게는 거래한 물량을 박스 수량과 무게[kg 또는 t(톤)] 단위로 적습니다. 다만, 도체 지육으로 거래하는 경우 도축일, 가공일, 도축번호를 적고, 수량에 두수(마리)와 무게(Kg)로 적습니다.

								()
()	도축일 (연월일)	가공일 (연월일)	이력 번호	도 축 번 호	원료 또는 부위명	수량 (BOX, 마리)	무게 (kg, t)

유의사항

거래내역이 다수인 경우에 작성하며, 거래일별로 각 이력번호, 원료 또는 부위명, 거래 수량(BOX 또는 도체 지육의 경우 마리) 및 무게[단위는 kg 또는 t(톤)으로 표시 가능]를 적습니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

작성 시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소재지

	(2)			(5)	매입 • 반입치	;	(6) 의뢰업체명	
포장 처리일	이력(묶음)번 호	③ 원료 또는 부위명	④ 무게 (kg, t)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전화 번호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전화 번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력관리대 상축산물의 포장처리 내역을 신고합니다.

일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 ① 포장 처리일은 매입 또는 반입된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포장 처리한 날짜를 적습니다.
- ② 이력번호는 매입 당시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 12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은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작성하고 보관(이력관리시스템 전산신고 포함)해야 합니다.
- ③ 원료 또는 부위명은 해당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매입한 도체 또는 부분육의 명칭을 적습니다.
- ④ 무게는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무게(kg 또는 t)를 적습니다.
- ⑤ 매입·반입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구입한 업체의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도축장에서 직접 매입·반입한 경우에는 도축장의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⑥ 의뢰업체명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등에 의하여 의뢰되어 포장처리된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의뢰업체의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및 전화전호를 적습니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접수일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기록사항 []변경신고서 []수입유통식별대장 []수정요구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농장식별번호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및 허가(신고)번호				
개체식별번호	호 또는 이력번	<u></u>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변경(수정)사항				
구	· 분	변경(수정) 전	변경(수정) 후			
버거/스티)	110					
변경(수정) /	^ŀ ਜ਼					
		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 또는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일평가원장					
종돈등록기	기관의 장 구	하				
		유의사항				
1. 가축및축산물	물식별대장의 기록시	하 중 돼지의 사육현황에 관한 기록사항을 변경하려는	= 경우에도 이 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1. 변경신고: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2. 수정요구: 기록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앞쪽)

제 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공무원(조사원)증

사 진

 $3 \text{cm} \times 4 \text{cm}$

성 명 기 관 명

60mm×90mm[보존용지(1종) 120g/m²]

(색상: 연노란색)

(뒤쪽)

조사공무원(조사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제 조사공무원 또는 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직인

-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할 수 없습니다.
-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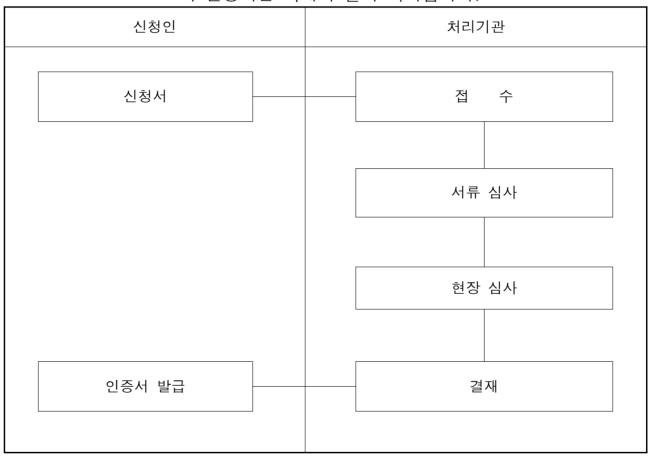
※ 아래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u>.</u> F	20일	
							(앞쪽)	
9	위해축산물	를 판매차단	시스텀	구축인	증(갱신, 변	(경) 선	신청서	
	인증품목							
	①대표자			②사업자등	록번호			
	③주 소							
	④영업장 명칭(상호)			⑤허가증ㆍ☆	 신고필증번호			
신 청	⑥소재지			(전호	·번호:	번호:)		
인 인	⑦영업의		입판매업		□ 식육포정			
_	종류	□ 식육판매		nll Od	□ 식육부산	산물판매	업	
	8 판매차단/ 템 내역	-	통전문판	<u> </u>				
			<u>변</u> 경 전			변경 후		
	9변경사항							
		관리에 관한 법률」 축 인증 영업장 지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8조제	3항에 9	기하여 위해축산	
10 🗆	신규, 🗆 변경	, 🗆 갱신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 전화번호:							
농	言림축산검역	본부장	ュ	하				
켶	·산물품질평	!가원장 -		•		1		
							수수료	
	의 신청 안내서를 ? : 해당하는 곳에 V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한니다					없음	
1. 영업하	가·신고필증 사본	르 1부						
2. 최근 2	2개월간의 국내산0	력축산물 및 수입산이	력축산물 거	래내역서 1부(전지	ト 문서를 포함한다)			

※신청안내 (뒤쪽)

			(11-1)
제출하는 곳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처리부서	
유의사항	1.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여야 합니다.2.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는3. ⑩신청사항 중에서 해당되는	경우에도 신고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서

- 1. 인증품목:
- 2. 영업장의 명칭(상호):
- 3. 허가 · 신고필증번호:
- 4. 대표자:
- 5. 사업자등록번호:
- 6. 소 재 지:
- 7. 영업의 종류:
- 8. 유효기간:
- 9.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내역: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 4항에 따라 위해축산물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영업장으로 위와 같이 인증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직인

	변경 및 처분사항	(17 5)
연 월 일	변경 및 처분내용	확 인

제 호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농장식별번호:	
가축사육시설 명칭:	
가축사육시설 소재지:	
가축의 종류:	
농장경영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품질평가원장

※ 농장식별번호를 통보받은 농장경영자는 사육 가축의 출생, 양수·양도·이동, 폐사, 변경신고,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표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농장식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농장식별번호 발급 및 등록대장

	<u>-</u>			신청자 성명	농장 명칭	.10	사육	두수	
발급 (등록) 연월일	발급 (등록) 번호	농장식별 번호	사육가축의 종류	(법인인 경우 시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사육시설 소재지 (GPS좌표)	사육 개시 연월일	소	돼지	비고
						-			
						-			
						-			
						_			
						-			

210mm×297mm(

60g/m²(재활용품))

귀표 수령·배부 관리대장

(: 조)

		수령			(. 조)			
	()	A 7L	귀표번호(기	H체식별번호)	H부 	수령자	재고량
	시작	끝	수량	시작	끝	수량	(경영자명)	
전면 이월								
누계(월계)								

- 1. 연월일: 귀표를 수령(인수) 또는 배부(출고)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 2. 귀표번호(개체식별번호)
- 가. 소: 인수받은 귀표번호의 처음과 끝 번호를 적습니다.
- 12자리 기재(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기입 예) KOR 002 123456785 ⇒ 002 123456785
- 나. 종돈: 농장식별번호 6자리 + 농장별 개체관리번호 6자리
- 12자리 기재((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기입 예) 100001000001
- 3. 수령자(경영자명): 위탁기관 또는 사육농가에서 귀표를 부착한 가축의 농장경영자 등을 적습니다.
- 4. 재고량: 현 재고량(직전 재고량 + 인수량 출고수량)을 적습니다.
- 5. 월계, 누계를 산출하여 적습니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귀표 훼손·탈락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신고	 ¹ 접수		처리 결과				
접수일	② 경영자명	③ 개체식별번호	④ 접수자	⑤ 재부착일	⑥ 재부착용 귀표 관리번호	① 부착자	8 탈락귀표 회수 여부	

유의사항

접수일: 농장경영자 등으로부터 귀표 훼손・탈락 신고를 접수한 날짜를 적습니다.

- ② 경영자명: 소를 기르는 농장경영자 등의 성명을 적습니다.
- ③ 개체식별번호: 훼손・탈락된 귀표에 인쇄된 귀표번호를 적습니다.
- 12자리 기재[국가코드(KOR)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④ 접수자: 농장경영자 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직원명을 적습니다.
- ⑤ 재부착일: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한 날짜를 적습니다.
 - 자가부착 농장경영자 등의 경우 재부착용 귀표를 경영자 등에게 내준 날짜를 적습니다.
- ⑥ 재부착용 귀표 관리번호: 재부착용 귀표의 뒷면에 인쇄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① 부착자: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한 직원명을 적습니다.
 - 자가부착 농장경영자 등에게 재부착용 귀표를 내준 경우는 "자가부착"이라고 적습니다.
- ⑧ 탈락 귀표 회수 여부: 훼손·탈락 귀표의 회수 여부를 ○, ×로 표시합니다.
- 미회수 시에는 그 사유를 적습니다.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및 농장식별번호 발급 확인대장

						() 도축장
가축의 종류	암수 구분 (돼지는	신청인		또	별번호 는 별번호	재발급 사유	검사관 성명
(소, 돼지)	소, 돼지) 마리수)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성명	기존	재발급		

210mm×297mm(

60g/m²(재활용품))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① 연월일	② 구분	③ 묶음번호	④ 부위명	⑤ 이력번호	⑥ 구성개체수 (구성번호수)	⑦ 등급

유의사항

연월일은 묶음번호를 구성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 ② 구분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종류인 국내산쇠고기, 국내산돼지고기, 수입산쇠고기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③ 묶음번호는 별표 14에 따라 조합한 숫자를 적습니다.
- ④ 부위명은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모든 부위를 적습니다. 다만, 국내산돼지고기 또는 수입산쇠고기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⑤ 이력번호는 묶음을 구성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해당되는 모든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 ⑥ 구성개체수는 묶음을 구성하는 해당 쇠고기의 마릿수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쇠고기의 이력번호의 수가 5마리인 경우에는 "5"로 적습니다. 국내산이력축산물 중 돼지고기 또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이력번호의 수를 적습니다.
- ①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 등급별 구성인 경우에 해당 이력번호별 등급을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판매·반출 실적

작성 시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소재지

	② 이력(묶음)번호	③ 원료 또는 부위명	④ 팬r량 (kg, t, 두)	판매처 • 반출처			
판매일 • 반출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① 판매일 반출일은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판매하거나 반출한 날짜를 적습니다.
- ② 이력번호는 판매·반출 당시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은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③ 원료 또는 부위명은 해당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에서 판매하거나 반출한 원료(도체) 또는 부분육의 명칭을 적습니다.
- ④ 판매량은 판매한 물량의 수량(박스)과 무게(kg 또는 t) 단위로 적습니다.
- ⑤ 판매처 반출처는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한 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